

고등군사법원
육·해·공군 군사법원



2017 군사법원 연감

[2017. 1. ~ 2017. 12.]



머 리 말

2017년 법무부와 창설 이래 최초로 전체 군사법원 연감이 발간되었고, 그 취지와 내용면에서 군사법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군사법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유용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올해 역시 군사법원의 역사를 기록한 연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 연감은 2017년 연말을 기준으로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의 인원 현황, 군사법행정의 운영 내역, 각종 통계자료 및 군사법원 주요 판례 등을 수록한 군사법원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은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은 물론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다소 생소한 군형사소송과 군형법을 알리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군사법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 및 국선변호인 명부 갱신 시 피고인 평가를 적극 반영하도록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17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순정군사범죄유형 양형기준 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순정군사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강·재정립을 통해 각 군 재판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를 제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사법원이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 및 장병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번 군사법원 연감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대 고등군사법원장
준장 홍 창 식
(2017. 1. 1. ~ 현재)



군사법원 연감은 책자 이외에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에 전자문서(한글파일,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군사법원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이 군사법원 연감을 보다 쉽게 접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군사법원 연감이 나오기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자료수집, 발간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담당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연감의 내용과 체계를 보완해나가면서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군사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4월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준장 **홍 창 식**

목 차

■ 군사법원 청사 전경	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
□ 육군 군사법원	4
□ 해군 군사법원	5
□ 공군 군사법원	7
■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11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1
□ 육군 군사법원	12
□ 해군 군사법원	13
□ 공군 군사법원	14
■ 군사법원 부대기	17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7
□ 육군 군사법원	18
□ 해군 군사법원	19
□ 공군 군사법원	20
■ 연간 발자취[화보]	23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3
□ 육군 군사법원	32
□ 해군 군사법원	37
□ 공군 군사법원	39

■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43
■ 연간 군사법원 운영	47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47
□ 육군 군사법원	57
□ 해군 군사법원	65
□ 공군 군사법원	69
■ 2017년 사건 통계현황	76
□ 고등군사법원	76
□ 국방부/각 군 보통군사법원 종합	92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08
□ 육군 군사법원	124
□ 해군 군사법원	140
□ 공군 군사법원	156
■ 2017년 주요 판례	173
□ 고등군사법원	173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91
□ 육군 군사법원	194
□ 해군 군사법원	200
□ 공군 군사법원	204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209
■ 2017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215



군사법원
청사전경

군사법원 청사 전경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청사 전면]



[대법정 내부]



[소법정 내부]

□ 육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해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해병대



[청사 전면]



[법정 내부]

□ 공군 군사법원



[청사 전면]



[법정 내부]



법원장 및
주요직위자

법원장 및 주요 직위자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장



11대 법원장 준장 홍 창 식
(2017. 1. 1. ~ 현재)

○ 주요 직위자



고등1부장
육군대령 이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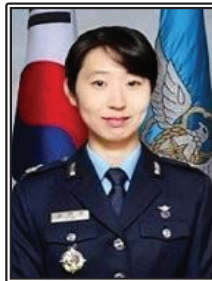
고등2부장
해군대령 김영수



보통부장
육군중령 최정윤



재판연구부장
육군중령 안지영



국선변호부장
공군소령 김민정



행정처장
3호 양익찬

□ 육군 군사법원

○ 육군군사법원장



16대 법원장 대령 김 상 환
(2016. 12. 29. ~ 현재)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중령 정의성



재판2부장
소령 이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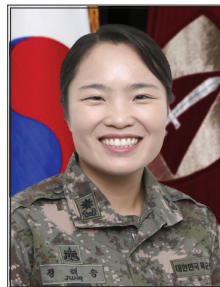
재판3부장
중령 박지근



재판4부장
중령 이재용



재판연구부장
대위 김다현



국선변호부장
소령 정해송



행정과장
4급 김명순

□ 해군 군사법원

○ 해군본부 군사법원장



13대 법원장 대령 옥도진
(2017. 1. 1. ~ 현재)

○ 주요 직위자



선임군판사
중령(진) 김성준



군판사
소령 박소은



국선변호부장
대위 김경중



국선변호담당
대위 김성만



행정과장
대위 이윤령



주임상사
상사 김찬형

□ 공군 군사법원

○ 공군군사법원장



12대 법원장 중령 권 상 진
(2016. 1. 18. ~ 현재)

○ 주요 직위자



재판1부장
공군중령 권상진



재판2부장
공군중령 이형일



수석군판사
공군소령 손미희



국선변호부장
공군대위(진) 정중원



행정과장
공군준위 염규중



합의재판사무담당
5급 김종만



군사법원
부대기

■ 군사법원 부대기

□ 고등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6. 29.

○ 규 격: 163cm × 88cm

○ 표식설명

- 단순·명료한 디자인: 공명정대한 고등군사법원을 의미
- 자주빛 바탕: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결함을 상징
- '법원' 붉은색 글씨: 엄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표상
(생명, 힘, 정열, 사랑)

□ 육군 군사법원



○ 제정일자: 2000. 7. 1.

○ 표식설명

- 자주색 바탕: 법무병과 상징
- 흰색 도안: 청렴
- 원: 21세기 통일 한국 염원
- 칼: 군사법 엄정함, 정의
- 저울: 군사법원의 공정성, 형평성
- 2000: 군사법원 창설년도

□ 해군 군사법원



○ 제 정 일 자: 2008. 11.

○ 부 대 기 설 명

- 의의: 대한민국 해군의 법치주의 실현기관으로서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해군의 군법질서 유지와 지휘권 확립에 기여함을 의미함
- 앵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군조직의 안정을 도모
- 앵카내의 동그라미와 훗줄: 군내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해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
- 테두리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자는 의미
- 테두리 무궁화 색깔(청색): 차가운 이성을 상징
- 테두리 무궁화내의 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
- 앵카 동그라미 안의 저울: 엄정한 정의의 기준

□ 공군 군사법원



○ 도안 의의

- 높아진 공군의 위상에 발맞추어 법무병과로서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되고자 군사법원의 신념을 새긴 도안

○ 부분별 의의 및 설명

- 저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
- 하단의 법전: 법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재판
- 햇불: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정의의 등불을 밝히는 법원을 상징
- 칼: 범죄를 엄단하고 부정을 척결하여 군내 기강 확립의 의지
- 테두리의 월계수: 법질서 확립에 기반하여 공군의 영공수호에 일조하고자 하는 신념

○ 부대 임무

-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한 법질서 확립
- 군내 준법의식 고취 및 각종 범죄 엄단·예방



연 간
발 자 취
[화 보]

연간 발자취[화보]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법무병과원 신년인사 (2017. 1. 2.)



'17년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2017. 2. 1.)



군 검찰관 간담회 (2017. 2. 10.)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행사 (2017. 2. 27.)



변호인 간담회 (2017. 3. 13.)



정병 간담회 (2017. 4. 19.)



전반기 공무 해외출장[이스라엘] (2017. 4. 22. ~ 28.)



연합사 미법무관 방문 (2017. 5. 16.)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2017. 5. 22. ~ 26.)



고등군사법원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 (2017. 6. 29. ~ 6. 30.)



전군 군판사 회의 (2017. 7. 7.)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 (2017. 9. 11. ~ 13.)



싱가포르 국방부 법무관리관 방문 (2017. 9. 12.)



베트남 중앙군사법원장 방문 (2017. 9. 25.)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2017. 11. 9.)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 (2017. 11. 23. ~ 24.(1차), 11. 30. ~ 12. 1.(2차))



전 직원 참가 배드민턴 대회 (2017. 12. 20.)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 (2017. 12. 21.)

□ 육군 군사법원



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장 수여 (17. 02. 20)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2017. 2. 20.)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2017. 4. 21.)



국선번호 전반기 세미나 (2017. 6. 16.)



야전 순회 간담회[육군 2작사] (2017. 6. 27.)



야전 순회 간담회[육군 3군사] (2017. 6. 28.)



개정 군사법원 시행 후 야전 지도방문[특전사] (2017. 9. 21.)



국군 교도소 방문 (2017. 10. 25.)



군사법원 양형토론회[육군 53사단] (2017. 11. 27.)



안보현장체험 해군 작전사 방문 (2017. 11. 28.)



군사법원서기 세미나[육군본부] (2017. 11. 30.)

□ 해군 군사법원



해군 군사법원 제2재판부 개소식[해군 작전사] (2017. 1. 20.)



해군 군사법원 제2재판부 개소식[해군 작전사] (2017. 1. 20.)



'17년 해군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 (2017. 5. 30.)



'17년 해군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 (2017. 5. 30.)

□ 공군 군사법원



제17주년 법원창설행사 (2017. 6. 30.)



재판2부 개소식[공군 오산기지] (2017. 7. 11)



제14회 항공우주법세미나 (2017. 11. 21.)



2017 법원 워크샵 (2017. 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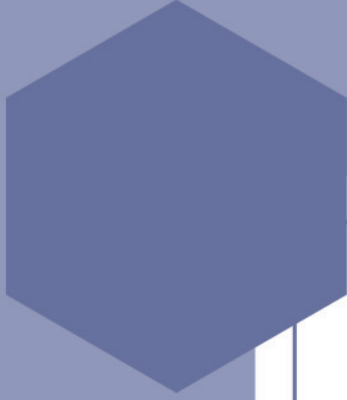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 표

군사법원 월간 주요 행사표

1월	20일 [해 군] 해군작전사령부 제2재판부 개소식 20~24일 [국방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2월	1일 [국방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장 수여식 10일 [국방부] 군검찰관 간담회 14일 [육 군] 군판사 자격심사 위원회 14일 [육 군] 육군 군사법원 우수 심판관 선정 20일 [육 군] 육군 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식 25일 [육 군] 육군 군사법원 통계연감 발간 27일 [국방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초청행사
3월	6일 [육 군] 군판사 임명 전 직무교육 13일 [국방부] 변호인 간담회 25일 [육 군] 국선변호 모범사례집 발간
4월	19일 [국방부] 정병 간담회 21일 [육 군] 군판사 임명장 수여식 및 군판사 세미나 22~28일 [국방부] 전반기 공무 해외출장(이스라엘) 30일 [육 군] 국선변호인 POOL 작성 및 등록
5월	16일 [국방부] 연합사 미법무관 방문 22일 [육 군] 군판사 국방부 연계 직무교육 22~26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직무교육(사법연수원) 30~31일 [해 군] 17년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
6월	9~10일 [육 군] 군사법원 전반기 Workshop 16일 [육 군] 국선변호 업무메뉴얼 발간 16일 [육 군] 전반기 국선변호장교 직무교육 21일 [육 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계획서 작성 및 배부 27일 [육 군] 재판3부(2작사) 간담회 28일 [육 군] 재판4부(3군사, 6군단) 간담회 29일 [육 군] 재판2부(1군사) 간담회 29~3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 30일 [공 군] 제17주년 법원 창설행사

7월	<p>1일 [육 군] 육군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 개정</p> <p>7일 [국방부] 전군 군판사 회의</p> <p>11일 [공 군] 재판2부 개소식</p> <p>12일 [해 군] 해군 군사법원 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p>
8월	<p>2일 [해 군] 해군 군사법원 3대 주임상사 임명식</p> <p>21~22일 [해 군] 해병대 제2사단 군사법원 지도방문</p> <p>25일 [육 군] 육규 181 재판사무 규정 개정</p>
9월	<p>11~13일 [국방부] 전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법원공무원교육원)</p> <p>12일 [국방부] 싱가포르 국방부 법무관리관 방문</p> <p>13~14일 [해 군]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 지도방문</p> <p>21일 [육 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특전사 지도방문</p> <p>25일 [국방부] 베트남 중앙군사법원장 방문</p>
10월	<p>19일 [육 군] 하반기 국선번호 세미나</p> <p>20일 [육 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53사단 지도방문</p> <p>25일 [육 군] 국군교도소방문</p> <p>30일 [국방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수감</p>
11월	<p>2~3일 [해 군] 재부, 재진지역 군사법원 지도방문</p> <p>3~4일 [육 군] 군사법원 하반기 Workshop</p> <p>9일 [국방부]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p> <p>17일 [육 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2작사 지도방문</p> <p>21일 [육 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1군단 지도방문</p> <p>21일 [공 군] 제14회 항공우주법 세미나</p> <p>22일 [육 군]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수도군단 지도방문</p> <p>23~24일 [국방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p> <p>27일 [육 군] 군판사 양형토론회</p> <p>28일 [육 군] 해작사 방문</p> <p>30일 [육 군] 법원서기 세미나</p> <p>30일 [육 군] 민간법원 속기사 연계 업무토의(대전지법)</p> <p>30~1일 [국방부] 야전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육군2작사, 공중전투사, 해병1사단)</p>
12월	<p>7일 [공 군] 2017 법원 워크숍</p> <p>18~20일 [해 군] 해군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p> <p>21일 [국방부]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p> <p>29일 [국방부] 2017년도 연말 성과분석회의</p>



연
근
근
연

사
법

간
원
영

연간 군사법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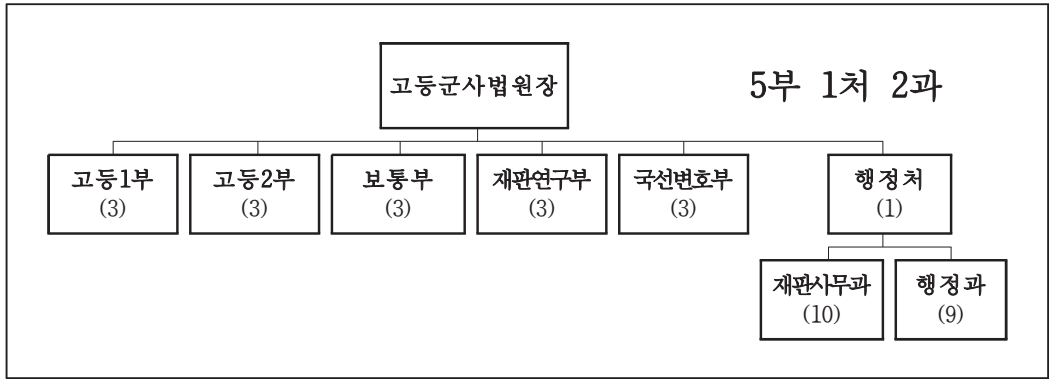
□ 고등군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연혁

<p>1948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군 과정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특별/약식 군법회의(단심제 + 판결심사제도) ○ 국군조직법상 군법회의 설치 근거 마련
<p>1950.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경비법(미 군법회의 제도) 체제하 군법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 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p>1954.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에 관한 상고사건 대법원 관할 - 군법회의 구성과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p>1962.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심제도(보통군법회의 → 고등군법회의 → 대법원) - 군 특수성 반영을 위한 제도(관할관, 심판관)준치 - 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절차 반영 : 사법기관성 강화
<p>1987.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칭(제9차 헌법 개정) ○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p>1994.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통합(국방부, 육·해·공군 → 국방부)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상 군판사 비율 상향 - 구속영장발부권: 지휘권 → 군판사
<p>2000.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군사법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분리
<p>2008.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중심주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p>2016. 1. 6. (2017. 7. 7.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법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전 시	39	19	0	8	12
평 시	36	16	0	8	12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육군준장	홍 창 식	법무#58	군법10
고등1부장	육군대령	이 태 휘	법무#64	군법13
고등2부장	해군대령	김 영 수	해법무#20	군법13
보통부장	육군중령	최 정 윤	법무#70	군법18
재판연구부장	육군중령	안 지 영	법무#67	군법15
국선변호부장	공군소령	김 민 정	공사#55	
행정처장	계약3호	양 의 찬	'13년 임용	3사#19
재판사무과장	군무5급	이 도 선	'97년 임용	
행정과장	군무6급	김 진 영	'03년 임용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육군준장	홍창식		
고등1부	부 장	육군대령	이태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양재도		
	고등군판사	해군중령	구영우		
고등2부	부 장	해군대령	김영수		
	고등군판사	육군중령	권도형		
	고등군판사	공군소령	서대봉		
보통부	부 장	육군중령	최정윤		
	보통군판사	육군소령	이민우		
	영장전담군판사	육군소령	정 신		
재판연구부	부 장	육군중령	안지영		
	재판연구관	해군대위	이재도		
	외국법령연구관	육군중위	홍 범		
국선연구부	부 장	공군소령	김민정		
	국선변호장교	해군대위	장민수		
	국선변호장교	공군대위	김연재		
행정처	재판사무과	행정처장	계약3호	양의찬	
		재판사무과장	사무관	이도선	
		재판사무담당	주 사	양홍승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한영식	
		군사법원서기	해군상사	서상우	
		군사법원서기	육군상사	강은정	
		군사법원서기	공군중사	박승훈	
		군사법원서기	주사보	김교성	
		사건접수담당	육군중사	김화연	
	영장담당서기	해군하사	양승진		
	속기사	계약8호	이영하		
	행정과	행정과장	주 사	김진영	
		법무행정담당	서기보	홍선미	
		인사담당	주사보	백숙현	
		재정담당	육군상사	한제환	
		군수/보급담당	공군중사	김미지	
		법령자료담당	주사보	안은영	
		지휘부행정담당	주사보	김유라	
전산정보담당		서기보	허은혜		
법무통합체계담당		서기보	이윤희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고등부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구현

- ① 재판 소요기간 분석 및 재판연구관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재판 구현
 - 복잡한 사건은 재판연구관이 쟁점 정리, 법리 검토 등을 도움으로써 신속 심리 구현
- ② 재판에 있어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강화
 - 증인 채택 시 피해자 의사 존중, 피해자변호사의 의견진술 및 피해자 조력 여건 보장
- ③ 항소심 파기 사건에 대하여도 대법원 양형기준 적용, 양형의 적정성 제고
- ④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대법원 파기율 감소 달성(2017년도 파기 1건)

- 최고 군사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정립

- ① 항소심 주요 판결문을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
- ② 판례 공보 등 자료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1심 군판사들이 고등군사법원의 판례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 재판현황

- ① 청해부대 급양비 횡령사건
 - 청해부대 파병간 장병 급양비를 전용하여 양주를 구매한 준장에 대하여 2017. 3. 24.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여 일부 무죄 및 벌금형을 선고함(2017. 8. 18. 대법원 상고기각).
- ② 초안산 사건
 - 고등학생 22명이 중학생 2명을 차례로 합동강간한 사건(소위 '초안산 사건')에서 군인신분의 피고인 7명에 대하여 2017. 7. 6.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부 피고인은 무죄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 4년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일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2017. 10. 26. 대법원 상고기각).
- ③ 육군사관학교 교수 탄약 횡령사건
 -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전역 직전에 육군사관학교의 탄약을 자신이 취직하려던 방위산업체에 빼돌린 예비역 대령 사건에서 2017. 7. 13. 업무상군용물횡령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음
 - 이 사건은 당초 탄약횡령 외에 다른 피의사실도 군사법원에 함께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이 민간인에 대하여는 탄약횡령에 대하여만 군사법원이 관할을 갖고,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결정하여(2016. 6. 16.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등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모두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 보통부

- 군사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군사재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보장을 위한 '집중심리제 및 약식사건 신속처리'를 추진하여, 군사재판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제고

① '공판준비절차'의 적극적 활용

-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의견서를 기준으로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인사건의 경우 수명군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 통해 공판절차 진행 전에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정리 및 증인신청, 증거결정 등 기타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함으로써 재판지연 방지 및 공판기일 충실을 기하였음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기소하는 방산비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복잡한 사건 등을 담당하므로, 전체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절차를 실시하도록 노력함
- 2017년 공판준비절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총 18건 중 15건에 대하여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함

② '집중심리제 및 약식사건' 신속처리

-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공판기일이 2회 이상인 경우 연일 또는 14일 이내에 다음 공판기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바, 공판기일간의 간격이 짧을 경우 증인의 증언 등이 군판사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게 되어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변론기일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前기일에 형성된 심증이 유지되도록 하여 기록에 의한 재판보다는 공판에서 직접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통해 결정이 이뤄지도록 함
- 약식사건 접수 시로 부터 14일 이내 사건 처리
- 구공판사건 18건 중 12건 집중심리 실시, 약식사건 40건 중 35건 기간 내 처리함

● 재판연구부

-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재판의 전문성 확립

- 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17.7.7.) 이후 양형위 상임위원 토의 및 실무협의 등 후속조치
 - 고등군사법원과 양형위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기반 마련, 지속적인 업무협력 및 교류 약속
 - 월 단위 판결결과 양형위원회 통보 → 양형기준 준수여부 분석결과 재통보
 - 양형기준표 준수율 : 96.8% (민간법원 90.8%)
 - 군사법원 판결의 양형기준 전수 조사 토대 마련
 - *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후반기 활동(18.4.27.~19.4.27.)시 균형법범 전문위원 활동 예정
- ② 순정군사범죄유형 10개에 대한 양형기준 보장 및 재정립
 - 일관된 양형기준 마련, 양형위에 군 특수성을 살린 군사재판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양형실무자들 간 지속적 회의, 각 군 재판의 형평성 및 불합리한 양형편차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 및 상호간 협력 계기 마련
- ③ 판례연구에 대한 정기적 토론 및 교육 (총 17회 개최, 자료 축적 및 공유)
- ④ 군판사실무반 교육지원, 군판사 직무교육(5월) 및 전군 군판사 회의(7.7.)를 통한 군판사 실무능력 배양
- 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연구관을 통한 고등부 업무 적극 지원 (자료 정리, 주요 판례 검색·검토)
- ⑥ 군사법제도 및 재판업무 개선
 - 재정신청 기록에 첨부된 고등검찰부의 '의견서' 처리 방식 검토
 - 고등군사법원 개정예규 법무심사
 - 헌법개정 특위 관련 고등군사법원 존속 필요성 검토
- ⑦ 군사법원 공보 발간(분기별 1회, 3/4분기에 창간호 발행)
- ⑧ 법원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 매달 4건씩 주요판결 정리 및 게시, 판례연구 최신화
- ⑨ 해외 군사법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자료 축적 (美 포함 세계 각 국 최신 군사법원 판례)

- 군사법원 소통강화

- ① 전군 군사법원장 회의(전반기, 하반기 각 1회)
 - 2017년 고등군사법원 사업계획, 각군 업무중점 소개
 - 균형법상 주요 범죄유형 양형기준 검토
 - 각군 보통군사법원 주요 판결 및 하자 사례 검토
- ② 지역별 보통군사법원 지도방문을 통해 양형위와의 업무 협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③ 전국 로스쿨 대상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 (18개 로스쿨, 38팀 참가)
- ④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동계/하계)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교육 자체 수립, 군사법 실무능력 배양에 기여
 - 공소장 및 변론요지서 작성, 판결서 작성 등 체계적인 실무수습 실시
- ⑤ 공무 해외출장
 - 외국 군사법당국 법무병과 지휘관들과 친선 및 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체계 이해도 제고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이스라엘 방위군 법무병과 및 군사법원 방문 (4월), 이스라엘 군사법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 제2회 이스라엘 방위군 무력충돌법 국제컨퍼런스 참석 (4월)
 - 미국 : 美 변호사협회 주최 국가안보법회의 참석(11월)
- ⑥ 대외 교류활동 강화
 - 연합사, 미2사단/동원사단, 공작사, 싱가포르 국방부 법무실, 베트남 중앙군사법원 등 법원 방문
 - 군사법원 소개자료 영문본 작성, 외국 군사법 기관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사법 제도 이해
 - 대한변호사협회(7.3.) 방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문(7.13.) 및 내방(8.10.),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내방(12.14.)
 -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 및 군사법기관 양형기준 준수 내용에 대한 발표

● 국선변호부

- 고객감동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사재판의 신뢰성 제고

필수적으로 모든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지정함으로써 군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차별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양질의 국선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국선변호 사건에서 재판부/피고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국선변호인들의 우수한 변호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장병 및 군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년 대비 법률상담 수가 급증하였음

① 분야별 국선변호인 POOL 운영 및 충실도 평가

- 2016. 11. 9. 서울 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 신청자 명단 의뢰
-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60명(군법무관 출신 16, 사법시험 33, 변호사시험 11)과 국선변호 전담 군법무관 3명의 인적사항을 인트라넷 및 인터넷 공개, 피고인이 국선변호 신청시 해당 명부를 함께 제공하여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하였음.
- 국선변호 사건 종결 후 피고인 평가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운영 실태와 관련된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향후 국선변호인 명부 작성 및 운영 정책 결정에 활용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고, 국선변호인 평가에는 군판사 평가(50점), 피고인 만족도(50점)의 반영률을 1:1로 하여 평가한 결과 점수 합산 →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 만족도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년도 국선변호인 명부 작성, 우수국선변호인 선정시 반영하도록 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충실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변호인 간담회(“17. 3. 13.)를 실시하여 국선변호인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에서 국군교도소(여주)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 접근교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국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법률상담이 아닌 보충적 국선변호활동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면담을 실시하여 즉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상소 여부 등 관련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및 방어권 보장에 기여

* 적극적인 수용자 면담으로 면담건수 전년대비 63%증가(156건→255건)

② 법률상담

- 2017년 총 325건으로 2016년 179건에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법률상담을 통하여 장병의 인권 향상 및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해결에 기여함
- 법률상담 제도 개선 : 기존 ‘법률상담’에서 국군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상담을 ‘면담(화상면담, 방문면담)’으로 분류하여 보충적 국선변호활동으로 규정
- 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 인트라넷 상담 건수 전년대비 105% 증가(154건→316건)

● 행정처

- 조직역량 및 전문성 강화

- ①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내실화로 실무능력 향상
 - 법원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을 통한 재판사무업무 전문성 향상
 - 증인지원관 실무, 법원정보체계 사용자 교육, 군 형사소송 실무토의(각 군 선임 군사법원서기)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 및 토론시간 보장으로 교육운영 만족도 증가
 - * 매우만족도 : 68.4% → 82.5%
 - 교육우수자 선발, 법원장 표창/부상수여로 교육효과 증대
- ② 법원 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실시
 - 심판관 직무교육
 - 심판관 임명장 차관 직접수여로 책임감 고취 및 심판관 교육을 통한 임무수행 능력 향상
 - 심판관을 영관급 장교 → 대령으로만 편성하여 심판관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실시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 체계적인 실무수습 지원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법원교육 위주로 구성 → 법무관리관실, 검찰단 방문 교육 등으로 구성하여 장래 군법무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는 실무수습 실시
- ③ 기관발전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양교육 실시
 - 성폭력 예방, 청탁금지법,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윤리의식 고양 및 올바른 공직관 확립
 - 무기소요체계 소개교육 및 한반도 무력충돌관련 교양교육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 법원 교류활동 강화

- ①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 군과 군사법제도를 예비 법조인에게 알리고 열린 군사법정 구현
 - 우수한 법조인을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제1회 경연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호응도 확인
 -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8개 대학원, 38개팀 참가 신청
 - 대본 및 본선 심사 간 민간 법조계/학계와의 교류 증진
- ② 군사재판 관계자 간담회
 - 군검사, 변호인, 정병, 기결수(국군교도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재판 진행 간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 법원장 주관 간담회를 통해 국선변호인 국군교도소 셔틀버스 운행, 공판준비절차 대상사건 확대, 정병들의 법정 안내책자, 구치감 환경개선 등 약 20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고등군사법원의 신뢰성 제고

- 재판연구부·국선변호부 일부 직원을 한시적으로 고등부 재판연구관으로 전환하여 쟁점사항·사례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재판준비에 대한 시간 절약
- 주간단위 평균 미결현황 170건 → 130건으로 대폭 감소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양형기준 준수여부 확인체계 구축

- 군사법원법 제73조의 2에 근거한 양형기준 존중방안 마련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판결결과 월 단위로 분석 및 공개
 - * 1심 판결자료 및 판결문 매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준수여부 분석결과 통보에 따른 판결의 신중성 증가
 - * 군사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96.8% (민간법원 90.8%)

③ 법원정보체계 활성화를 통한 재판사무절차 시스템화 실현

- 사건접수에서부터 종국단계까지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실현
- 판결문 및 비실명화 판결문 등록을 통한 법무공유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질적 향상 도모
- 법원정보체계 독립망 신설로 인트라넷과 인터넷 간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검색 원활한 연동 구현
- 보통군사법원 지도감독, 자체교육 및 월 단위 입력률 파악을 통한 사건 입력률 제고
 - * 평균 사건 입력률 : 전반기 40% → 후반기 90%
- 법원정보체계 오류 및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률 증가
 - * 월별 평균 접속횟수 : 전반기 617회 → 후반기 751회

④ 개정군사법원법(2017.7.7.) 시행에 따른 사법행정업무 표준화 정착

- 전군 군사법원 통합 연감 발간
 - 법무 병과 창설 이래 육·해·공 통합연감 최초로 발간
 - 각 군 군사법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일관되게 적용할 원칙과 기준 정립
 - 군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
 - 군사법원 내부적으로는 군사법 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
- 재판사무 실무 통일화를 위한 재판사무문서 개정 발간
 - 2017.7.7.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 이후 9년 만에 개정
 -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하는 형사재판 서식을 토대로 재판사무 중에 발견된 기존 서식의 개정소요들을 정비하여 발간
 - 각 군사법원 간 재판사무 통일화로 국민들의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통일된 재판사무문서 서식의 사용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군사법원 사법업무 표준화 정착에 기여

- 위기조치 수행능력 강화

① 을지연습을 연계한 실질적인 부대훈련

- 전시 군사법원 운용 FTX
 - 예비 소산지역(보광초) 이동훈련 실시, 전시 군사법원 편성/운용 토의 결과 자체 총무계획에 반영
- 전시전환절차 훈련 실시
 - 비문지출훈련, 총기/탄약 수·불출 훈련, 전시 물자분류/적재 훈련
- 전시 기본훈련과제 숙달
 - 전시 임무수행절차 교육, 화생방 장비/물자 사용법 및 화생방전 교육

② 재난대응 훈련

- 소방안전 및 화재예방훈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훈련시 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으로 소방차를 통한 살수압력, 심폐소생술 및 심장자동충격기 실습 등 실질적인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및 지정장소 대피훈련 실시

③ 분기별 비상소집 훈련

- 분기별 기관장 불시 비상소집 훈련으로 전시 소집체계 숙달

- 효율적인 조직개편 추진

① 보통부장 계급상향

- 육군중령 → 육군대령

② 보통군판사 증편

- 공군소령 +1

③ 자체편제조정

- 법무통합체계담당: 행정과 → 재판사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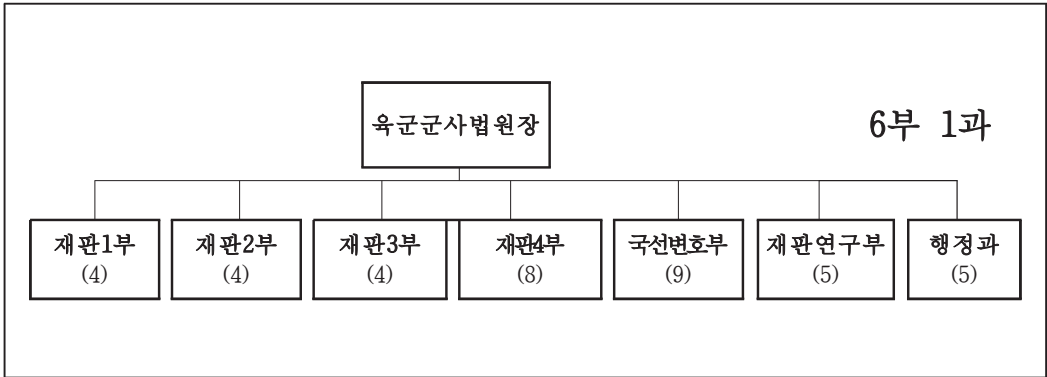
□ 육군 군사법원

○ 연혁

<p>1994. 1.</p>	<p>○ 군사법원법 개정 - 사단급이상 50개소 보통군사법원을 군단급으로 통합 · 18개 군단급이상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p>
<p>2000. 6.</p>	<p>○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확대 설치 : 육일명 제27호(법법37157-106, '00.5.29.) - 설치보류해제 : 34개소(1군: 10개, 2군: 7개, 3군: 15개, 육직: 2개)</p>
<p>2000. 7.</p>	<p>○ 육군군사법원 창설: 육일명 제68호(작편37326-162, '00.6.13.) - 5부 1과로 편성</p>
<p>2004. 12.</p>	<p>○ 항작사 보통군사법원 해체</p>
<p>2007. 3.</p>	<p>○ 군수사 보통군사법원 이전(부산→대전)</p>
<p>2007. 10.</p>	<p>○ 9, 11군단 보통군사법원 해체 - 육일명 07-21호('07.4.21.)</p>
<p>2017. 7.</p>	<p>○ 군사법원법 개정 -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단급이상 군사법원으로 개편 (49개 → 16개) - 법원서기, 전자법정운영원 육군본부로 소속 변경 - 실질적인 심판관 제도 폐지</p>

○ 일반현황

• 기구도



• 정원

구 분	총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전 시	129	83	1	20	6	19
평 시	68	39	1	22	6	0

• 주요 보직자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기수	비고
법 원 장	대령	김 상 환	법무#66	군법14
재판1부장	중령	정 의 성	법무#68	군법16
재판2부장	소령	이 은 숙	법무#75	사시49
재판3부장	중령	박 지 근	법무#67	군법15
재판4부장	중령	이 재 용	법무#68	군법16
국선번호부장	소령	정 해 송	법무#76	사시50
재판연구부장	대위	김 다 현	법무#88	변시6
행정과장	군무4급	김 명 순	'86년 임용	공채

○ 직원 보직현황

부서	직 책	보 직 자		비고
		계 급	성 명	
지휘부	법원장	대령	김상환	
재판1부	부 장	중령	정의성	
	군판사	소령	백경훈	
	군판사	소령	박수정	
	군판사	소령	추대성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법원서기	중사	박미화	
	법원서기	중사	문혜림	
	전자법정운영담당	8급	이라리	
	재판2부	부 장	소령	이은숙
군판사		소령	조유리	
군판사		소령	우상욱	
군판사		소령(진)	박정훈	
법원서기		상사	장승환	
법원서기		중사	안승률	
법원서기		중사	송영통	
법원서기		중사	윤준필	
법원서기		상사	백 혁	
전자법정운영담당		8급	권윤주	
재판3부	부 장	중령	박지근	
	군판사	소령	서태우	
	군판사	소령	오윤경	
	군판사	소령	김지현	
	법원서기	중사	홍지희	
	법원서기	중사	이경찬	
	법원서기	중사	김진섭	
	전자법정운영담당	8급	우은채	

부서	직책	보직자		비고
		계급	성명	
재판4부	부장	중령	이재용	
	군판사	소령	성은경	
	군판사	소령	장엄윤	
	군판사	중령	차승민	
	군판사	소령	원성희	
	군판사	소령	오상열	
	군판사	소령	배정신	
	군판사	소령	이미정	
	법원서기	상사	이지원	
	법원서기	중사	유선경	
	법원서기	중사	사혜진	
	법원서기	하사	류지성	
	법원서기	중사	김아영	
	법원서기	중사	엄상진	
	법원서기	중사	남상욱	
	법원서기	상사	김영화	
	법원서기	중사	박경록	
	법원서기	중사	박혜진	
	법원서기	중사	채소령	
	전자법정운용담당	8급	김영일	
국선변호부	부장	소령	정해송	
	국선변호장교	대위	임종오	
	국선변호장교	대위	소준섭	
	국선변호장교	대위	엄수연	
	국선변호장교	대위	이지수	
	국선변호장교	중위	정의진	
	국선변호장교	중위	김법윤	
	국선변호장교	중위	권준우	
	국선변호장교	중위	박성종	
재판연구부	부장	대위	김다현	
	재판연구장교	소령	이지훈	
	재판연구장교	소령	고혜섭	
	재판연구장교	대위	김기범	
	재판연구장교	대위	한상훈	
	재판연구장교	대위	최광진	
행정과	행정과장	4급	김명순	
	재정장교	대위	박종범	
	기획자료관리원	7급	서은희	

○ 연간 주요 추진실적

가. 군판사 임명

군판사 임명식은 2017년 4월 21일 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었다. 2016년 및 2017년에 임명된 군판사 4명을 제외하고 총 18명의 군판사가 새롭게 임명되었음. 2016년과 동일하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을 비롯하여 1군사·2작사·3군사의 재판부장들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였으며, 특히 군사법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판사 전원을 장기법무관으로 임명하였고, 2016년과 대비하여 군판사 보직자를 편제에 최대한 가깝게 구성하여 전문적인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였음

나. 재판 관련 법원 구성원 직무교육

1) 군판사 임명 전 종합교 교육

2017년 육·해·공군 군판사 보직 예정자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육군 주관 하에 종합행정 학교에서 군사재판실무반 교육을 실시하였고, 육군군사법원 재판부장 및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등 재판실무 경험이 풍부한 군사법 실무 전문가의 초빙강의를 통하여 재판업무 수행능력이 강화되었으며, 군판사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과 공정한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2) 군판사 세미나

2017년 4월 21일 육군 보통군사법원 법정에서 육군군사법원장 주관 하 군판사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세미나에서는 2017. 7. 7.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토론을 통하여 개정 군사법원 시행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 또한 군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음

3) 육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2017년 11월 27일 53사단 법정에서 육군군사법원장 주관 하 군판사 양형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양형토론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관모욕죄 등 최근 주요 범죄의 적정 양형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음. 업무수행간 양형기준이 없는 순정군사범죄에 관하여 군판사들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적절한 양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4) 국선번호인 직무교육

2017년 6월 16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전반기 육군 국선번호장교(총 17명)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7년 10월 19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하반기 육군 초임 국선번호장교(총 13명)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 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선번호의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었음. 후반기 직무교육에서는 2017년 우수 국선번호사로부터 법정 예절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초임 국선번호장교들을 대상으로 국선번호 업무 매뉴얼 교육 및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준비사항, 국선번호 업무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하였음

5) 군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실무수습 교육

2017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법원서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7년 11월 30일 육본본부 김태청장군실에서 법원서기 16명에 대하여 법원서기 배치, 재판지원·세부관할 등 의견수렴을 받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는 기록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및 각종 접수 등에 관하여 법원서기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직무교육을 하였음

6) 속기사 업무 토의 및 민간 법원방청

2017년 11월 3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민간 법원 속기사와 연계하여 업무토의를 실시하여 민간 법원 속기사와 군사법원의 속기사의 업무능력을 공유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연계 업무토의를 하여 상호 발전되는 전자법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의를 하였음. 민간 법원방청을 통하여 전자법정을 견학하고, 민간의 영상녹화시스템 운용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군사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토의하였음.

다. 군사법원 소통강화

1) 야전 지역 군사법원 순회 간담회

야전 군사법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사법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7년 6월 27일 재판3부(2작사)를 시작으로 2017년 6월 28일 재판4부(남부, 북부), 2017년 6월 29일 재판2부(1군사)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신입 군판사들이 겪는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업무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2) 개정 군사법원 시행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2017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간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재판1부 재판부장 및 육군본부 법원서기가 2017년 9월 21일 특전사 군사법원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20일 53사단 군사법원을, 같은해 11월 17일 2작사 군사법원을, 같은해 11월 21일 1군단 군사법원을, 같은해 11월 22일 수도군단 군사법원을 각 방문하였음.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인하여 심판관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단급 군사법원의 기록이 이송되는 등 다방면적인 변화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원서기의 업무 부담 문제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2)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민간 학술행사 참여

가) 국군 교도소 방문

군사법원 재판 후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군 교도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공개화장실로 인한 수감자들의 인권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전시 수송인원을 어떻게 되는지 토론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25일 국군 교도소를 방문하였음

나) 합동성 강화를 위한 타군 방문

타군과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해군 군사법원 시설을 견학하여 육군과 해군의 진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28일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 및 군사법원을 방문하였음. 방문시 해양안보체험을 함께 하여 실시간 작전 상황을 직접 모니터하여 육군과 해군의 안보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음

라. 군사법원 관련 제도 개선

1) 육규 181 「재판사무 규정」 개정

개정 군사법원법에 발 맞추어 군사법원법과 불일치되는 육규 181 재판사무규정을 2017년 8월 25일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할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경우 보고의무, 군판사의 임기(신설), 법원서기 및 전자법정운영원의 소속 등(신설), 평시 사단 법정시설의 관리 및 활용(신설)이 있음

2) 육군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 개정

개정 군사법법 시행에 따라 육규 181과 마찬가지로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재판사무 예규를 2017년 7월 1일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판지원 및 세부관할, 공휴일 등 재판업무 대기(신설) 및 장부와 기록의 보존(신설) 등이 있음

3) 신속한 재판 강화

장기간 지속되는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의 공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장기미제 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였으며,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예하대 관심을 환기하였음

4) 선임 군판사 재판진행 제도의 정착화

초임군판사들의 재판진행에 관한 부담을 줄이고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6년 시범운영된 선임 군판사 재판진행 제도를 정착화 하였음. 선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합의 재판의 실질화를 이루었으며, 재판장 및 주심의 역할의 정착화 하여 군판사별로 고른 업무분배가 되도록 노력하였음

마.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준비

1)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계획」 작성 및 배부

2017년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2017년 6월 21일 배부하였음

2) 각종 업무매뉴얼 정비

군사법원 국선변호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초임 국선변호장교들의 업무 참고자료로서 2016년 발간된 국선변호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2017년 6월 16일 '국선변호 매뉴얼'을 발간(50부), 예하 국선장교들에게 배포하였고, 국선변호 모범사례집을 2017년 3월 25일 배부하여 변혼요지서·신문사항 이외 피고인 접견방법, 재판기일 간 진행 사례, 판례연구 등 재판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2)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위한 군사법원TF 운영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시행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혼란과 가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일 군사법원TF를 운영하여 토론과 회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도모하였음

3) 법개정에 따른 육군 군사법원 운영 개선

가) 재판사 3인 재판부로 순회재판 실시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49개의 보통군사법원을 16개로 축소·운영하였으며, 군사법원을 총 4개의 재판부로 구성하여 재판1부는 육본과 육직부대, 재판2부는 1군사와 2·3·8군단, 재판3부는 2작사, 재판4부는 3군사와 특전사·수방사·수도군단, 그리고 1·5·6·7군단을 관할하도록 하였음. 다만 지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2작사의 31·53사단의 사단법정은 계속하여 활용하였음

나) 재판지원 및 세부관할 주요내용 변경

지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각 재판부 관할에 해당하는 재판이 어려운 경우 타 재판부로 재판지원을 하도록 하여 2작사의 서부축선(31·32·35·37사단)은 육본 재판1부에서 재판지원을 하되 관할관은 2작사령관이 되도록 하였음. 7군단 추가 배속부대인 8사단은 5군단에서 재판지원을, 11사단은 7군단에서 재판지원을, 26사단은 6군단에서 재판지원을 받되 관할관은 모두 7군단장으로 하였으며, 미사일사령부, 항공사령부는 특전사의 재판지원을 받되 관할관은 참모총장으로 하였음

다) 사단 소재 법정시설 활용 및 관리

사단 소재 법정시설의 명칭은 상급부대 보통군사법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단 기소 사건이 다수인 경우, 기일 외 증인신문·영장실질심사, 기타 소송경제상 필요 시 순회재판을 통하여 사단 법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법원(정) 신·증축 예산 '18~'22년 중기계획 반영 및 법원차량 편제 조정

개정 군사법원법이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으로서의 실질적·외형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작사 법원 신축 예산 24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법정의 노후정도와 필요한 신·증축 규모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18~'22국방중기계획」(5개년, 4개소 116. 7억원)에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1개소씩 법원 신·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판사 3인에 의한 군사 재판이 실시됨으로써 높아지는 재판사들의 장거리 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거점법원용 승합차(12인승)를 장비 편성심의에 통과시켜 2017년 7월 1일 일부 편제에 반영하였고, 점차적으로 차량을 확보 및 배정할 계획임

바. 연구 및 발간 활동

- 1) 육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발표자료 모음집 배포
2017년 11월 23일 육군 군사법원 양형토론회 발표자료 모음집을 발간하여 양형토론회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군판사들이 이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하도록 기여하였음
- 2) 군사법원 판결집 발간
2016년에 이어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협력하여 주요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엮어서 '17년 육·해·공군 군사법원 판결문 모음집을 발간하였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결과 다수의 쟁점들이 포함된 판결문을 선정하였으며, 육·해·공군 군사법원이 협력하여 군사법 발전의 토대를 쌓게 된 의미 있는 작업일 뿐 아니라 예하부대 군판사들 및 군사법 종사자, 법무 병과원들에게도 이를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였음
- 3) 전시 군사법원 관련 연구
군사법원 전시임무수행절차를 보완 작성하여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군판사 동원 훈련 현황을 파악하여 '18년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권역별 사단 훈련위탁부대를 선정하고 훈련일정을 파악하는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를 하였음
- 4) 군사법원 업무 분석 및 평가
2016년부터 진행된 군사법원 통계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사법원의 각종 통계를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 군사법원 통계와 2017년 군사법원 통계를 비교 분석하였음. 군사법원 통계분석은 민간법원의 사법연감 수준의 통계분석을 기본하되 순정군사범죄와 같은 특이사항을 추가하였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강요·직권남용가혹행위와 비교 분석하는 등 순정군사범죄에 관한 분석 및 연구를 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되도록 할 계획임
- 5) 주간 판례연구
중요·최신판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군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월부터 약 10주간 제3자뇌물수수의 특정성 판단, 상관모욕죄의 '명령복종관계' 명확성 위배 여부, 군형법 제92조의6 '그 밖의 추행'의 명확성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연구·평석을 하여 육군 군사법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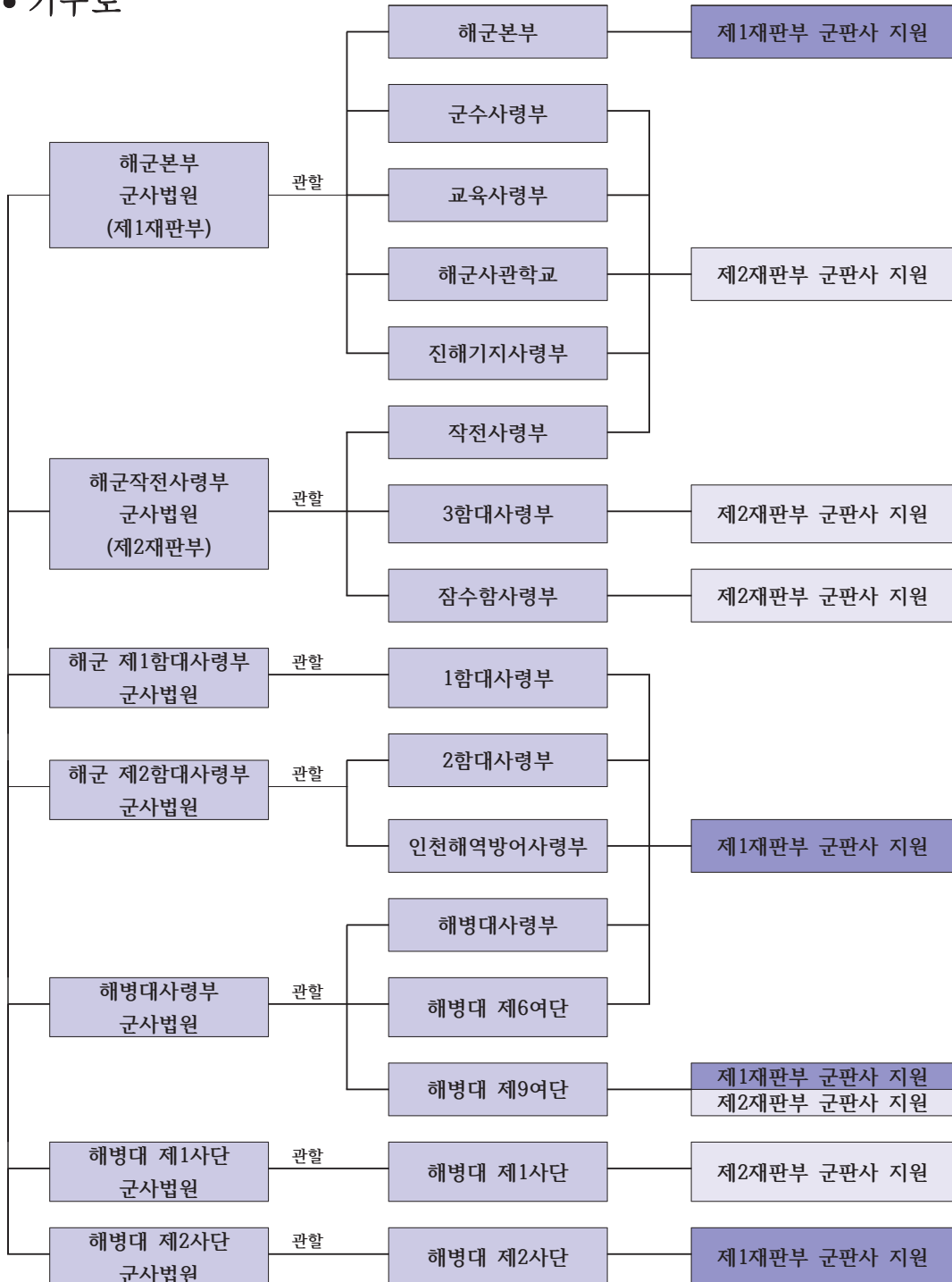
사. 재판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 1) 법정 신·개축 추진
군수사 법정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2017년 11월 14일 군수사 보통군사법원 개축식을 진행하였음. 노후화된 법정의 신축을 위하여 '18년 예산편성요구안 2군단 법원신축 예산을 29억원 반영하여 2군단 법원은 '19년 완공예정이며, 2작사·5군단 법원신축은 '18년도 완공예정임. 이외에도 '20년 수도군단, '21년 3군단, '22년 1군단, '23년 육군본부 법정 신·증축이 연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임
- 2) 재판지원 차량 확보 및 법정시설 개선운용
2017년 편제에 반영하여 군사법원 재판지원 승합차를 2대 확보하여 2017년 10월 25일 각 육군본부, 2군단에 배정하였고, 전자법정시스템 개선 및 민원전화기 개선을 위해 법정 마이크와 실물화상기를 재정비·활성화하였음
- 3) 재판지원 여건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확보
군사법원 예산을 '19년~'23년 국방중기계획부터 통합편성요구하여 국선번호료, 증인소환비, 우편송달료, 군사법원운영비 등 부족예산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음. 법원 신·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역시 중기계획 예산에 반영하여 법원신축비품, 전자법정시스템구축, 법정노후화비품 등 약 3.1억원을 확대 반영하였음
- 4) 심판관 임명 및 우수 심판관 선정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 심판관제도의 원칙적 폐지 이전에 준장 4명, 대령 111명, 중령 76명 총계 191명의 심판관을 임명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2017년 2월 20일 심판관 임명식을 거행하고, 2017년 2월 24일에는 우수 심판관을 선정하였음.

□ 해군 군사법원

○ 일반현황

• 기구도



○ 직원 보직현황

부 대 명		직 책	보 직 자		비 고
			계 급	성 명	
해 본	군사법원 (제1재판부)	군사법원장	대령	옥도진	
		선임군판사	소령	김성준	
		군판사	소령	박소은	
		법원서기	상사	김찬형	
		법원서기	중사	이종수	
		순회재판 지원서기	상사	백대훈	
	(행정과)	행정과장	대위	이윤령	
		행정담당	하사	유호재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위	김경중	
		국선변호담당법무관	대위	김성만	
작전사 (제2재판부)	제2재판부장	중령	하성호		
	제2재판담당1	소령	김민지		
	제2재판담당2	소령	박광연		
	법원서기	원사	정원덕		
	법원서기	하사	이찬희		
1함대	법원서기	중사	정혜진		
2함대	법원서기	상사	김인천		
해병대사	국선변호부장	대위	박성욱		
	법원서기	하사	박현준		
1사단	법원서기	중사	정영미		
2사단	법원서기	상사	안기양		

○ 연간 주요 추진실적

가. 공개재판 활성화('17. 1.)

공개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예하 군사법원이 재판일정을 부대 홈페이지 및 군 인트라넷, 인터넷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고, 재판 방청결과를 매 분기 보고하게 하였음. 또한 재판안내 브로셔를 제작하여 부대 행정안내실 및 TMO에 비치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음. 재판일정이 게시됨에 따라 재판방청객이 증가하였고, 이는 군사재판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음.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사법원의 대국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 추진 예정.

나. 전담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17. 2.)

해군 군사법원은 군사작전의 특수성이 쟁점이 되는 작전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전담 국선변호인을 지정 및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현행 국선변호인은 대부분 고유 업무(징계, 인권, 송무 등)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작전적 특수성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부각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체계적 변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군사작전의 특수성이 쟁점이 되는 작전법위반 사건, 2)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 3)기타 참모총장 하명 중요 사건 발생 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17년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 시행('17. 5.)

'17. 5. 29. 해군 작전사령부 제2재판부에서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음.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부대구조 개편과 실무적 운영 방안, 해군 군사법원 업무 규정 개정 초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으며, 성범죄 사건 실무, 판결서 작성 실무, 공판절차 실무 등 군판사 관련 실무 교육과 공판 절차상 하자사례 소개 등 법원서기 관련 실무 교육을 통하여 각 부대간 통일된 절차수행을 도모하고 실무 지식을 함양 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군사법원장 주관 모의재판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라. 「해군 군사법원 업무 규정」전부개정('17. 7.)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17. 7. 7. 시행됨에 따라 해군 군사법원 업무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음. 관련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안을 작성하고(7.25.), 해본 감찰실의 부패역량평가(8.18.), 인권과 인권영향 평가(9.12.), 부서 심의위원회(9.26.)를 거쳐, '18 1분기 중 개정된 업무 규정을 발령 예정임. 개정된 업무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판사 임명 및 소속에 대한 규정, 심판관명부의 운영에 대한 규정, 재판관의 지정에 대한 규정, 전담국선변호인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신설 되었음.

마. 군사법원 전자법정화 추진('17. 10.)

기존 '08년도에 도입된 진술영상녹화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증거조사절차 등의 공판사무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장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따라 해군 군사법원은 해군 본부 법정을 포함한 10개 해군 군사법정에 신규 영상녹화장비를 도입함. 실물화상기, 영상녹화용 PC, 증거 재생용 노트북 등을 도입하였으며 각 부대 보안과의 보안측정을 거쳐 운용을 개시함. 신규도입 장비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군사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부팅 비밀번호설정,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작성, 무선랜 기능 제거 등 보안 후속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예하부대 군사법원 지도방문시 보안관련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검열 예정임.

바. 군사법원 다인승 차량 확보('17. 11.)

'17. 6. 1. 군사법원 조직 개편에 따라 군판사의 순회재판이 급증하여 출장소요가 증가하였음. 그에 따라 재판지원 대상 권역이 방대해져 군판사 및 법원서기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대중교통 이용시 재판기록의 분실우려가 있으며, 출장시 개인차량 이용 등으로 출장비가 과다 청구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음. 그래서 해군 군사법원은 다인승 차량(9인승 카니발)을 신규 편성하여 군판사와 법원서기의 순회재판 지원을 원활히 하고, 재판지원 대상 부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였음. 신규 도입한 다인승 차량은 재2재판부(작전사령부)에 1대 추가 편성 예정이며, 전시·사변시에 법정 손상 및 네트워크가 단절됨에 따라 해군·해병대 주둔지 및 함상에 군사법원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법정장비 운반용 기동자산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사. 17년 군판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17. 12.)

'17. 12. 19. 7전단 서귀포법정에서 군판사·법원서기 직무교육 및 성과분석회의를 개최하였음. 17년 주요 실시 업무에 대한 성과분석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분석·토의를 하였으며 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정하였음. 이날 군사법원장은 해군 군사법원의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온 군사법원 구성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적이 우수한 대원들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 하였음. 성과분석회의에 이어 군판사·법원서기 직무교육이 이어졌으며 군검사의 소송수행간 오류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재판 관련 최근 쟁점에 대해 각 군판사가 발표·토의하였고, 해군 군사법원 주임상사는 예하 군사법원 지도방문 결과분석을 통해 재판사무 수행 시 하자사례를 수정, 보완하도록 지도하였음.

아. 군사법원 재판실무서 5권 발간

해군 군사법원이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권의 군사재판 실무서(군사재판실무, 군사법원 주요법령 및 최신판례, 군사법원 실무제요, 해군 군판사·법원서기 회의 자료집, 해군 군사법원 서기 실무)의 17년판을 발간하였음. 5가지의 재판 실무서를 군판사 및 법원서기가 보직되어 있는 일선 부대에 배포하여 민간 재판과 구별되는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개정된 최신 법령 및 판례를 숙지하게 하며, 군사재판 관련 이론은 물론 실무관련 자료까지도 폭넓게 습득하게 함으로써 숙련된 군 법률전문가를 양성 하는데 실무서 발간 목적이 있음. 특히, 개정되어 17년에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해군 군사법원의 의지를 담아냄.

자. 성범죄사건 엄정대응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해군 영관 장교의 군인등장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징역 17년형을 선고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천명하였음.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 중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에 차단봉, 차단막을 설치하여 동선을 분리함.

□ 공군 군사법원

부서	직책	현보직		비고
		계(직)급	성명	
지휘부	군사법원장	공군중령	권상진	
재판1부	재판1부장(겸직)	중령	권상진	
	보통법원판사	소령	손미희	수석군판사
	보통법원판사	소령	임슬기	
	재판연구관	대위	김민순	
	재판연구관	대위(진)	박성태	
	합의재판사무담당	5급	김종만	
	단독재판사무담당	상사	이정길	
재판2부	재판2부장	중령	이형일	
	보통법원판사	소령(진)	방지혁	
	보통법원판사	소령(진)	홍지연	
	재판연구관	대위(진)	정성화	
	재판연구관	대위(진)	김준효	
국선변호부	국선변호부장	대위(진)	정중원	
	국선변호장교	중위	이준구	
		중위	이종윤	
국선변호사무담당	원사	전용진		
행정과	행정과장	준위	염규중	
	행정담당	상사	김일환	
	속기사	계약8호	염혜정	
	재판지원운전병	병장	허인재	
	재판기록관리병	병장	이지훈	
	행정병	일병	배민기	

○ 연간 주요 추진실적

● 재판·교육업무 등

- 재판업무
 - 정식 및 약식 사건, 구속적부심, 영장업무, 국선변호 업무 등 수행
- 증인지원관 교육
 - 기간/장소 : 1. 9. ~ 13. / 법원 공무원교육원(일산) * 법원서기 11명
- 군판사 직무교육
 - 기간/장소 : 5. 22. ~ 26. / 사법연수원 * 군판사 전원
- 국선변호장교 직무교육
 - 일자/장소 : 6. 16. / 고등군사법원 * 국선변호부 법무관 1명
- 5·18 특별조사단 파견
 - 기간/인원 : 9. 8. ~ 11. 30. / 재판2부 판사 1명
-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시험 출제위원 파견
 - 기간/인원 : 10. 10. ~ 18. / 국선변호부 법무관 1명

● 연구활동

- 군사법원 재판연구
 - 주요주제 : 수사보고서의 법적성질, 관할이전·이송,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검토
- 법률안 검토
 -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검토
 -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 * 세부주제 : 위력행사가족행위죄의 벌금형 상향,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 벌금형 추가
- 탈린매뉴얼 2.0 번역
- 항공우주작전법 연구
 - 주요주제 : 사이버 공교격에 관한 전쟁법·국제법상 쟁점 -탈린매뉴얼을 중심으로-
- 탈린매뉴얼 20. 번역
- 항공우주작전법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 '17. 11. 21.(화) 14:00 / 공군회관 3층 그랜드 볼룸
 - 참석 : 이상민 국회의원,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정영진 박사, 소재선 교수 등
 - 내용 :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의 내용과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영향 등의 주제에 관한 논문 발표 및 심층 토론

●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 장병 법률상담

- 개 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본부지역 장병들의 상담요청에 답변

* 상담요청자의 편의 및 전달 효율성 등 고려하여 인트라넷, 전화, 대면설명 방식으로 시행

- 주요주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대금 전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추후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임대인의 국세가 발견된 경우 임차보증금 확보 방안,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금 및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 산정 절차,

자신의 성명을 모용하여 원고들 중 한명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등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안 등

* 총 66개 주제에 관한 내용 상담·게시

○ 계룡시청 법률상담

- 개 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14:00 ~ 16:00

계룡시청을 방문하여 시민 등에 대해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주요주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부모님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신용으로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해당 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온 경우 대처방안,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의 대처방안,

거래처 상대방이 거래가 원활하지 않자 삼을 휘둘러 위협한 경우 협박죄 성립여부 등

* 총 42개 주제에 관한 내용 상담

○ 법률산책 작성·게시 및 책자발간

- 개 요

시사 법률문제 등 장병들의 궁금증이 야기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관한

기본내용을 알기쉽게 풀이하여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

- 주요주제

기내난동의 법적처리, 이혼관련 상식, 채권채무 상식, 개헌(改憲) 기본내용 등

* 총 10개 주제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책자로 발간

● 제도개선 등

- 개정 군사법원법 에 따른 군사법원 운영 방안 검토
 - 주요내용 : 재판부별 업무 분장, 순회재판 방법 등
- 공군 군사법원 예규 및 군판사 매뉴얼 개정
 - 주요내용 : 개정 군사법원법(시행일 : '17. 7. 7.)에 따른 관련 내용 순차 개정
- 공규 10-2 군사법원운영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군사법원 조직 및 업무분장, 세부관할, 군판사 임기에 관한 내용 추가
- 상황보고 준수절차 강조지시 교육
 - 일자/장소/대상 : '17. 1. 16.(월) / 소법정 / 전 직원

● 주요행사 및 조직력 강화활동

- 군사법원 부대창설 제17주년 기념행사
 - 일자/장소 : '17. 6. 30.(금) / 본부 군사법원 법정
 - 내용 : 법원창설기념 포상 및 병과장 격려사, 군사법원 운영방안 등 토론 등
- 군사법원 재판2부 개소식
 - 일자/장소 : '17. 7. 11.(화) / 오산기지 법정
 - 참석 : 작전사령관, 기동사령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방공관제사령부·방공유도탄 사령부 참모장, 법무실장 등
 - 내용 : 개소 현판식, 기념촬영, 다과회 등
- 군사법원 워크숍
 - 기간/장소 : '17. 12. 7.(목) ~ 8.(금) / 산악초타운 세미나장(전북 진안 소재)
 - 내용 : 법원발전 및 재판역량 강화, 항공우주법 세미나 발전방향 등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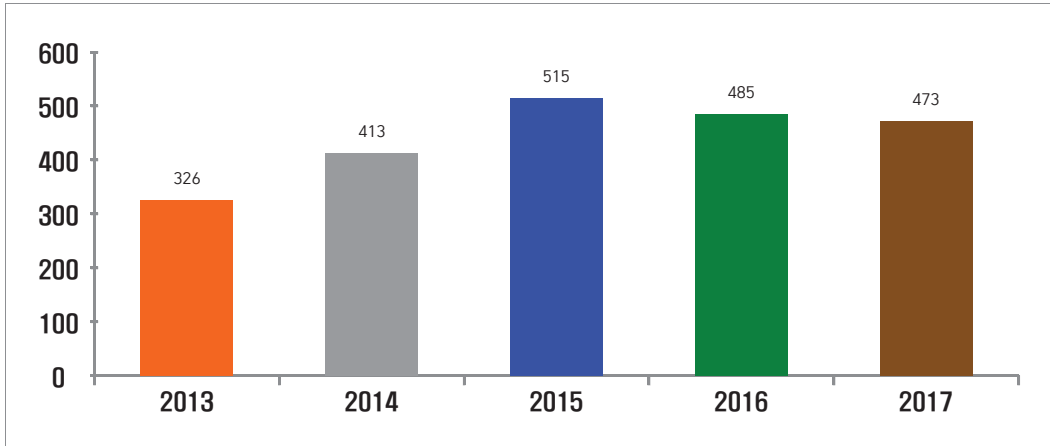
2017년
사건
통계현황



고등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326	413	515	485	473

○ 분석

- 2013년 이후 항소사건 접수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
- 2017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접수 2.5% 감소

2. 2017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73 (100)	36 (7.6)	357 (75.5)	56 (11.8)	24 (5.1)

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접수 현황

구분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212 (100)	128 (5.8)	1,762 (79.7)	202 (9.1)	120 (5.4)
2013년	명 (비율)	326 (100)	16 (4.9)	263 (80.7)	32 (9.8)	15 (4.6)
2014년	명 (비율)	413 (100)	11 (2.7)	358 (86.7)	27 (6.5)	17 (4.1)
2015년	명 (비율)	515 (100)	34 (6.6)	415 (80.6)	40 (7.8)	26 (5)
2016년	명 (비율)	485 (100)	31 (6.4)	369 (76.1)	47 (9.7)	38 (7.8)
2017년	명 (비율)	473 (100)	36 (7.6)	357 (75.5)	56 (11.8)	24 (5.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접수 중 육군 80%, 해군 9%, 국방부 및 공군 각 5% 차지
- 연도별 군별 접수 비율 유사, 2014년 이후 육군 사건 감소, 해군 사건 증가 추세
- 2017년 육군 76%, 해군 12%, 국방부 8%, 공군 5%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국방부 및 해군 사건 증가, 육군 및 공군 사건 감소

3. 2017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473 (100)	219 (46.3)	115 (24.3)	139 (29.4)

3-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항소인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12 (100)	1,046 (47.3)	501 (22.6)	665 (30.1)
2013년	명 (비율)	326 (100)	168 (51.5)	69 (21.2)	89 (27.3)
2014년	명 (비율)	413 (100)	198 (47.9)	87 (21.2)	128 (31)
2015년	명 (비율)	515 (100)	257 (49.9)	109 (21.2)	149 (28.9)
2016년	명 (비율)	485 (100)	204 (42.1)	121 (24.9)	160 (33)
2017년	명 (비율)	473 (100)	219 (46.3)	115 (24.3)	139 (29.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피고인 항소 77%, 군검사 항소 5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의 항소율 감소, 군검사의 항소율 증가 추세
- 2017년 항소사건 중 피고인 항소 76%, 군검사 항소 5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유사, 군검사의 항소율 감소

4. 2017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73 (100)	99 (20.9)	114 (24.1)	238 (50.3)	20 (4.2)	2 (0.4)

4-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12 (100)	373 (16.9)	505 (22.8)	1,237 (55.9)	70 (3.2)	29 (1.2)
2013년	명 (비율)	326 (100)	48 (14.7)	60 (18.4)	209 (64.1)	8 (2.5)	1 (0.3)
2014년	명 (비율)	413 (100)	51 (12.3)	86 (20.8)	263 (63.7)	13 (3.1)	0 (0)
2015년	명 (비율)	515 (100)	88 (17.1)	113 (21.9)	289 (56.1)	12 (2.3)	13 (2.5)
2016년	명 (비율)	485 (100)	87 (17.9)	132 (27.2)	238 (49.1)	17 (3.5)	11 (2.3)
2017년	명 (비율)	473 (100)	99 (20.9)	114 (24.1)	238 (50.3)	20 (4.2)	2 (0.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6%, 준·부사관 23%, 장교 17%, 군무원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추세
- 2017년 접수 중 병 50%, 준·부사관 24%, 장교 21%, 군무원 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장교 및 군무원 사건 증가, 준·부사관 사건 감소, 병 사건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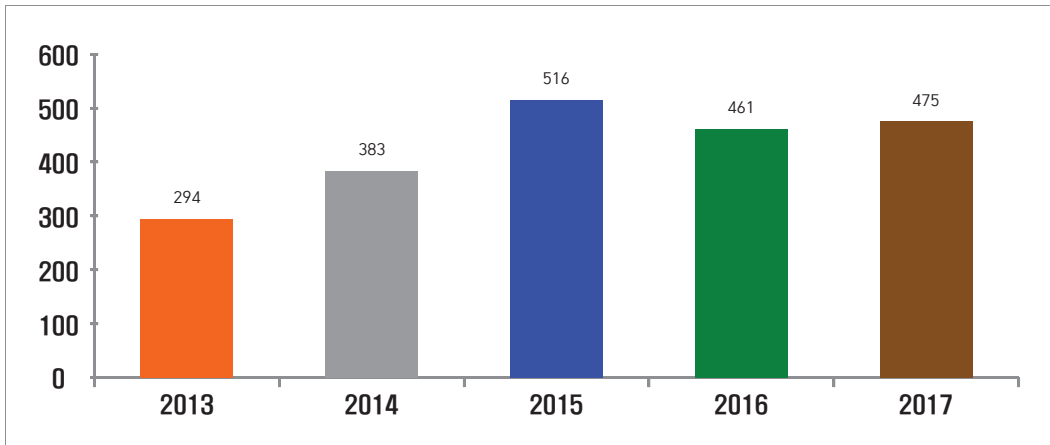
5. 2017년 항소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73	99	114	238	20	2
군형법 범	간첩이적	0				
	군무이탈	14	1	2	11	
	상관에관한죄	14	1	6	5	2
	군용물관련죄	10	4	4		2
	초병에관한죄	8	1	1	6	
	성범죄(추행)	57	17	15	24	1
	기타	3	3			
주요형법 범	내란소요죄	0				
	뇌물에관한죄	12	4	6		2
	문서인장죄	11	4	3	2	2
	살인의죄	0				
	과실치사상죄	0				
	절도강도의죄	9	1	2	6	
	사기횡령배임죄	35	6	7	21	1
풍속에관한죄	0					
교통법 범	교통법위반	15	5	6	4	
	도교법위반	13	1	5	4	3
	특가법(도주)	10	2	4	3	1
상법 범	형법위반	51	7	12	32	
	성폭법위반	53	10	7	34	2
	아청법위반	19	2	3	14	
	성매매특별법	3	1		2	
특별법 범	상해,폭행	40	5	12	21	2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13		1	12	
군사기밀보호법	4	1	1		2	
국가보안법	0					
기타	79	23	17	37	2	

○ 분석

- 2017년 접수 중 성범죄(군내 포함) 39%, 주요형법범 14%, 폭력범죄 11%,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10% 차지
- 신분별 주요 범죄 비율
 - 장교: 성범죄(군내 포함) 37%,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10%
 - 준·부사관: 성범죄(군내 포함) 32%,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11%
 - 병: 성범죄(군내 포함) 45%,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9%
 - 군무원: 주요형법범 25%, 교통범죄 20%
 - 민간인: 군용물관련죄 100%

6.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 결과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294	383	516	461	475

○ 분석

- 2013년 이후 항소사건 처리 증가 추세
- 2017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처리 3% 증가

7. 2017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명 (비율)	475 (100)	34 (7.2)	349 (73.5)	63 (13.3)	29 (6.1)

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129 (100)	114 (5.4)	1,706 (80.1)	192 (9)	117 (5.5)
2013년	명 (비율)	294 (100)	13 (4.4)	239 (81.3)	27 (9.2)	15 (5.1)
2014년	명 (비율)	383 (100)	17 (4.4)	328 (85.6)	28 (7.3)	10 (2.6)
2015년	명 (비율)	516 (100)	22 (4.3)	423 (82)	45(8.7)	26 (5)
2016년	명 (비율)	461 (100)	28 (6.1)	367 (79.6)	29 (6.3)	37 (8)
2017년	명 (비율)	475 (100)	34 (7.2)	349 (73.5)	63 (13.3)	29 (6.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항소사건 처리 중 육군 80%, 해군 9%, 국방부 및 공군 각 5% 차지
- 연도별 군별 처리 비율 유사, 2014년 이후 국방부 사건 증가, 육군 사건 감소 추세
- 2017년 육군 74%, 해군 13%, 국방부 7%, 공군 6%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국방부 및 해군 사건 증가, 육군 및 공군 사건 감소

8. 2017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명 (비율)	475 (100)	124 (26.1)	351 (73.9)

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구속 / 불구속 현황

구분	합계	구속	불구속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29 (100)	759 (35.7)	1,370 (64.3)
2013년	명 (비율)	294 (100)	134 (45.6)	160 (54.4)
2014년	명 (비율)	383 (100)	161 (42)	222 (58)
2015년	명 (비율)	516 (100)	192 (37.2)	324 (62.8)
2016년	명 (비율)	461 (100)	148 (32.1)	313 (67.9)
2017년	명 (비율)	475 (100)	124 (26.1)	351 (73.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구속 사건 36%, 불구속 사건 6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추세
- 2017년 항소사건 중 구속 사건 26%, 불구속 사건 74%
- 2017년 전년 대비 구속 사건 감소, 불구속 사건 증가

9. 2017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파기자판				파기율	항소기각		
		소계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명 (비율)	475 (100)	202 (42.5)	53 (11.2)	35 (7.4)	114 (24)	52%	186 (39.2)	23 (4.8)	64 (13.5)

※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항소취하, 이송 등(이송, 면소, 공소기각) 제외]

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재판결과

구분	합계	판결						항소취하	이송 등	
		파기자판				파기율	항소기각			
		소계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29 (100)	993 (46.7)	207 (9.7)	138 (6.5)	648 (30.5)	56%	768 (36.1)	118 (5.4)	250 (11.8)
2013년	명 (비율)	294 (100)	165 (56.1)	25 (8.5)	21 (7.1)	119 (40.5)	63%	99 (33.7)	8 (2.7)	22 (7.5)
2014년	명 (비율)	383 (100)	213 (55.6)	45 (11.7)	37 (9.7)	131 (34.2)	63%	125 (32.6)	10 (2.6)	35 (9.1)
2015년	명 (비율)	516 (100)	238 (46.1)	44 (8.5)	28 (5.4)	166 (32.2)	58%	175 (33.9)	42 (8.1)	61 (11.8)
2016년	명 (비율)	461 (100)	175 (38)	40 (8.7)	17 (3.7)	118 (25.6)	49%	183 (39.7)	35 (7.6)	68 (14.8)
2017년	명 (비율)	475 (100)	202 (42.5)	53 (11.2)	35 (7.4)	114 (24)	52%	186 (39.2)	23 (4.8)	64 (13.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1심 파기 47%, 항소기각 36%, 이송 등 12%, 항소취하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기각 및 이송 등 증가, 1심 파기 중 양형 감경 감소 추세
- 2017년 항소사건 판결 중 1심 파기율 52%, 항소기각률 48%
- 2017년 전년 대비 항소사건 1심 파기율 증가, 항소취하 및 이송 등 감소

10. 2017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75 (100)	93 (19.6)	126 (26.5)	229 (48.2)	23 (4.8)	4 (0.8)

10-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	합계 (비율)	2,129 (100)	350 (16.4)	474(22.3)	1,223 (57.4)	64 (3)	18 (0.8)
2013년	명 (비율)	294 (100)	40 (13.6)	58 (19.7)	187 (63.6)	7 (2.4)	2 (0.7)
2014년	명 (비율)	383 (100)	55 (14.4)	71 (18.5)	244 (63.7)	11 (2.9)	2 (0.5)
2015년	명 (비율)	516 (100)	63 (12.2)	120 (23.3)	314 (60.9)	15 (2.9)	4 (0.8)
2016년	명 (비율)	461 (100)	99 (21.5)	99 (21.5)	249 (54)	8 (1.7)	6 (1.3)
2017년	명 (비율)	475 (100)	93 (19.6)	126 (26.5)	229 (48.2)	23 (4.8)	4 (0.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병 57%, 준·부사관 22%, 장교 16%, 군무원 3%, 민간인 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만 감소, 타 신분은 계속 변동
- 2017년 병 48%, 준·부사관 27%, 장교 20%, 군무원 5%, 민간인 1%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및 군무원 사건 증가, 장교 및 병 사건 감소

11. 2017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명 (비율)	475 (100)	46 (9.7)	74 (15.6)	34 (7.2)	189 (39.8)	44 (9.3)	4 (0.8)	84 (17.7)

11-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타
5년 평균	합계 (비율)	2,129 (100)	325 (15.3)	329 (15.5)	159 (7.5)	729 (34.2)	352 (16.5)	30 (1.4)	205 (9.6)
2013년	명 (비율)	294 (100)	74 (25.2)	53 (18)	25 (8.5)	71 (24.1)	47 (16)	6 (2)	18 (6.1)
2014년	명 (비율)	383 (100)	90 (23.5)	51 (13.3)	27 (7)	124 (32.4)	69 (18)	7 (1.8)	15 (3.9)
2015년	명 (비율)	516 (100)	60 (11.6)	79 (15.3)	37 (7.2)	182 (35.3)	108 (20.9)	4 (0.8)	46 (8.9)
2016년	명 (비율)	461 (100)	55 (11.9)	72 (15.6)	36 (7.8)	163 (35.4)	84 (18.2)	9 (2)	42 (9.1)
2017년	명 (비율)	475 (100)	46 (9.7)	74 (15.6)	34 (7.2)	189 (39.8)	44 (9.3)	4 (0.8)	84 (17.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34%, 폭력범죄 17%, 주요형법범 16%, 군형법범 1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성범죄 증가, 군형법범 및 폭력범죄 감소 추세
- 2017년 항소사건 중 성범죄 40%, 주요형법범 16%, 군형법범 10%, 폭력범죄 9%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성범죄 증가, 군형법범 및 폭력범죄 감소

12. 2017년 항소사건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75 (100)	0 (0)	89 (18.7)	127 (26.7)	104 (21.9)	16 (3.4)	52 (10.9)	87 (18.3)

※ 이송 등: 이송, 항소취하, 면소, 공소기각

12-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29 (100)	1 (=0)	486 (22.8)	641 (30.1)	364 (17.1)	97 (4.6)	172 (8.1)	368 (17.3)
2013년	명 (비율)	294 (100)	0 (0)	72 (24.5)	109 (37.1)	50 (17)	11 (3.7)	22 (7.5)	30 (10.2)
2014년	명 (비율)	383 (100)	0 (0)	102 (26.6)	128 (33.4)	56 (14.6)	32 (8.4)	20 (5.2)	45 (11.7)
2015년	명 (비율)	516 (100)	1 (0.2)	121 (23.4)	155 (30)	80 (15.5)	18 (3.5)	38 (7.4)	103 (20)
2016년	명 (비율)	461 (100)	0 (0)	102 (22.1)	122 (26.5)	74 (16.1)	20 (4.3)	40 (8.7)	103 (22.3)
2017년	명 (비율)	475 (100)	0 (0)	89 (18.7)	127 (26.7)	104 (21.9)	16 (3.4)	52 (10.9)	87 (18.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30%, 자유형 23%, 재산형 17%, 무죄 8%, 선고유예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재산형 및 무죄 증가,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감소 추세
- 2017년 항소사건 중 집행유예 27%, 재산형 22%, 자유형 19%, 무죄 11%, 선고유예 3%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재산형 및 무죄 증가, 자유형 및 선고유예 감소

13. 2017년 항소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75	0	89	127	104	16	52	87	
면죄부	간첩이적	0							
	군무이탈	11		7	1		1	2	
	상관에관한죄	12		2	6		1	3	
	군용물관련죄	13		5	5		2	1	
	초병에관한죄	9			4		1	4	
	성범죄(군인대상)	58		3	35		2	6	12
	기타	2		1		1			
주요형법	내란소요죄	0							
	뇌물예관한죄	10		4	3	1	1	1	
	문서인장죄	8			4	1		1	2
	살인의죄	0							
	과실치사상죄	0							
	철도강도의죄	15		4	4	3	1	1	2
	사기횡령배임죄	41		16	11	8		2	4
	풍속에관한죄	0							
치벌법	교특법위반	15		1	3	8		1	2
	도교법위반	13			2	8		2	1
	특가법(도주)	6		2	1	3			
	형법위반	58		10	13	11	1	10	13
치벌소	성폭법위반	53		13	8	13		6	13
	아청법위반	18		4	3	7		1	3
	성매매특별법	1							1
	상해,폭행	37		5	11	5	5	3	8
치벌소	상해등치사	0							
	폭처법위반	8		3		2		1	2
	군사기밀보호법	4		2			1	1	
	국가보안법	0							
	기타	83		7	13	33	3	14	13

○ 분석

- 성범죄(군내 포함) 40%, 군형법(성범죄 제외) 22%, 주요형법 16%, 폭력범죄 9% 차지
- 군형법의 경우 집행유예 49%, 자유형 17%, 무죄 8% 차지
- 성범죄의 경우 재산형 24%, 자유형 21%, 집행유예 18%, 무죄 13% 차지

14. 2017년 항소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이송 등
합계	475	0	89	127	104	16	52	87
장교	장성	1	0	0	0	1	0	0
	영관	43	0	9	10	15	0	4
	위관	49	0	6	14	12	1	6
준·부사관	126	0	16	41	30	10	21	8
병	229	0	57	51	41	4	10	66
군무원	23	0	0	10	5	1	4	3
민간인	4	0	1	1	0	0	2	0

○ 분석

- 장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0%, 집행유예 26%, 자유형 및 무죄 16% 차지
- 준·부사관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3%, 재산형 24%, 무죄 17%, 자유형 13% 차지
- 병 사건의 경우 자유형 25%, 집행유예 22%, 재산형 18%, 무죄 4% 차지
- 군무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43%, 재산형 22%, 무죄 17% 차지
- 민간인 사건의 경우 무죄 50%,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25% 차지

15. 2017년 항소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89 (100)	0 (0)	0 (0)	6 (6.7)	18 (20.2)	44 (49.4)	21 (23.6)

15-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86 (100)	0 (0)	12 (2.5)	46 (9.5)	74 (15.2)	239 (49.2)	115 (23.7)
2013년	명 (비율)	72 (100)	0 (0)	0 (0)	3 (4.2)	16 (22.2)	34 (47.2)	19 (26.4)
2014년	명 (비율)	102 (100)	0 (0)	2 (2)	9 (9)	15 (15)	56 (56)	20 (20)
2015년	명 (비율)	121 (100)	0 (0)	7 (5.8)	10 (8.3)	13 (10.7)	61 (50.4)	30 (24.8)
2016년	명 (비율)	102 (100)	0 (0)	3 (3)	18 (18)	12 (12)	44 (44)	25 (25)
2017년	명 (비율)	89 (100)	0 (0)	0 (0)	6 (6.7)	18 (20.2)	44 (49.4)	21 (23.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1년 이상 3년 미만 49%, 3년 이상 27%, 1년 미만 2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3년 이상 증가, 3년 미만 감소 추세
- 2017년 1년 이상 3년 미만 49%, 3년 이상 27%, 1년 미만 2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1년 이상 3년 미만 증가, 3년 이상 및 1년 미만 감소

16. 2017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명 (비율)	475 (100)	45 (9.5)	31 (6.5)	61 (12.8)	121 (25.5)	92 (19.4)	57 (12)	29 (6.1)	21 (4.4)	13 (2.7)	5 (1.1)

16-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처리일수

구 분		합계	사건처리 일수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129 (100)	298 (14)	222 (10.4)	315 (14.8)	407 (19.1)	344 (16.2)	255 (12)	132 (6.2)	71 (3.3)	41 (1.9)	44 (2.1)
2013년	명 (비율)	294 (100)	39 (13.3)	46 (15.6)	77 (26.2)	48 (16.3)	37 (12.6)	19 (6.5)	17 (5.8)	2 (0.7)	4 (1.4)	5 (1.7)
2014년	명 (비율)	383 (100)	59 (15.4)	42 (11)	57 (14.9)	65 (17)	55 (14.4)	42 (11)	27 (7)	14 (3.7)	5 (1.3)	17 (4.4)
2015년	명 (비율)	516 (100)	95 (18.4)	65 (12.6)	71 (13.8)	92 (17.8)	75 (14.5)	55 (10.7)	30 (5.8)	21 (4.1)	5 (1)	7 (1.4)
2016년	명 (비율)	461 (100)	60 (13)	38 (8.2)	49 (10.6)	81 (17.6)	85 (18.4)	82 (17.8)	29 (6.3)	13 (2.8)	14 (3)	10 (2.2)
2017년	명 (비율)	475 (100)	45 (9.5)	31 (6.5)	61 (12.8)	121 (25.5)	92 (19.4)	57 (12)	29 (6.1)	21 (4.4)	13 (2.7)	5 (1.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처리 중 120일 이내 39%, 121일 이상 210일 이내 47%, 211일 이상 1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20일 이내 감소, 121일 이상 증가 추세
- 2017년 처리 중 120일 이내 29%,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7%, 211일 이상 1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120일 이내 처리 감소, 120일 이상 210일 이내 처리 증가

17. 2017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388 (100)	175 (45.1)	118 (30.4)	57 (14.7)	213 (54.9)

※ 이송 등 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7-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761 (100)	899 (51.1)	670 (38)	229 (13)	862 (48.9)
2013년	명 (비율)	264 (100)	136 (51.5)	116 (43.9)	20 (7.6)	128 (48.5)
2014년	명 (비율)	338 (100)	195 (57.7)	147 (43.5)	48 (14.2)	143 (42.3)
2015년	명 (비율)	413 (100)	219 (53)	163 (39.5)	56 (13.6)	194 (47)
2016년	명 (비율)	358 (100)	174 (48.6)	126 (35.2)	48 (13.4)	184 (51.4)
2017년	명 (비율)	388 (100)	175 (45.1)	118 (30.4)	57 (14.7)	213 (54.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49%,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75%
- 연도별 분석결과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감소 추세
- 2017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55%,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67%
- 2017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감소

18. 2017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합계	188	6	12	10	0	6	0	5	5	18	8	1	10	0	3	19	26	13	2	7	0	34	0	3	0	0	0	0	0
군형법위반	58	2	8			1		2		16		1	5		1	1	9		1			9		2					
형법위반	58	2	3	3		3			3	1	2			4	2	5	9	6	1	3		11							
성폭법위반	53	2	1	5		1		2	2	1	4			1		9	5	4		4		11	1						
아청법위반	18			2		1					2					4	3	3				3							
기타	1							1																					

18-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728	22	45	28	1	22	8	32	60	20	16	21	1	10	134	139	35	6	29		89		5	3			2			
	군형법위반	223	11	29			9	3	10	43		14	7	1	5	18	36		2	1		31		3							
	형법위반	193	6	8	7	1	4		6	6	5	2	11		3	27	45	14	2	10		32		1	1			2			
	성폭법위반	201	5	7	13		4	4	11	7	10		2			62	35	13	1	6		19		1	1						
	아청법위반	101			6		1		5	4	4		1		2	27	23	8	1	12		7									
	기타	10		1	2		4	1				1																1			
2013년	소계	71	2	3	2				1	7	2		1			26	17	1	1	3		4					1				
	군형법위반	9	1										1			3	1		1			1									
	형법위반	17		1	1					2						4	6	1		1							1				
	성폭법위반	25	1	2						2	2					13	3					2									
	아청법위반	19							1	2						6	7			2		1									
	기타	1			1																							1			
2014년	소계	124	4	10	5	1	4	2	6	7		6	3	1	23	32	8	2	4		5					1					
	군형법위반	31	1	6			2		1	3		5		1	8	3						1									
	형법위반	32	1	1	1	1			1	2		1	3			6	9	2		1		3									
	성폭법위반	40	2	3	1			2	2	2						7	13	5	1	1						1					
	아청법위반	18			2				2							2	7	1	1	2		1									
	기타	3			1		2																								
2015년	소계	182	6	5	5		7		12	17	3	3	2	1	5	38	41	8	1	7		17		2	1			1			
	군형법위반	69	3	4			3		6	13		3		1	3	4	16			1		11		1				1			
	형법위반	42	3		1		1		1	1	1		1		1	8	11	3	1	3		4		1				1			
	성폭법위반	41		1	3		1		4	1	1					16	9	3				2									
	아청법위반	26			1				1	2			1		1	10	5	2		3											
	기타	4					2					1															1				
2016년	소계	163	4	15	6		5	1	8	11	7	6	5		1	28	23	5		8		29						1			
	군형법위반	56	4	11			3	1	3	10		5	1			2	7					9									
	형법위반	44		3	1				1		2	1	3			4	10	2		2		14						1			
	성폭법위반	42			4		2		3	1	3		1			17	5	1		1		4									
	아청법위반	20			1				1		2				1	5	1	2		5		2									
	기타	1		1																											
2017년	소계	188	6	12	10		6	5	5	18	8	1	10	3	19	26	13	2	7		34		3								
	군형법위반	58	2	8			1	2		16		1	5	1	1	9			1			9		2							
	형법위반	58	2	3	3		3		3	1	2		4	2	5	9	6	1	3		11										
	성폭법위반	53	2	1	5		1	2	2	1	4		1			9	5	4		4		11	1								
	아청법위반	18			2		1				2					4	3	3				3									
	기타	1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1%, 아청법위반 14% 차지, 병 59%, 준·부사관 22%, 장교 17%, 군무원 1% 차지, 집행유예 34%, 자유형 26%, 재산형 12%, 무죄 10%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죄명별 군형법위반 증가, 아청법위반 감소 추세, 신분별 장교 및 군무원 증가, 병 감소 추세, 형기별 집행유예·재산형·무죄 증가, 자유형 감소 추세
- 2017년 군형법위반 31%, 아청법위반 10% 차지, 전년 대비 일반형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증가
- 2017년 병 54%, 준·부사관 24%, 장교 21% 차지, 전년 대비 장교 및 군무원 증가, 병 감소
- 2017년 집행유예 31%, 자유형 및 재산형 각 16%, 무죄 12% 차지, 전년 대비 집행유예, 재산형, 무죄 증가, 자유형 감소

19. 2017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4 (100)	1 (25)	1 (25)	0 (0)	0 (0)	2 (50)	0 (0)

19-1. 최근 5년간 항소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재판결과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8 (100)	3 (16.7)	10 (55.6)	0 (0)	0 (0)	3 (16.7)	2 (11.1)
2013년	명 (비율)	2 (100)	1 (50)	0 (0)	0 (0)	0 (0)	1 (50)	0 (0)
2014년	명 (비율)	2 (100)	0 (0)	2 (100)	0 (0)	0 (0)	0 (0)	0 (0)
2015년	명 (비율)	4 (100)	0 (0)	2 (50)	0 (0)	0 (0)	0 (0)	2 (50)
2016년	명 (비율)	6 (100)	1 (16.7)	5 (83.3)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4 (100)	1 (25)	1 (25)	0 (0)	0 (0)	2 (5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집행유예 56%, 자유형 및 무죄 각 17% 차지
- 2017년 무죄 50%, 집행유예 25%, 자유형 17%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자유형 및 무죄 증가, 집행유예 감소

20. 2017년 항소사건 무죄 선고 현황(13명)

사건번호	계급	죄명	무죄 선고 사유	비고 (상고결과)
2016노93	대위	폭행 등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7. 5. 31. 상고기각
2016노129	중위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오〇〇 등의 진술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17. 5. 31. 상고기각
2016노141	7급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가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고심 계류 중
2016노187	중사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7. 5. 31. 상고기각
2016노196	중사	군인등강제추행 (예비적 죄명 상관폭행)	오른손 부분을 약 8-9초간 잡은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태양에 이른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불을 꼬집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7. 6. 29. 상고기각
2016노201	하사	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7. 4. 13. 상고기각
2016노277	중령	특경법위반(배임) 등	피고인이 작성한 각 실시완료증명서가 허위의 문서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임의 재하청 문제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심 계류 중
2016노289	상사	공갈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피해자의 채무의 청구를 못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항소심 확정
2017노27	대위	준강간치상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상고심 계류 중
2017노30	중사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리기사가 1차로에서 피고인을 내버려 둔 채차에서 내려버려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탄 후 그대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항소심 확정
2017노32	소령	사기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릴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 이 사건 주식의 용도 및 그 회수가가능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고심 계류 중
2017노36	일병	준강간 등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가진 직후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높음	2017. 9. 21. 상고기각
2017노234	상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선임이 앞에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총 9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고심 계류 중

21. 2017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명	388	176	45.4

21-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항소심 판결인원	상고인원	상고율
5년 평균율	2,042	744	36.4
2013년	294	101	34.4
2014년	383	128	33.4
2015년	516	168	32.6
2016년	461	172	37.3
2017년	388	176	45.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대법원 상고율 36%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율 감소하다가 증가 추세
- 2017년 대법원 상고율 45%, 전년 대비 상고율 증가

22. 2017년 상고사건 처리 결과

합계	판 결						상 고 파기율	상고취하	기타
	소계	상고기각	파 기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168	140	139	1	0	0	0.7	28	0	

※ 파기율 = 파기인원 / 판결인원 × 100 [상고취하, 기타 제외]

22-1. 최근 5년간 상고사건 처리 현황

구분	합계	판 결						상 고 파기율	상고취하	기타
		소계	상고기각	파 기						
				파기환송	파기이송	공소기각 (파기자판)				
5년 평균율	729	613	579	31	1	2	5.5	116	0	
2013년	111	94	89	5	0	0	5.3	17	0	
2014년	124	100	87	10	1	2	13	24	0	
2015년	168	141	130	11	0	0	7.8	27	0	
2016년	158	138	134	4	0	0	2.9	20	0	
2017년	168	140	139	1	0	0	0.7	28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상고기각률 94%, 상고사건 파기율 5.5% 차지, 선고 전 상고취하율 16%
- 연도별 분석결과 대법원 상고파기율 계속 5% 이상 되다가, 2016년 이후 대폭 감소,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율 감소 추세
- 2017년 대법원 상고파기율 0.7%, 전년 대비 대폭 감소
- 2017년 대법원 선고 전 상고취하율 17%, 전년 대비 증가

23. 2017년 상고심 파기 환송 현황(1건)

사건번호	죄명	파기사유
2014노43	상관모욕,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상관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부대 내 서열에 관하여 시험지를 풀도록 한 지시가 피고인의 직책인 50사단 정훈 교육장교 겸 정훈공보참모 보좌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뺨쳐를 시킨 행위도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법리오해: 1건

24. 2017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명 (비율)	101 (100)	87 (86.1)	4 (4)	5 (5)	5 (5)

24-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03 (100)	307 (76.2)	32 (7.9)	23 (5.7)	41 (10.2)
2013년	명 (비율)	73 (100)	57 (78.1)	5 (6.8)	2 (2.7)	9 (12.3)
2014년	명 (비율)	74 (100)	55 (74.3)	2 (2.7)	8 (10.8)	9 (12.2)
2015년	명 (비율)	83 (100)	55 (66.3)	11 (13.3)	6 (7.2)	11 (13.2)
2016년	명 (비율)	72 (100)	53 (73.6)	10 (13.9)	2 (2.8)	7 (9.7)
2017년	명 (비율)	101 (100)	87 (86)	4 (4)	5 (5)	5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76%, 보석청구 8%, 형사보상청구 6%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재정신청 증가, 형사보상청구 감소 추세
- 2017년 재정신청 86%, 보석청구 4%, 형사보상청구 5% 차지
- 2017년 전년대비 재정신청 및 형사보상청구 사건 증가, 보석청구 사건 대폭 감소

25. 2017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51	0	42	9	4	0	4	5	4	0	1	6	0	5	1

25-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재정신청				보석청구			형사보상청구				기 타			
	계	공소 제기	기각	이송	계	허가	기각	계	인용	기각	이송	계	인용	기각	이송
5년 평균	282	4	269	9	32	6	26	24	21	2	1	42	3	38	1
2013년	43	1	42	0	5	3	2	1	1	0	0	9	3	6	0
2014년	51	2	49	0	2	0	2	7	6	1	0	11	0	11	0
2015년	76	0	76	0	11	1	10	7	6	1	0	10	0	10	0
2016년	61	1	60	0	10	2	8	4	4	0	0	6	0	6	0
2017년	51	0	42	9	4	0	4	5	4	0	1	6	0	5	1

○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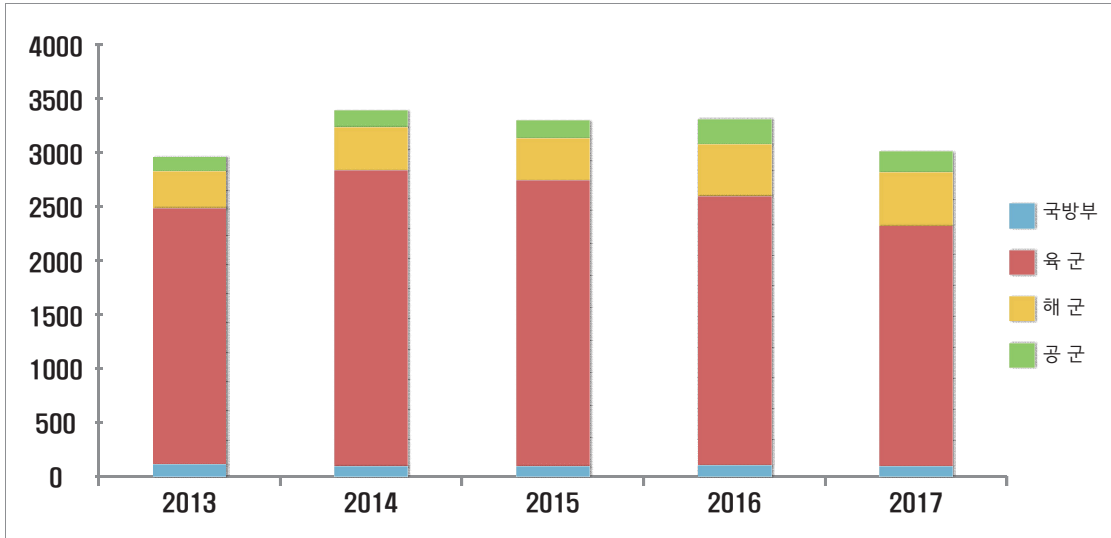
- 최근 5년 평균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1.4%, 보석청구 허가율 19%,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88%
- 연도별 분석결과 재정신청 공소제기율 감소 추세
- 2017년 재정신청기각률 82%, 재정신청 이송률 18%(대법원 2016도1891 결정), 보석청구기각률 100%,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80%
- 2017년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 2017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분에 따른 재판권 관할 조정



보통군사법원 종합

□ 국방부/각 군 보통군사법원 종합

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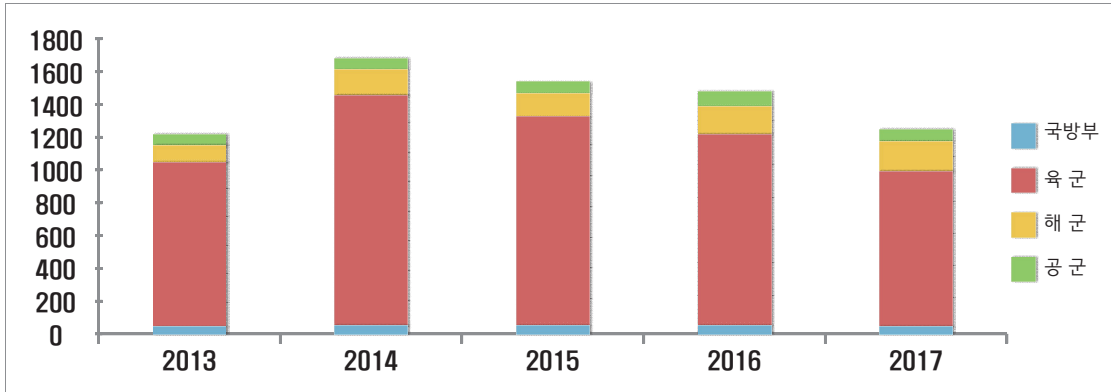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5,948 (100)		471 (3)		12,492 (78)		2,099 (13)		886 (6)	
	공판 약식	7,162 (100)	8,786 (100)	248 (3)	223 (3)	5,783 (81)	6,709 (76)	753 (11)	1,346 (15)	378 (5)	508 (6)
2013년	명 (비율)	2,958 (100)		106 (4)		2,377 (80)		337 (11)		138 (5)	
	공판 약식	1,218 (100)	1,740 (100)	43 (4)	63 (4)	1,004 (82)	1,373 (79)	103 (8)	234 (13)	68 (6)	70 (4)
2014년	명 (비율)	3,385 (100)		89 (3)		2,741 (81)		404 (12)		151 (4)	
	공판 약식	1,680 (100)	1,705 (100)	52 (3)	37 (2)	1,402 (83)	1,339 (79)	157 (10)	247 (14)	69 (4)	82 (5)
2015년	명 (비율)	3,292 (100)		91 (3)		2,644 (80)		391 (12)		166 (5)	
	공판 약식	1,538 (100)	1,754 (100)	54 (4)	37 (2)	1,270 (82)	1,374 (79)	139 (9)	252 (14)	75 (5)	91 (5)
2016년	명 (비율)	3,308 (100)		97 (3)		2,499 (76)		474 (14)		238 (7)	
	공판 약식	1,479 (100)	1,829 (100)	54 (4)	43 (2)	1,162 (79)	1,337 (73)	171 (11)	303 (17)	92 (6)	146 (8)
2017년	명 (비율)	3,005 (100)		88 (3)		2,231 (74)		493 (17)		193 (6)	
	공판 약식	1,247 (100)	1,758 (100)	45 (3)	43 (2)	945 (76)	1,286 (73)	183 (15)	310 (18)	74 (6)	119 (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8%, 해군 13%, 공군 6%, 국방부 3% 차지
- 육군 사건 감소, 해군 사건 증가 추세

2.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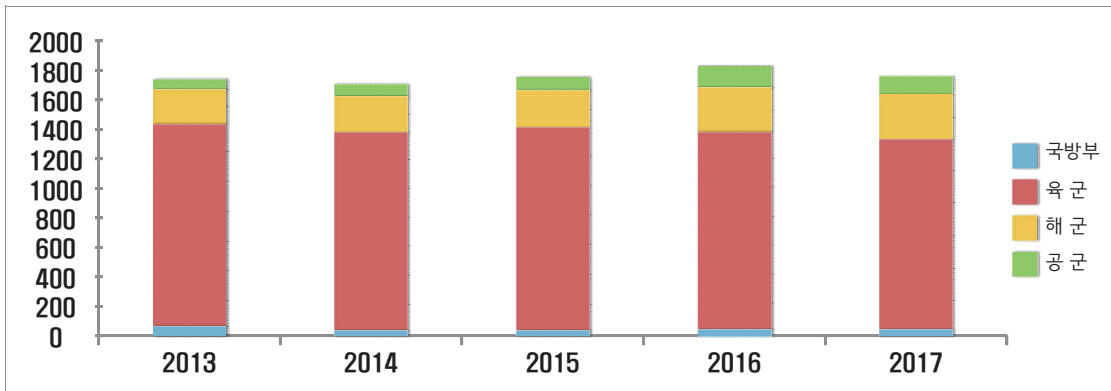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162 (100)	248 (3)	5,783 (81)	753 (11)	378 (5)
2013년	명 (비율)	1,218 (100)	43 (4)	1,004 (82)	103 (8)	68 (6)
2014년	명 (비율)	1,680 (100)	52 (3)	1,402 (83)	157 (10)	69 (4)
2015년	명 (비율)	1,538 (100)	54 (4)	1,270 (82)	139 (9)	75 (5)
2016년	명 (비율)	1,479 (100)	54 (4)	1,162 (79)	171 (11)	92 (6)
2017년	명 (비율)	1,247 (100)	45 (3)	945 (76)	183 (15)	74 (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 중 육군 81%, 해군 11%, 공군 5%, 국방부 3% 차지
- 육군 사건 감소, 해군 사건 증가 추세

3.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8,786 (100)	223 (3)	6,709 (76)	1,346 (15)	508 (6)
2013년	명 (비율)	1,740 (100)	63 (4)	1,373 (79)	234 (13)	70 (4)
2014년	명 (비율)	1,705 (100)	37 (2)	1,339 (79)	247 (14)	82 (5)
2015년	명 (비율)	1,754 (100)	37 (2)	1,374 (79)	252 (14)	91 (5)
2016년	명 (비율)	1,829 (100)	43 (2)	1,337 (73)	303 (17)	146 (8)
2017년	명 (비율)	1,758 (100)	43 (2)	1,286 (73)	310 (18)	119 (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약식사건 중 육군 76%, 해군 15%, 공군 6%, 국방부 3% 차지
- 육군 사건 감소, 해군 및 공군 사건 증가 추세

4.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3,005 (100)	328 (11)	1,014 (34)	1,571 (52)	81 (2.6)	11 (0.4)
국방부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육 군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해 군 (비율)	493 (100)	49 (9.9)	259 (52.6)	173 (35.1)	12 (2.4)	0 (0)
공 군 (비율)	193 (100)	28 (14.5)	96 (49.7)	58 (30.1)	9 (4.7)	2 (1)

○ 분석

- 2017년 전체 형사사건 신분별 접수 중 병 52%, 준·부사관 34%, 장교 11%, 군무원 2.6%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장교 44%, 육군의 경우 병 59%, 해군의 경우 준·부사관 53%, 공군의 경우 준·부사관 5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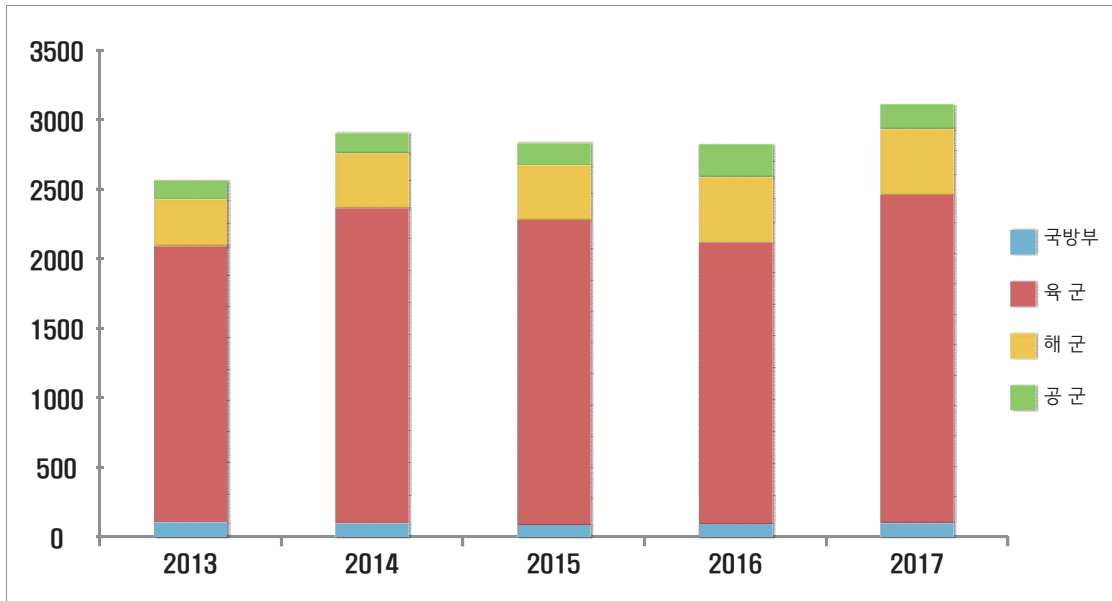
5.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죄명별 접수 현황

구 분	죄 명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3,005	328	1,014	1,571	81	11
	군형법(성범죄 제외)	240	21	56	153	4	6
	주요 형법	432	34	114	272	11	1
	교통범죄	980	165	546	219	50	0
	성범죄(군형법 포함)	435	49	90	287	7	2
	폭력범죄	484	16	114	349	5	1
	군기법/국보법	5	3	1	0	0	1
기 타	429	40	93	291	4	0	
국방부	소계	88	38	15	13	21	1
	군형법(성범죄 제외)	6	3		2	1	
	주요 형법	14	7	1	1	5	
	교통범죄	32	15	8	2	7	
	성범죄(군형법 포함)	13	3	3	4	3	
	폭력범죄	8		2	3	3	
	군기법/국보법	3	2				1
기 타	12	8	1	1	2		
육 군	소계	2,231	213	644	1,327	39	8
	군형법(성범죄 제외)	178	11	33	125	3	6
	주요 형법	296	16	50	223	6	1
	교통범죄	672	105	353	187	27	
	성범죄(군형법 포함)	338	38	58	241	1	
	폭력범죄	357	11	72	272	1	1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389	31	78	279	1		
해 군	소계	493	49	259	173	12	
	군형법(성범죄 제외)	46	3	19	24		
	주요 형법	81	6	43	32		
	교통범죄	205	30	142	25	8	
	성범죄(군형법 포함)	49	7	16	24	2	
	폭력범죄	90	2	27	60	1	
	군기법/국보법	1		1			
기 타	21	1	11	8	1		
공 군	소계	193	28	96	58	9	2
	군형법(성범죄 제외)	10	4	4	2		
	주요 형법	41	5	20	16		
	교통범죄	71	15	43	5	8	
	성범죄(군형법 포함)	35	1	13	18	1	2
	폭력범죄	30	3	13	14		
	군기법/국보법						
기 타	6		3	3			

○ 분석

- 2017년 전체 형사사건 죄명별 접수 중 교통범죄 33%, 폭력범죄 16%, 성범죄(군형법 포함) 14%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국방부 37%, 육군 30%, 해군 42%, 공군 37% 차지
- 폭력범죄의 경우 국방부 8%, 육군 16%, 해군 18%, 공군 16% 차지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국방부 15%, 육군 15%, 해군 10%, 공군 18% 차지

6.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처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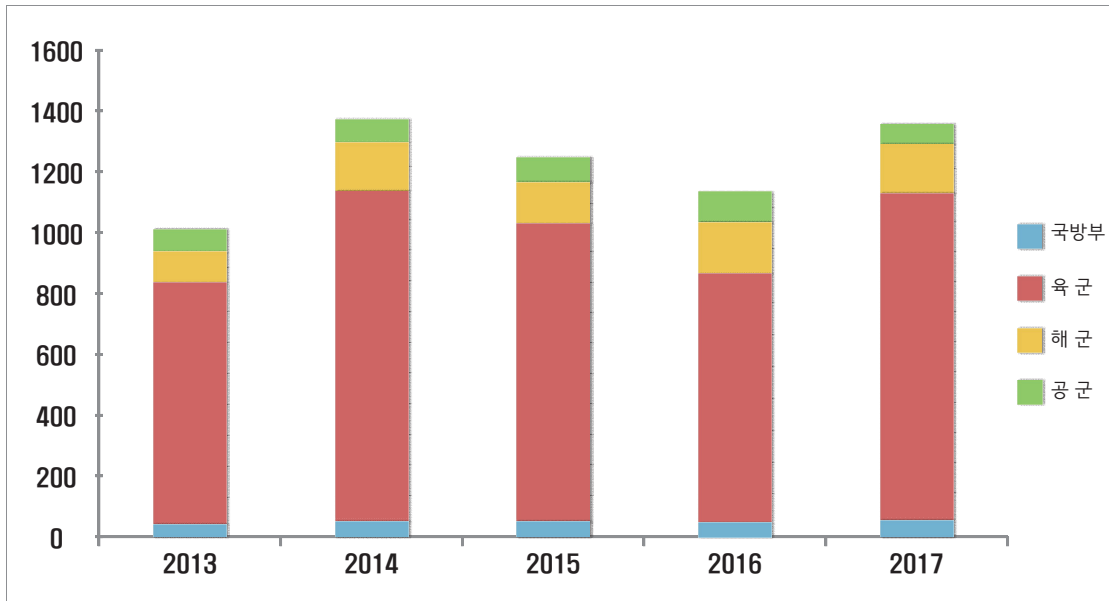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4,213 (100)		468 (3)		10,823 (76)		2,068 (15)		854 (6)	
	공판	약식	6,118 (100)	8,095 (100)	242 (4)	226 (3)	4,750 (78)	6,073 (75)	729 (12)	1,339 (16)	397 (6)
2013년	명 (비율)	2,558 (100)		100 (4)		1,986 (78)		337 (13)		135 (5)	
	공판	약식	1,010 (100)	1,548 (100)	40 (4)	60 (4)	794 (79)	1,192 (77)	103 (10)	234 (15)	73 (7)
2014년	명 (비율)	2,902 (100)		94 (3)		2,265 (78)		397 (14)		146 (5)	
	공판	약식	1,372 (100)	1,530 (100)	50 (4)	44 (3)	1,086 (79)	1,179 (77)	159 (11)	238 (15)	77 (6)
2015년	명 (비율)	2,830 (100)		84 (3)		2,192 (77)		391 (14)		163 (6)	
	공판	약식	1,246 (100)	1,584 (100)	51 (4)	33 (2)	978 (78)	1,214 (77)	136 (11)	255 (16)	81 (7)
2016년	명 (비율)	2,817 (100)		92 (3)		2,021 (72)		472 (17)		232 (8)	
	공판	약식	1,134 (100)	1,683 (100)	46 (4)	46 (3)	819 (72)	1,202 (71)	168 (15)	304 (18)	101 (9)
2017년	명 (비율)	3,106 (100)		98 (3)		2,359 (76)		471 (15)		178 (6)	
	공판	약식	1,356 (100)	1,750 (100)	55 (4)	43 (3)	1,073 (79)	1,286 (73)	163 (12)	308 (18)	65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형사사건 중 육군 76%, 해군 15%, 공군 6%, 국방부 3%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육군 사건 증가, 해군 및 공군 사건 감소

7. 최근 5년간 공판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6,118 (100)	242 (4)	4,750 (78)	729 (12)	397 (6)
2013년	명 (비율)	1,010 (100)	40 (4)	794 (79)	103 (10)	73 (7)
2014년	명 (비율)	1,372 (100)	50 (4)	1,086 (79)	159 (11)	77 (6)
2015년	명 (비율)	1,246 (100)	51 (4)	978 (78)	136 (11)	81 (7)
2016년	명 (비율)	1,134 (100)	46 (4)	819 (72)	168 (15)	101 (9)
2017년	명 (비율)	1,356 (100)	55 (4)	1,073 (79)	163 (12)	65 (5)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공판사건건 중 육군 78%, 해군 12%, 공군 6%, 국방부 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육군 사건 증가, 해군 및 공군 사건 감소

8. 2017년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356 (100)	146 (11)	348 (26)	814 (60)	35 (2)	13 (1)
국방부 (비율)	55 (100)	22 (40)	13 (24)	9 (16)	11 (20)	0 (0)
육 군 (비율)	1,073 (100)	106 (10)	230 (21)	708 (66)	16 (2)	13 (1)
해 군 (비율)	163 (100)	11 (7)	74 (45)	74 (45)	4 (3)	0 (0)
공 군 (비율)	65 (100)	7 (11)	31 (48)	23 (35)	4 (6)	0 (0)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신분별 처리 중 병 60%, 준·부사관 26%, 장교 11% 차지
- 국방부의 경우 40%, 육군의 경우 병 66%, 해군의 경우 준·부사관 및 병 각 45%, 공군의 경우 준·부사관 48% 차지

9. 2017년 공판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범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 타
합계 (비율)	1,356 (100)	216 (16)	210 (15)	103 (8)	348 (26)	178 (13)	6 (0.4)	295 (21.6)
국방부 (비율)	55 (100)	7 (13)	21 (39)	3 (5)	6 (11)	5 (9)	4 (7)	9 (16)
육 군 (비율)	1,073 (100)	168 (16)	134 (12)	74 (7)	279 (25.9)	141 (13)	1 (0.1)	276 (26)
해 군 (비율)	163 (100)	35 (21)	37 (23)	15 (9)	38 (23)	29 (18)	1 (1)	8 (5)
공 군 (비율)	65 (100)	6 (9)	18 (28)	11 (17)	25 (38)	3 (5)	0 (0)	2 (3)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죄명별 처리 중 성범죄(군형법 포함) 26%, 군형법범(성범죄 제외) 16%, 폭력범죄 13% 차지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국방부 11%, 육군 26%, 해군 23%, 공군 38% 차지
- 군형법범(성범죄 제외)의 경우 국방부 13%, 육군 16%, 해군 21%, 공군 9% 차지
- 폭력범죄의 경우 국방부 9%, 육군 13%, 해군 18%, 공군 5% 차지

10. 2017년 공판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합계	합계	1,356		104	351	325	85	50	12	142	287	
	장교	장성	1		1							
		영관	62		7	10	18	3	5		1	18
		위관	83		6	16	18	8	5	2	7	21
	준·부사관	348		21	73	114	20	18	5	11	86	
	병	814		66	238	166	54	18	4	122	146	
	군무원	35		4	8	9		4	1	1	8	
민간인	13			5						8		
국방부	소계	55		11	11	15	1	8		9		
	장교	장성										
		영관	19		3	4	6	1	4		1	
		위관	3			1					2	
	준·부사관	13		4	2	6		1				
	병	9				3				6		
	군무원	11		4	4			3				
민간인												
육군	소계	1,073		83	281	221	57	29	7	111	284	
	장교	장성	1		1							
		영관	35		2	5	8	2				18
		위관	70		6	11	17	5	3	2	5	21
	준·부사관	230		13	47	53	13	11	1	6	86	
	병	708		62	208	139	37	15	4	100	143	
	군무원	16			4	4					8	
민간인	13			5						8		
해군	소계	163		8	43	68	20	7	5	12		
	장교	장성										
		영관	4		1		2		1			
		위관	7			4	1	1	1			
	준·부사관	74		4	16	41	6	3	4			
	병	74		3	23	21	13	2		12		
	군무원	4				3			1			
민간인												
공군	소계	65		2	16	21	7	6		10	3	
	장교	장성										
		영관	4		1	1	2					
		위관	3					2	1			
	준·부사관	31			8	14	1	3		5		
	병	23		1	7	3	4	1		4	3	
	군무원	4				2		1		1		
민간인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형기별 처리 중 집행유예 26%, 재산형 24%, 자유형 8%, 선고유예 6%, 무죄 4% 차지
- 집행유예의 경우 국방부 20%, 육군 26%, 해군 26%, 공군 25% 차지
- 재산형의 경우 국방부 27%, 육군 21%, 해군 42%, 공군 32% 차지
- 자유형의 경우 국방부 20%, 육군 8%, 해군 5%, 공군 3% 차지

11. 2017년 공판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합계	1,356	689	288	172	113	51	20	4	5	4	10
	구 속	250	143	47	28	19	11	1	1	0	0	0
	불구속	1,106	546	241	144	94	40	18	3	5	4	10
국방부	소 계	55	11	7	5	6	9	4		4	2	7
	구 속	16	1	3	3	4	5					
	불구속	39	10	4	2	2	4	4		4	2	7
육 군	소 계	1,073	553	245	141	79	33	13	3	1	2	3
	구 속	198	114	41	22	14	5	1	1			
	불구속	875	439	204	119	65	28	12	2	1	2	3
해 군	소 계	163	94	27	18	20	3	1				
	구 속	28	24	2	2							
	불구속	135	70	25	16	20	3	1				
공 군	소 계	65	31	9	8	8	6	2	1			
	구 속	8	4	1	1	1	1					
	불구속	57	27	8	7	7	5	2	1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처리일수 중 120일 이내 처리 85%(구속 87%, 불구속 84%)
- 120일 이내 처리 국방부 42%, 육군 88%, 해군 85%, 공군 74% 차지

12. 2017년 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합계 (비율)	147 (100)	0 (0)	2 (2)	9 (6)	28 (19)	68 (46)	40 (27)
국방부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육 군 (비율)	125 (100)	0 (0)	1 (0.8)	6 (4.8)	25 (20)	58 (46.4)	35 (28)
해 군 (비율)	9 (100)	0 (0)	1 (11.1)	0 (0)	3 (33.3)	3 (33.3)	2 (22.3)
공 군 (비율)	2 (100)	0 (0)	0 (0)	1 (50)	0 (0)	1 (50)	0 (0)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46%, 3년 이상 27% 차지
- 자유형 처리 중 1년 이상 3년 미만 국방부 55%, 육군 46%, 해군 33%, 공군 50% 차지
- 자유형 처리 중 3년 이상 국방부 18%, 육군 26%, 해군 44%, 공군 50% 차지

13. 2017년 공판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합계	403	7	12	18	4	2	1	2	7	25	25	3	8		6	32	113	61	16	7	5	45	1	1	2						
	군형법위반	145	3	11	3	4			1		20	1	3	3		1	7	59		12	1		15	1								
	형법위반	103	1		5	1			1	1	4	6		4		2	9	26	22	2	3	4	11			1						
	성폭법위반	112	3	1	9		1	1			5	1	9		1		3	9	19	32	2	2	1	11		1	1					
	아청법위반	34			1					1		4						7	8	5		1		7								
	기타	9										5							1	2				1								
국방부	소계	6			1							1							1				1	1	1							
	군형법위반	1																						1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4			1							1							1						1							
	아청법위반	1																					1									
	기타																															
육 군	소계	334	5	11	15	4		1	2	4	17	18	2	5		6	27	98	56	12	5	5	41									
	군형법위반	116	2	10	2	4			1		13	1	2	2		1	6	50		8	1		13									
	형법위반	89	1		5				1	1	3	5		2		2	8	24	20	2	1	4	10									
	성폭법위반	93	2	1	7			1		2	1	5		1		3	9	16	29	2	2	1	11									
	아청법위반	27			1					1		2					4	7	5		1		6									
	기타	9										5							1	2			1									
해 군	소계	38	1	1	2		1			3	4	3	1	2		3	10	2	1	1		1				2						
	군형법위반	15		1	1						3		1				1	6		1			1									
	형법위반	10									1	1		2			1	2	1		1					1						
	성폭법위반	11	1		1		1			3		1						2	1						1							
	아청법위반	2										1					1															
	기타																															
공 군	소계	25	1			1				4	3		1			2	5	2	3	1		2										
	군형법위반	13	1							4			1				3		3			1										
	형법위반	4				1												1		1		1										
	성폭법위반	4										2					1	1														
	아청법위반	4										1					2	1														
	기타	0																														

○ 분석

- 2017년 전체 성범죄 처리 중 신분별 병 69%, 준·부사관 18%, 장교 11% 차지, 형기별 집행유예 37%, 재산형 26%, 자유형 12%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재산형 50%, 집행유예 17%, 육군의 경우 집행유예 38%, 재산형 27%, 해군의 경우 집행유예 39%, 재산형 18%, 공군의 경우 집행유예 36%, 재산형 20% 차지

14. 2017년 공판사건 무죄 현황

구 분	범죄유형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합계	42	9	14	15	4	
	군형법(성범죄 제외)	1		1			
	주요 형법범	12	5	4	1	2	
	교통범죄	5	1	1	2	1	
	성범죄(군형법 포함)	16	2	6	8		
	폭력범죄	2			2		
	군기법/국보법	2	1			1	
기 타	4		2	2			
국방부	소계	7	3	1		3	
	군형법(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5	2	1		2	
	교통범죄						
	성범죄(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2	1			1	
기 타							
육 군	소계	22	3	7	12		
	군형법(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5	2	2	1		
	교통범죄	4	1	1	2		
	성범죄(군형법 포함)	10		4	6		
	폭력범죄	2			2		
	군기법/국보법						
기 타	1			1			
해 군	소계	7	2	3	2		
	군형법(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범	2	1	1			
	교통범죄						
	성범죄(군형법 포함)	3	1	1	1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기 타	2		1	1			
공 군	소계	6	1	3	1	1	
	군형법(성범죄 제외)	1		1			
	주요 형법범						
	교통범죄	1				1	
	성범죄(군형법 포함)	3	1	1	1		
	폭력범죄						
	군기법/국보법						
기 타	1		1				

○ 분석

- 2017년 전체 무죄 판결 중 신분별 병 36%, 준·부사관 33%, 장교 21%, 군무원 10% 차지, 죄명별 성범죄(군형법 포함) 38%, 교통범죄 12% 차지
- 성범죄(군형법 포함)의 경우 국방부 0%, 육군 45%, 해군 43%, 공군 50% 차지

15. 2017년 공판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합계 (비율)	1,120 (100)	333 (30)	635 (57)	152 (13)
국방부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육 군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4)	111 (14.1)
해 군 (비율)	205 (100)	65 (31.7)	118 (57.6)	22 (10.7)
공 군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중 1심 확정 57%, 항소 30% 차지(이송 제외한 항소율 34%)
- 이송 제외한 항소율 국방부 78%, 육군 30%, 해군 36%, 공군 42%

16. 2017년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합계 (비율)	333 (100)	167 (50)	66 (20)	100 (30)
국방부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육 군 (비율)	205 (100)	119 (58)	34 (16.5)	52 (25.4)
해 군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공 군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항소인 현황 피고인 항소 50%, 쌍방 항소 30%, 군검사 항소 20% 차지
- 피고인 항소율 국방부 75%, 육군 83%, 해군 80%, 공군 63%

17. 2017년 공판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합계 (비율)	916 (100)	622 (68)	107 (12)	516 (56)	294 (32)
국방부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육 군 (비율)	654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해 군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공 군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 분석

- 2017년 전체 공판사건 변호인 현황 국선 68%, 사선 32% 차지
- 사선변호인 선임률의 경우 국방부 87%, 육군 27%, 해군 34%, 공군 43% 차지
- 국선변호인 중 변호사 선정률 국방부 17%, 육군 13%, 해군 25%, 공군 50% 차지

18. 2017년 약식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비율)	1,750 (100)	192 (11)	703 (40)	802 (46)	51 (3)	2 (=0)
국방부 (비율)	43 (100)	18 (42)	8 (19)	5 (12)	12 (28)	0 (0)
육 군 (비율)	1,286 (100)	122 (9)	457 (36)	678 (53)	27 (2)	2 (=0)
해 군 (비율)	308 (100)	34 (11)	176 (57)	90 (29)	8 (3)	0 (0)
공 군 (비율)	113 (100)	18 (16)	62 (55)	29 (26)	4 (3)	0 (0)

○ 분석

- 2017년 전체 약식사건 신분별 병 46%, 준·부사관 40%, 장교 11%, 군무원 3% 차지
- 국방부의 경우 장교 42%, 육군의 경우 병 53%, 해군의 경우 준·부사관 57%, 공군의 경우 준·부사관 55% 차지

19. 2017년 약식사건 죄명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군형법법 (성범죄 제외)	주요 형법	교통범죄	성범죄 (군형법 포함)	폭력범죄	군기/국보	기 타
합계 (비율)	1,750 (100)	22 (1)	217 (13)	872 (50)	71 (4)	299 (17)	0 (0)	269 (15)
국방부 (비율)	43 (100)	1 (2)	1 (2)	28 (65)	7 (17)	3 (7)	0 (0)	3 (7)
육 군 (비율)	1,286 (100)	11 (1)	159 (12)	596 (46)	53 (4)	216 (17)	0 (0)	251 (20)
해 군 (비율)	308 (100)	8 (3)	35 (11)	190 (62)	5 (2)	57 (18)	0 (0)	13 (4)
공 군 (비율)	113 (100)	2 (2)	22 (19)	58 (52)	6 (5)	23 (20)	0 (0)	2 (2)

○ 분석

- 2017년 전체 약식사건 죄명별 교통범죄 50%, 폭력범죄 17%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국방부 65%, 육군 46%, 해군 62%, 공군 52% 차지

20. 2017년 약식사건 공판회부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합계 (비율)	1,931 (100)	1,528 (79)	185 (10)	218 (11)
국방부 (비율)	43 (100)	41 (95.3)	2 (4.6)	0 (0)
육 군 (비율)	1,421 (100)	1,082 (76.1)	135 (9.5)	204 (14.3)
해 군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공 군 (비율)	122 (100)	111 (91)	8 (7)	3 (2)

○ 분석

- 2017년 전체 약식사건 약식명령 확정 79%, 공판절차 회부 10% 차지
- 공판절차 회부 국방부 5%, 육군 10%, 해군 12%, 공군 7% 차지

21. 2017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 구속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9	9 (100)	272	212 (78)	36	31 (86)	11	7 (64)	328	259 (79)

○ 분석

- 2017년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 79%
- 구속영장 발부율 국방부 100%, 육군 78%, 해군 86%, 공군 64%

■ 체포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0	0 (0)	43	37 (86)	5	5 (100)	1	1 (100)	49	43 (88)

○ 분석

- 2017년 전체 체포영장 발부율 88%
- 체포영장 발부율 국방부 0%, 육군 86%, 해군 100%, 공군 100%

■ 압수·수색영장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청 구	발 부 (발부율)
189	180 (95)	291	264 (91)	97	85 (88)	25	24 (96)	602	553 (92)

○ 분석

- 2017년 전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
-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국방부 95%, 육군 91%, 해군 88%, 공군 96%

22. 2017년 구속 관련 신청사건 처리 현황

■ 보석허가청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3	1 (33)	20	11 (55)	2	1 (50)	1	0 (0)	26	13 (50)

○ 분석

- 2017년 전체 보석허가청구 인용률 50%
- 보석허가청구 인용률 국방부 33%, 육군 55%, 해군 50%, 공군 0%

■ 구속적부심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합계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청구	인용 (인용률)
1	0 (0)	25	2 (8)	4	0 (0)	1	1 (100)	31	3 (10)

○ 분석

- 2017년 전체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10%
- 구속적부심청구 인용률 국방부 0%, 육군 8%, 해군 0%, 공군 1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 2017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88 (100)	45 (51.1)	43 (48.8)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을	471 (100)	248 (52.6)	223 (47.3)
2013년	106 (100)	43 (40.6)	63 (59.4)
2014년	89 (100)	52 (58.4)	37 (41.6)
2015년	91 (100)	54 (59.3)	37 (40.7)
2016년	97 (100)	54 (55.7)	43 (44.3)
2017년	88 (100)	45 (51.1)	43 (48.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53%, 약식 사건 47% 차지
-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감소

2.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45	43	20	18	7	8	7	6	10	11	1	1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 대상)											
기타	4	1	3				1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6		2		1			3			
	문서인장죄	4		2					2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사기공갈죄	3		2				1				
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	1	3	1	3							
	도교법위반(음주)	3	23	1	9	2	5		2	7		
	특가법위반(도주)											
성범죄	형법위반		1	1								
	성폭법위반	4	6	1	1	1	1	2	1	2		
	아청법위반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3	3			1	1	2	1	2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1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3		2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8	4	5	3	1			1	2			

○ 분석

- 2017년 접수 중 교통범죄 36%, 주요형법범 16%,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15%, 폭력범죄 8%, 군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7%, 군기법위반 3%
- 전체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 37%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8%

3. 2017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71 (100)	201 (42.6)	90 (19.1)	82 (17.4)	95 (20.1)	3 (0.6)
2013년	명 (비율)	106 (100)	38 (35.8)	28 (26.4)	21 (19.8)	19 (17.9)	0 (0)
2014년	명 (비율)	89 (100)	30 (33.7)	15 (16.8)	20 (22.4)	23 (25.8)	1 (1.1)
2015년	명 (비율)	91 (100)	48 (52.7)	13 (14.2)	17 (18.6)	13 (14.2)	0 (0)
2016년	명 (비율)	97 (100)	47 (48.4)	19 (19.5)	11 (11.3)	19 (19.5)	1 (1)
2017년	명 (비율)	88 (100)	38 (43.1)	15 (17)	13 (14.7)	21 (23.8)	1 (1.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군무원, 준·부사관, 병, 민간인 순임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7년 접수 중 장교 43%, 군무원 24%, 준·부사관 17%, 병 15%, 민간인 1%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소폭 감소 추세

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5 (100)	20 (44.4)	7 (15.5)	7 (15.5)	10 (22.2)	1 (2.2)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48 (100)	117 (47.1)	33 (13.3)	52 (20.9)	43 (17.3)	3 (1.2)
2013년	명 (비율)	43 (100)	17 (39.5)	9 (20.9)	10 (23.2)	7 (16.2)	0 (0)
2014년	명 (비율)	52 (100)	20 (38.4)	4 (7.7)	14 (26.9)	13 (25)	1 (1.9)
2015년	명 (비율)	54 (100)	33 (61.1)	4 (7.4)	13 (24)	4 (7.4)	0 (0)
2016년	명 (비율)	54 (100)	27 (50)	9 (16.6)	8 (14.8)	9 (16.6)	1 (1.8)
2017년	명 (비율)	45 (100)	20 (44.4)	7 (15.5)	7 (15.5)	10 (22.2)	1 (2.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현황은 장교, 군무원, 준·부사관, 병, 민간인 순임.
- 연도별 분석결과 병 사건 감소 추세, 그 외 신분 계속 변동
- 2017년 접수 중 장교 44%, 군무원 22%, 준·부사관 16%, 병 16%, 민간인 2%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접수사건 소폭 감소 추세

5.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98 (100)	55 (56.1)	22 (22.4)	13 (13.2)	9 (9.1)	11 (11.2)	0 (0)	43 (43.8)	18 (18.3)	8 (8.1)	5 (5.1)	12 (12.2)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68 (100)	242 (51.7)	117 (25)	31 (6.6)	53 (11.3)	38 (8.1)	3 (0.6)	226 (48.2)	87 (18.5)	56 (11.9)	29 (6.1)	54 (11.5)	0 (0)
2013년	명 (비율)	100 (100)	40 (40)	23 (23)	7 (7)	6 (6)	3 (3)	1 (1)	60 (60)	22 (22)	18 (18)	10 (10)	10 (10)	0 (0)
2014년	명 (비율)	94 (100)	50 (53.1)	16 (17)	5 (5.3)	16 (17)	13 (13.8)	0 (0)	44 (46.8)	12 (12.7)	12 (12.7)	7 (7.4)	13 (13.8)	0 (0)
2015년	명 (비율)	84 (100)	51 (60.7)	28 (33.3)	3 (3.5)	13 (15.4)	6 (7.1)	1 (1.1)	33 (39.2)	14 (16.6)	7 (8.3)	4 (4.7)	8 (9.5)	0 (0)
2016년	명 (비율)	92 (100)	46 (50)	28 (30.4)	3 (3.2)	9 (9.7)	5 (5.4)	1 (1)	46 (50)	21 (22.8)	11 (11.9)	3 (3.2)	11 (11.9)	0 (0)
2017년	명 (비율)	98 (100)	55 (56.1)	22 (22.4)	13 (13.2)	9 (9.1)	11 (11.2)	0 (0)	43 (43.8)	18 (18.3)	8 (8.1)	5 (5.1)	12 (12.2)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2017년 처리 중 장교 41%, 군무원 23%, 준·부사관 21%, 병 1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및 군무원 처리 비율 증가, 장교 사건 소폭감소, 병 사건 유사

6. 2017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98 (100)	55 (56.1)	0 (0)	11 (11.2)	11 (11.2)	15 (15.3)	1 (1)	8 (8.1)	0 (0)	9 (9.1)	0 (0)	43 (43.8)	41 (41.8)	2 (2)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68 (100)	242 (51.7)	0 (0)	45 (9.6)	73 (15.5)	56 (11.9)	17 (3.6)	19 (4)	4 (0.8)	28 (5.9)	0 (0)	226 (48.2)	209 (44.6)	17 (3.6)
2013년	명 (비율)	100 (100)	40 (40)	0 (0)	1 (1)	14 (14)	8 (8)	4 (4)	3 (3)	3 (3)	7 (7)	0 (0)	60 (60)	57 (57)	3 (3)
2014년	명 (비율)	94 (100)	50 (53.2)	0 (0)	3 (3.1)	19 (20.2)	13 (13.8)	8 (8.5)	1 (1)	0 (0)	6 (6.3)	0 (0)	44 (46.8)	38 (40.4)	6 (6.3)
2015년	명 (비율)	84 (100)	51 (60.7)	0 (0)	16 (19)	17 (20.2)	9 (10.7)	1 (1.1)	6 (7.1)	0 (0)	2 (2.3)	0 (0)	33 (39.3)	30 (35.7)	3 (3.5)
2016년	명 (비율)	92 (100)	46 (50)	0 (0)	14 (15.3)	12 (13.1)	11 (11.9)	3 (3.3)	1 (1)	1 (1)	4 (4.4)	0 (0)	46 (50)	43 (46.8)	3 (3.2)
2017년	명 (비율)	98 (100)	55 (56.1)	0 (0)	11 (11.2)	11 (11.2)	15 (15.3)	1 (1)	8 (8.1)	0 (0)	9 (9.1)	0 (0)	43 (43.8)	41 (41.8)	2 (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각 50% 유사,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30%, 자유형 18%, 재산형 19%, 무죄 8%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무죄 증가,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7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20%, 재산형 27%, 무죄 15%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무죄 및 재산형 증가, 선고유예, 자유형, 집행유예 감소

7.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8	55		11	11	15	1	8		9		43	41	2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1		1									
	군용물관련죄	1	1		1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1	1		1									
	기타	6	5		1			1	1		2		1	1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0	10		4	3			3					
	문서인장죄	6	5		2		1		2			1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공갈죄	5	5			1	2				2			
	횡령배임죄	1	1				1							
교통범죄	중속에관한죄													
	교통법위반	2										2	2	
	도교법위반	3										3	3	
	도교법위반(음주)	26	3				2			1		23	22	1
성범죄	특가법위반(도주)													
	형법위반	1										1	1	
	성폭법위반	10	4		1	3						6	5	1
	아청법위반	1	1							1				
폭력범죄	성매매특별법위반													
	상해폭행의죄	6	4				3			1		2	2	
	상해등치사	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폭처법위반		1							1		1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4	4			2			2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2	9		3	2	3				1		3	3	

○ 분석

- 교통범죄 32%, 주요형법범 22%,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12%, 군형법범 9% 차지
- 군형법범의 경우 기타 범죄(가혹행위, 군기누설 등) 66%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90%
- 뇌물범죄의 경우 자유형 40%, 집행유예 30%, 선고유예 30% 차지

8.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98	55		11	11	15	1	8		9		43	41	2
장 교	장성	1										1	1	
	영관	26	19		3	4	6	1	4		1	7	7	
	위관	13	3			1					2	10	10	
준·부사관	21	13		4	2	6		1			8	7	1	
병	14	9				3				6	5	5		
군무원	23	11		4	4			3			12	11	1	
민간인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28%, 재산형 27%, 무죄 18%, 자유형 14%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6%, 자유형 30%, 집행유예 15%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33%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자유형 및 집행유예 각 36%, 무죄 20% 차지

9.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55	11	7	5	6	9	4		4	2	7
구 속	16	1	3	3	4	5					
불구속	39	10	4	2	2	4	4		4	2	7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29%, 불구속 사건 71% 차지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44%, 121일 이상 210일 이내 56%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41%, 121일 이상 210일 이내 26%, 211일 이상 33% 처리

10. 2017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합계	55	22	13	9	11	0
	이월	26	10	8	2	6	
	금년	29	12	5	7	5	
확 정	소계	10	5	2	1	1	
	유죄	10	5	2	1	1	
	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이송	9	3		6		
상 소	소계	36	14	10	2	10	
	쌍방향소	17	6	6	2	3	
	피고인항소	10	3	3		4	
	군검사항소	9	5	1		3	
	즉시항고		14	10	2	10	
	비약상고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47%, 당해 사건 53%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18%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100%
- 유죄 확정 중 장교 50%, 준·부사관 20%, 병 10%, 군무원 10% 차지

11.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45 (100)	0 (0)	0 (0)	6 (13.3)	9 (20)	26 (57.7)	4 (8.8)
2013년	명 (비율)	1 (100)	0 (0)	0 (0)	0 (0)	0 (0)	1 (100)	0 (0)
2014년	명 (비율)	3 (100)	0 (0)	0 (0)	1 (33.3)	2 (66.7)	0 (0)	0 (0)
2015년	명 (비율)	16 (100)	0 (0)	0 (0)	2 (12.5)	5 (31.3)	9 (56.2)	0 (0)
2016년	명 (비율)	14 (100)	0 (0)	0 (0)	1 (7.1)	2 (14.3)	10 (71.5)	1 (7.1)
2017년	명 (비율)	11 (100)	0 (0)	0 (0)	2 (18.1)	0 (0)	6 (54.5)	3 (27.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33%, 1년 이상 3년 미만 57%, 1년 미만 8% 차지
- 2017년 3년 이상 18%, 1년 이상 3년 미만 54%, 1년 미만 27% 차지

12.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07 (100)	57 (27.5)	6 (2.8)	51 (24.1)	150 (72.4)
2013년	명 (비율)	30 (100)	12 (40)	1 (3.3)	11 (36.6)	18 (60)
2014년	명 (비율)	43 (100)	20 (46.5)	0 (0)	20 (46.5)	23 (53.4)
2015년	명 (비율)	48 (100)	10 (20.8)	4 (8.3)	6 (12.5)	38 (79.1)
2016년	명 (비율)	40 (100)	9 (22.5)	0 (0)	9 (22.5)	31 (77.5)
2017년	명 (비율)	46 (100)	6 (13.1)	1 (2.2)	5 (10.9)	40 (86.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72%,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3%
- 2017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87%,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11%
- 2017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증가

1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 (100)	1 (33.3)	1 (33.3)	0 (0)	0 (0)	0 (0)	1 (33.3)
2013년	명 (비율)	1 (100)	0 (0)	0 (0)	0 (0)	0 (0)	0 (0)	1 (100)
2014년	명 (비율)	—						
2015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1 (100)	1 (100)	0 (0)	0 (0)	0 (0)	0 (0)	0 (0)
2017년	명 (비율)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및 자유형 각 33% 차지
- 2017년 민간인 처리사건 없음

15.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242 (100)	139 (57.4)	73 (30.1)	30 (12.3)
2013년	명 (비율)	40 (100)	18 (45)	15 (37.5)	7 (17.5)
2014년	명 (비율)	50 (100)	17 (34)	27 (54)	6 (12)
2015년	명 (비율)	51 (100)	37 (72.5)	11 (21.6)	3 (5.9)
2016년	명 (비율)	46 (100)	31 (67.3)	10 (21.7)	5 (11)
2017년	명 (비율)	55 (100)	36 (65.5)	10 (18.2)	9 (16.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57%, 확정 30%, 이송 1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 2017년 항소 65%, 확정 18%, 이송 16%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이송 증가, 항소 감소, 확정 유사

16.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140 (100)	55 (39.3)	17 (12.1)	68 (48.6)
2013년	명 (비율)	19 (100)	9 (47.4)	1 (5.2)	9 (47.4)
2014년	명 (비율)	17 (100)	5 (29.4)	1 (5.9)	11 (64.7)
2015년	명 (비율)	37 (100)	17 (46)	6 (16.2)	14 (37.8)
2016년	명 (비율)	31 (100)	14 (45.2)	0 (0)	17 (54.8)
2017년	명 (비율)	36 (100)	10 (27.7)	9 (25)	17 (47.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88%, 군검사의 항소율 61%
- 연도별 분석결과 2015년 이후 대폭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 변동
- 2017년 피고인의 항소율 75%, 군검사의 항소율 72%
- 2017년 전년 대비 군검사의 항소율 대폭으로 증가, 무죄판결의 영향

17. 2017년 약식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명 (비율)	43 (100)	41 (95.3)	2 (4.6)	0 (0)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23 (100)	206 (92.4)	16 (7.2)	1 (0.4)
2013년	명 (비율)	63 (100)	60 (95.2)	3 (4.7)	0 (0)
2014년	명 (비율)	37 (100)	31 (83.7)	6 (16.2)	0 (0)
2015년	명 (비율)	37 (100)	33 (89.1)	4 (10.8)	0 (0)
2016년	명 (비율)	43 (100)	41 (95.4)	1 (2.3)	1 (2.3)
2017년	명 (비율)	43 (100)	41 (95.3)	2 (4.6)	0 (0)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93%, 공판절차 회부 7%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증가, 공판절차 회부 감소 추세
- 2017년 약식명령 95%, 공판절차 회부 5%, 전년 대비 공판절차 회부 소폭 증가

18. 2017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9	9	0	100
체포영장	0	0	0	0
압수·수색영장	189	180	9	95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98	90	17	82.6
	체포영장	38	38	0	100
	압수·수색영장	727	700	27	96.2
2013년	구속영장	11	8	3	72.7
	체포영장	3	3	0	100
	압수·수색영장	119	114	5	95.7
2014년	구속영장	23	16	7	69.5
	체포영장	5	5	0	100
	압수·수색영장	97	89	8	92
2015년	구속영장	28	26	2	92.8
	체포영장	21	21	0	100
	압수·수색영장	138	137	1	99.2
2016년	구속영장	28	23	5	82
	체포영장	9	9	0	100
	압수·수색영장	184	180	4	97.8
2017년	구속영장	8	8	0	100
	체포영장	0	0	0	0
	압수·수색영장	189	180	9	95.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3%,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96%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 증가 추세
- 2017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95%,
전년대비 구속영장 청구건수 대폭 감소

19. 2017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8		8		8	
장 교	4		4		4	
부사관	1		1		1	
병						
군무원	3		3		3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발부	기각
		청구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98	29	66	4	77	19	
	장 교	53	9	43	1	47	6	
	준·부사관	10	4	6	1	7	1	
	병	16	14	1	1	9	7	
	군무원	16	2	13	1	13	3	
	민간인	3		3		1	2	
2013년	소계	11	4	7		8	3	
	장 교	5		5		3	2	
	준·부사관	2	2			2		
	병	2	2			1	1	
	군무원	2		2		2		
2014년	소계	23	9	14		16	7	
	장 교	10	2	8		10		
	준·부사관	1		1			1	
	병	6	6			3	3	
	군무원	3	1	2		2	1	
2015년	소계	28	7	21		26	2	
	장 교	22	3	19		20	2	
	준·부사관	2	2			2		
	병	2	2			2		
	군무원	2		2		2		
2016년	소계	28	9	16	3	21	7	
	장 교	12	4	7	1	10	2	
	준·부사관	4		4		4		
	병	6	4	1	1	3	3	
	군무원	6	1	4	1	4	2	
2017년	소계	8		8		8		
	장 교	4		4		4		
	준·부사관	1		1		1		
	병							
	군무원	3		3		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장교 54%, 준·부사관 10%, 병 16%, 군무원 16%, 민간인 34% 차지, 발부를 장교 89%, 준·부사관 70%, 병 56%, 군무원 81%, 민간인 33% 차지
- 2017년 각 신분별 대폭으로 감소

20. 2017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3	1	2	33.3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3	3		100
기 타	9	7	2	77.7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42	20	22	47.6
	구속적부심	11	2	9	18.1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4	4		100
	기 타	37	22	15	59.4
2013년	보석청구	7	3	4	42.9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4	2	2	50	
2014년	보석청구	8	6	2	75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5	1	4	20	
2015년	보석청구	18	9	9	50
	구속적부심	6	2	4	33.3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8	6	2	75	
2016년	보석청구	6	1	5	16.7
	구속적부심	3		3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11	6	5	54.5	
2017년	보석청구	3	1	2	33.3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3	3		100
기 타	9	7	2	77.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8%, 구속적부심 인용률 18%, 형사보상청구 인용률 100%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구속적부심 2015년 2건 인용, 그 외 기각
- 2017년 보석청구 및 구속적부심 감소 추세

21. 2017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7	29	15	8	15	
원판결확인	67	29	15	8	15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310	132	69	42	66	1
	원판결확인	310	132	69	42	66	1
	원판결 확인율	100	42.5	22.2	13.5	21.2	0.3
	감경						
	1/2미만						
	1/2이상						
2013년	소계	66	23	21	11	11	
	원판결확인	66	23	21	11	11	
	원판결 확인율	100	34.8	31.8	16.6	16.6	
	감경						
	1/2미만						
	1/2이상						
2014년	소계	54	16	13	8	17	
	원판결확인	54	16	13	8	17	
	원판결 확인율	100	29.6	24	14.8	31.4	
	감경						
	1/2미만						
	1/2이상						
2015년	소계	55	29	8	8	10	
	원판결확인	55	29	8	8	10	
	원판결 확인율	100	52.7	14.5	14.5	18.1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68	35	12	7	13	1
	원판결확인	68	35	12	7	13	1
	원판결 확인율	100	51.5	17.6	10.3	19.1	1.5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67	29	15	8	15	
	원판결확인	67	29	15	8	15	
	원판결 확인율	100	43.2	22.3	11.9	22.3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7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7	3	1		3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기타					
주요 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3	1	1	1	
	문서인장죄	2	1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법범 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					
성법범 죄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법범 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3. 2017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 명	결 과
		- 해당사항 없음 -	



육군 군사법원

□ 육군 군사법원

1. 2017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2,231 (100)	945 (42.4)	1,286 (57.6)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492 (100)	6,709 (53.7)
2013년	명 (비율)	2,377 (100)	1,373 (57.8)
2014년	명 (비율)	2,741 (100)	1,339 (48.9)
2015년	명 (비율)	2,644 (100)	1,270 (48)
2016년	명 (비율)	2,499 (100)	1,162 (46.4)
2017년	명 (비율)	2,231 (100)	945 (42.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46.3%, 약식 사건 53.7% 차지
- 16년 대비 접수사건 수 감소. 14년 이후 접수사건 감소세
- 2017년 접수 중 공판 사건 42.4%,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다수 감소

2.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2,231		213		644		1,327		39		8	
	945	1,286	91	122	187	457	649	678	12	27	6	2
간접이적죄 면 형	간접이적죄											
	군무이탈죄	53		1		5		47				
	상관에관한죄	46		3		8		34	1			
	군용물관련죄	14		3		4		4			3	
	초병에관한죄	40	3	2	1	5	1	30				3
	성범죄(군인 대상)	116		21		23		72				
	기타	15	8		1	8	2	6	4	1	1	
주요 형 법 범 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예관한죄	1				1						
	문서인장죄	15	2	2		5		6	2	2		
	살인의죄	1						1				
	과실치사상죄	14	5	6		5	1	3	4			
	절도강도죄	39	41	2	1	3	10	36	28			1
	사기공갈죄	100	53	2		10	9	41	91	2		
	횡령배임죄	8	8	3		1	3	3	4	1	1	
	풍속에관한죄	5	1				2	1	3			
	기타											
교 통 법 범 범	교통법위반	20	75	2	12	10	42	8	19		2	
	도교법위반	14	45	2	5	3	20	8	18	1	2	
	도교법위반(음주)	25	469	2	80	14	248	7	123	2	18	
	특가법위반(도주)	15	7		2	10	6	3	1	1	1	
성 법 범 범	형법위반	74	14	4	2	12	2	58	10		1	
	성폭법위반	61	34	7	3	6	7	48	24			
	아정법위반	29		1		3		25				
	성매매특별법위반	4	5					5	4			
폭 력 범 범	상해폭행의죄	110	187	5	6	24	47	81	133		1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31	29					1	31	27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46	243	22	9	27	51	96	183	1			

○ 분석

- 2017년 접수 중 교통범죄 30%, 주요형법범 13.1%,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15.1%, 군기법위반 0.04%, 군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8%, 폭력범죄 16%
- 전체 사건 중 뇌물범죄 0.04%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8.9%

3. 2017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499 (100)	1,180 (9.4)	3,328 (26.6)	7,726 (61.8)	239 (1.9)	26 (0.2)
2013년	명 (비율) 2,377 (100)	225 (9.5)	652 (27.4)	1,460 (61.4)	39 (1.6)	1 (0)
2014년	명 (비율) 2,741 (100)	250 (9.1)	688 (25.1)	1,746 (63.7)	57 (2.1)	0 (0)
2015년	명 (비율) 2,644 (100)	240 (9.1)	680 (25.7)	1,665 (63)	50 (1.9)	9 (0.3)
2016년	명 (비율) 2,506 (100)	252 (10.1)	664 (26.5)	1,528 (61)	54 (2.2)	8 (0.3)
2017년	명 (비율) 2,231 (100)	213 (9.5)	644 (28.8)	1,327 (59.4)	39 (1.7)	8 (0.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장교 9.4%, 준·부사관 26.6%, 병 61.8% 군무원 1.9%, 민간인 0.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장교사건 소폭 증가/병 사건 소폭 감소 둔화
- 2017년 접수 중 장교 **9.5%**, 준·부사관 28.8%, 병 59.4 군무원 1.7%, 민간인 0.3% 차지

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945 (100)	91 (9.6)	187 (19.7)	649 (68.6)	12 (1.2)	6 (0.6)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771 (100)	451 (7.8)	979 (16.9)	4,243 (73.5)	73 (1.2)	25 (0.4)
2013년	명 (비율) 1,004 (100)	53 (5.3)	152 (15.1)	787 (78.4)	11 (1.1)	1 (0.1)
2014년	명 (비율) 1,402 (100)	102 (7.3)	211 (15)	1,066 (76)	23 (1.6)	0 (0)
2015년	명 (비율) 1,270 (100)	106 (8.3)	228 (18)	915 (72)	12 (0.9)	9 (0.7)
2016년	명 (비율) 1,150 (100)	99 (8.6)	201 (17.4)	826 (71.8)	15 (1.3)	9 (0.8)
2017년	명 (비율) 945 (100)	91 (9.6)	187 (19.7)	649 (68.6)	12 (1.2)	6 (0.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73.5%, 장교 7.8%, 군무원 1.2%, 준·부사관 16.9%, 민간인 0.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시작된 간부사건 비율 증가 및 병사사건 비율 감소 심화
- 2017년 접수 중 장교 9.6%, 준·부사관 19.7%, 병 68.6%, 군무원 1.2%, 민간인 0.6%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장교 및 준·부사관 사건 증가, 병 사건 감소

5.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2,359 (100)	1,073 (45.5)	106 (4.5)	230 (9.7)	708 (30)	16 (0.7)	13 (0.6)	1,286 (54.5)	122 (5.2)	457 (19.4)	678 (28.7)	27 (1.1)	2 (0.1)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499 (100)	5,721 (45.7)	451 (3.6)	979 (7.8)	4,246 (33.9)	73 (0.6)	25 (0.2)	6,723 (53.5)	728 (5.8)	2,350 (18.8)	3,476 (27.8)	163 (1.3)	3 (=0)
2013년	명 (비율) 2,377 (100)	1,004 (42.2)	53 (2.2)	152 (6.4)	787 (33.1)	11 (0.5)	1 (0)	1,373 (57.8)	172 (7.2)	500 (21)	673 (28.3)	28 (1.2)	0 (0)
2014년	명 (비율) 2,741 (100)	1,402 (51.1)	102 (3.7)	211 (7.7)	1,066 (38.9)	23 (0.8)	0 (0)	1,339 (48.9)	148 (5.4)	477 (17.4)	680 (24.8)	34 (1.2)	0 (0)
2015년	명 (비율) 2,644 (100)	1,270 (48)	106 (4)	228 (8.6)	915 (34.6)	12 (0.5)	9 (0.3)	1,374 (52)	134 (5.1)	452 (17.1)	750 (28.4)	38 (1.4)	0 (0)
2016년	명 (비율) 2,506 (100)	1,155 (46.1)	100 (4)	200 (8)	833 (33.2)	15 (0.6)	7 (0.3)	1,351 (53.9)	152 (6.1)	464 (18.5)	695 (27.7)	39 (1.6)	1 (0)
2017년	명 (비율) 2,359 (100)	1,073 (45.5)	106 (4.5)	230 (9.7)	708 (30)	16 (0.7)	13 (0.6)	1,286 (54.5)	122 (5.2)	457 (19.4)	678 (28.7)	27 (1.1)	2 (0.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접수 비율과 유사
- 연도별 분석결과 2014년 이후 전체사건 수 감소추세
- 2017년 처리 사건 중 장교 9.7%, 준·부사관 29.1%, 병 58.7, 군무원 1.8%, 민간인 0.7%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전체적인 사건 감소

6. 2017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2,359 (100)	1,073 (45.5)	0 (0)	83 (3.5)	281 (11.9)	221 (9.3)	57 (2.4)	29 (1.2)	7 (0.3)	111 (4.9)	284 (12)	1,286 (54.5)	1,082 (45.8)	204 (8.6)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0,823 (100)	4,750 (43.3)	0 (0)	550 (5.7)	1,728 (15.9)	1,156 (10.6)	403 (3.7)	125 (1.1)	75 (0.7)	321 (2.9)	288 (2.6)	6,073 (56.1)	5,742 (53)	331 (3)
2013년	명 (비율) 1,986 (100)	794 (40)	0 (0)	148 (7.5)	305 (15.4)	172 (8.7)	83 (4.2)	11 (0.6)	19 (1)	49 (2.5)	4 (0.2)	1,192 (60)	1,162 (58.5)	30 (1.5)
2014년	명 (비율) 2,265 (100)	1,086 (47.9)	0 (0)	143 (6.3)	474 (20.9)	227 (10)	127 (5.6)	23 (1)	22 (1)	69 (3)	0 (0)	1,179 (52.1)	1,144 (50.5)	35 (1.5)
2015년	명 (비율) 2,192 (100)	978 (44.6)	0 (0)	100 (4.6)	373 (17)	273 (12.5)	99 (4.5)	28 (1.3)	14 (0.6)	91 (4.2)	0 (0)	1,214 (55.4)	1,186 (54.1)	28 (1.3)
2016년	명 (비율) 2,021 (100)	819 (40.5)	0 (0)	76 (3.8)	295 (14.6)	263 (13)	37 (1.8)	34 (1.7)	13 (0.6)	101 (5)	0 (0)	1,202 (59.5)	1,168 (57.8)	34 (1.7)
2017년	명 (비율) 2,359 (100)	1,073 (45.5)	0 (0)	83 (3.5)	281 (11.9)	221 (9.3)	57 (2.4)	29 (1.2)	7 (0.3)	111 (4.9)	284 (12)	1,286 (54.5)	1,082 (45.8)	204 (8.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 처리 비율 4:6 정도로 유사,
공판 사건 중 집행유예 15.9%, 재산형 10.6%, 자유형 5.7%, 무죄 1.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및 처분 유형 비율 유사
- 2017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3.5%, 집행유예 11.6%, 재산형 9.3%, 선고유예 2.4%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선고유예 소폭 증가, 자유형 재산형, 집행유예 감소, 진행사건으로 인하여 기타 대폭 증가

7.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359	1,073		83	281	221	57	29	7	111	284	1,286	1,082	204	
균형법 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53	50		12	31		7			3				
	상관에관한죄	46	46		4	21	1	8		7	5				
	군용물관련죄	14	14		1	8	1	1			3				
	초병에관한죄	43	40		2	24		5		2	7	3	3		
	성범죄(군인대상)	111	111		5	59	3	6	4		21	13			
	기타	23	15			3	4	2		3	3	8	5	3	
주요 형법 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1	1			1									
	문서인장죄	17	15		1	4	1	3		2	4	2	1	1	
	살인의죄	1	1		1										
	과실치사상죄	19	14		1	2	1	2	3		2	3	5	4	1
	절도강도의죄	80	41		3	20	3	4		6	5	39	24	15	
	사기횡령배임죄	169	61		4	9	26		2	5	15	108	91	17	
풍속에관한죄	6	1				1					5	5			
교통 범죄	교통법위반	95	20		1	1	10		2	2	1	3	75	60	15
	도교통법위반	553	39		1	4	20	3	2		2	7	514	449	65
	특가법위반(도주)	22	15		2	2	9			1	1		7	6	1
성 범 범죄	형법위반	88	74		10	22	12	2	3		8	17	14	10	4
	성폭법위반	95	61		12	12	11	2	3		8	13	34	27	7
	아청법위반	29	29		4	6	7		1		7	4			
	성매매특별법위반	9	4			1	2				1		5	3	2
폭 력 범죄	상해폭행의죄	297	110		7	23	31	7		2	22	18	187	154	33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60	31		2	8	10	1	2		4	4	29	27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527	276		10	19	68	4	7	2	9	157	251	213	38	

○ 분석

- 교통범죄 28.8%, 성범죄(군내 포함) 14.3%, 주요형법범 12.4%, 균형법범(성범죄 제외) 7.6% 차지
- 균형법범의 경우 군인 대상 성범죄 39.3%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87.6%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50.8% 차지

8.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2,359	1,073		83	281	221	57	29	7	111	284	1,286	1,082	204
장교	장성	1	1		1									
	영관	52	35		2	5	8	2			18	17	17	
	위관	175	70		6	11	17	5	3	2	5	21	105	90
준·부사관	687	230		13	47	53	13	11	1	6	86	457	386	71
병	1,386	708		62	208	139	37	15	4	100	143	678	563	115
군무원	43	16			4	4					8	27	24	3
민간인	15	13			5						8	2	2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23.3%, 집행유예 15.8, 자유형 7.4%, 무죄 2.8% 차지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19.8%, 재산형 49.5%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18.7 선고유예 5%, 자유형 8.3%, 집행유예 28.1%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및 재산형이 각 25% 차지
- 민간인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8.5% 차지

9.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073	553	245	141	79	33	13	3	1	2	3
구 속	198	114	41	22	14	5	1	1			
불구속	875	439	204	119	65	28	12	2	1	2	3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8.5%, 불구속 사건 81.5%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9.3%, 121일 이상 240일 이내 10.6%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7.1%, 121일 이상 240일 이내 12.3%, 241일 이상 0.7% 처리

10. 2017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합계	2,826	281	784	1,324	366	52
	이월	467	53	97	243	61	9
	금년	2,359	228	687	1,081	305	43
확 정	소계	1,880	160	544	892	242	32
	유죄	1,854	154	538	880	240	32
	무죄	15	3	4	6	2	
	면소						
	공소기각판결	6	2	1	3		
	공소기각결정	5	1	1	3		
	소계	321	61	73	135	42	9
상 소	쌍방향소	90	31	18	29	10	2
	피고인항소	170	21	40	75	28	6
	군검사항소	61	9	15	31	4	1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170	6	13	120	31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16.5%, 당해 사건 83.5%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66.5%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8.6%
- 유죄 확정 중 장교 8.3% 준·부사관 29%, 병 47.5%, 군무원 12.9% 차지

11.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125 (100)	0 (0)	1 (0.8)	6 (4.8)	25 (20)	58 (46.4)	35 (28)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81 (100)	0 (0)	1 (0.2)	40 (6.9)	78 (13.4)	285 (49)	177 (30.5)
2013년	명 (비율)	149 (100)	0 (0)	0 (0)	15 (10.1)	17 (11.4)	80 (53.7)	37 (24.8)
2014년	명 (비율)	135 (100)	0 (0)	0 (0)	7 (5.2)	12 (8.9)	72 (53.3)	44 (32.6)
2015년	명 (비율)	98 (100)	0 (0)	0 (0)	7 (7.1)	9 (9.2)	43 (43.9)	39 (39.8)
2016년	명 (비율)	74 (100)	0 (0)	0 (0)	5 (6.8)	15 (20.3)	32 (43.2)	22 (29.7)
2017년	명 (비율)	125 (100)	0 (0)	1 (0.8)	6 (4.8)	25 (20)	58 (46.4)	35 (28)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0.3%, 1년 이상 3년 미만 49%, 1년 미만 30.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14년 이후 단기자유형 감소 뒤 2017년단기 자유형 증가
- 2017년 3년 이상 24.8%, 1년 이상 3년 미만 46.4%, 1년 미만 28%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양형 엄정화 경향

12.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655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961 (100)	3,258 (82.3)	445 (11.2)	2,813 (71)	703 (17.7)
2013년	명 (비율)	739 (100)	637 (86.2)	92 (12.4)	545 (73.7)	102 (13.8)
2014년	명 (비율)	984 (100)	798 (81.1)	95 (9.7)	703 (71.4)	186 (18.9)
2015년	명 (비율)	871 (100)	702 (80.6)	87 (10)	615 (70.6)	169 (19.4)
2016년	명 (비율)	678 (100)	530 (78.2)	73 (10.8)	457 (67.4)	148 (21.8)
2017년	명 (비율)	655 (100)	479 (73.1)	64 (9.8)	415 (63.4)	175 (26.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19.9%, 국선변호인의 민간변호사 선정률 10.5%
- 연도별 분석결과 2013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추세
- 2017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26.7%,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63.4%
- 2017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및 민간 국선변호인 증가

13. 2017년 형사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계	334	5	11	15	4		1	2	4	17	18	2	5		6	27	98	56	12	5	5	41							
군형법위반	116	2	10	2	4			1		13	1	2	2		1	6	50		8	1		13							
형법위반	89	1	5					1	1	3	5		2		2	8	24	20	2	1	4	10							
성폭법위반	93	2	1	7			1		2	1	5		1		3	9	16	29	2	2	1	11							
아청법위반	27			1					1	2					4	7	5			1		6							
기타	9									5						1	2				1								

1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성범죄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620	30	43	40	12	8	1	13	40	105	85	19	20	8	21	177	428	266	65	37	13	179		1	4		1	3	1
	군형법위반	521	17	29	2	7	4		2	12	66	1	14	6		1	44	227	1	36	2		49		1					
	형법위반	427	6	8	13	2	1		4	8	12	26	1	6	1	3	40	97	101	11	15	11	59				1	1		
	성폭법위반	457	7	5	18	3	2	1	6	11	6	29	1	3	5	10	68	70	125	9	14	2	55			4				
	아청법위반	188			7					9	21	20	3	5	2	7	25	33	25	9	5		15							
기타	27		1								9						1	14		1		1								
2013년	소계	192	5	5	2		1		1	5	8	11	2	2	3	2	33	39	34	10	6	7	13			1			1	1
	군형법위반	38	1	2			1				6		2				8	11		2			5							
	형법위반	49	1							2	1	3				1	6	11	15	1	1	6						1		
	성폭법위반	61	3	3				1	2	1	3		2	2	1	14	8	12		3	1	3			1				1	
	아청법위반	41			2				1		4				1	5	9	5	7	2			5							
기타	3										1							2												
2014년	소계	404	8	6	8	5	1		5	13	24	13	6	2		2	59	122	66	14	4		43		1	1		1		
	군형법위반	131	5	4		1	1			6	16		5	1			15	63	1	5			7		1					
	형법위반	102	2	2	3	2			2	2	3	5		1			12	25	16	5	2		19				1			
	성폭법위반	114	1		4	2			2	3	2	5				1	20	23	32	3			15		1					
	아청법위반	51			1				1	2	3	3	1			1	12	11	12	1	1	2								
기타	6																5		1											
2015년	소계	403	9	10	11	3	4		4	13	37	29	7	7	5	9	39	86	61	19	12	1	33			2			2	
	군형법위반	127	7	5		2	2		1	5	15		3	1			9	53		13			11							
	형법위반	106	2	3	3				1	2	9	1	1	1		1	10	22	31	2	6	1	11							
	성폭법위반	116		1	6	1	2		3	3	2	9	1		3	3	19	10	28	4	6		11		2				2	
	아청법위반	49			2				4	18	9	2	5	1	6	1	1													
기타	5		1								2						2													
2016년	소계	287	3	11	4		2		1	5	19	14	2	4		2	19	83	49	10	10		49							
	군형법위반	109	2	8					1	16		2	2				6	50		8	1		13							
	형법위반	81		3	2		1		1	2	3	4		2			4	15		19	1	5	19							
	성폭법위반	73	1		1				1	7						2	6	13	24	3	3		15							
	아청법위반	20			1		1		1		2					3	5	3	1	1		2								
기타	4										1							3												
2017년	소계	334	5	11	15	4		1	2	4	17	18	2	5		6	27	98	56	12	5	5	41							
	군형법위반	116	2	10	2	4			1		13	1	2	2		1	6	50		8	1		13							
	형법위반	89	1	5					1	1	3	5		2		2	8	24	20	2	1	4	10							
	성폭법위반	93	2	1	7			1		2	1	5		1		3	9	16	29	2	2	1	11							
	아청법위반	27			1				1	2						4	7	5			1		6							
기타	9									5							1	2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군형법위반 32.2%, 아청법위반 11.6% 차지, 병 71.9%, 준·부사관 18.4%, 장교 9%, 군무원 0.6% 차지, 집행유예 35.6%, 재산형 24.4%, 자유형 15.2%, 무죄 4.1%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2015년 이후 군무원 사건 지속 감소, 실형을 지속감소
- 2017년 군형법위반 34.7%, 아청법위반 8.1% 차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
- 2017년 병 73.1%, 준·부사관 15.5%, 장교 11.4% 차지
- 2017년 집행유예 37.7%, 재산형 26.6%, 자유형 10.8% 차지, 전년 대비 집행유예 비율 감소, 자유형 및 선고유예 증가

1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9 (100)	0 (0)	8 (88.9)	0 (0)	0 (0)	0 (0)	1 (11.1)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결과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	합계 (비율)	21 (100)	1 (4.8)	17 (80.8)	1 (4.8)	0 (0)	1 (4.8)	1 (4.8)
2013년	명 (비율)	—						
2014년	명 (비율)	—						
2015년	명 (비율)	7 (100)	0 (0)	6 (85.7)	1 (14.2)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5 (100)	1 (20)	3 (60)	0 (0)	0 (0)	1 (20)	0 (0)
2017년	명 (비율)	9 (100)	0 (0)	8 (88.9)	0 (0)	0 (0)	0 (0)	1 (11.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76.9%, 자유형 7.72% 차지
- 2017년 민간인 재판 9건(집행유예 8, 기타 1)

15.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4)	111 (14.1)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490 (100)	1,543 (34.4)	2,528 (56.3)	419 (9.3)
2013년	명 (비율)	804 (100)	264 (32.8)	491 (61.1)	49 (6.1)
2014년	명 (비율)	1,098 (100)	416 (37.9)	613 (55.8)	69 (6.3)
2015년	명 (비율)	1,003 (100)	335 (33.4)	577 (57.5)	91 (9.1)
2016년	명 (비율)	800 (100)	323 (40.4)	378 (47.3)	99 (12.4)
2017년	명 (비율)	785 (100)	205 (26.1)	469 (59.4)	111 (14.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35.7%, 확정 53.8 이송 10.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이송 증가 추세
- 2017년 항소 26.1%, 확정 59.4%, 이송 14.1%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확정 및 이송 비율 증가, 항소 감소, 진행 중 사건 288건으로 총 사건 감소

16.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205 (100)	119 (58)	34 (16.5)	52 (25.4)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380 (100)	715 (51.8)	290 (21)	375 (27.2)
2013년	명 (비율)	246 (100)	137 (55.7)	48 (19.5)	61 (24.8)
2014년	명 (비율)	355 (100)	177 (49.9)	75 (21.1)	103 (29)
2015년	명 (비율)	243 (100)	132 (54.3)	46 (18.9)	65 (26.7)
2016년	명 (비율)	331 (100)	150 (45.3)	87 (26.3)	94 (28.4)
2017년	명 (비율)	205 (100)	119 (58)	34 (16.5)	52 (25.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51.8%, 군검사의 항소율 21%
- 연도별 분석결과 전반적 비율 지속·유지(2016년 일시 피고인 항소율 감소 제외)
- 2017년 피고인의 항소율 83.4%, 군검사의 항소율 41.9%
- 2017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율 증가, 군검사 항소율 감소

17. 2017년 약식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명 (비율)	1,421 (100)	1,082 (76.1)	135 (9.5)	204 (14.3)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정식재판 실시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6,839 (100)	5,728 (83.7)	780 (11.4)	331 (4.8)
2013년	명 (비율)	1,308 (100)	1,162 (88.8)	116 (8.9)	30 (2.3)
2014년	명 (비율)	1,343 (100)	1,144 (85.2)	164 (12.2)	35 (2.6)
2015년	명 (비율)	1,409 (100)	1,186 (84.2)	195 (13.8)	28 (2)
2016년	명 (비율)	1,358 (100)	1,154 (85)	170 (12.5)	34 (2.5)
2017년	명 (비율)	1,421 (100)	1,082 (76.1)	135 (9.5)	204 (14.3)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83.7%, 정식재판 실시 11.4%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사건 증가추세
- 2017년 증가추세(전체 사건수 중 비율은 감소)
- 2017년 약식명령 76.1%, 공판절차 회부 9.5%, 진행 중 사건으로 이송 등이 증가하여 비율 감소

18. 2017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272	213	50	78.3
체포영장	43	37	6	86
압수·수색영장	291	264	27	90.7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2,895	2,357	529	81.4
	체포영장	560	497	63	88.8
	압수·수색영장	2,722	2,524	198	92.7
2013년	구속영장	807	679	128	84.1
	체포영장	191	166	25	86.9
	압수·수색영장	798	747	51	93.6
2014년	구속영장	926	756	170	81.6
	체포영장	153	138	15	90.2
	압수·수색영장	632	586	46	92.7
2015년	구속영장	515	412	103	80
	체포영장	109	99	10	90.8
	압수·수색영장	569	530	39	93.1
2016년	구속영장	375	297	78	79.2
	체포영장	64	57	7	89.1
	압수·수색영장	432	397	35	91.9
2017년	구속영장	272	213	50	78.3
	체포영장	43	37	6	86
	압수·수색영장	291	264	27	90.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1.4%, 체포영장 88.8%, 압수·수색영장 92.7%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영장청구 건수 14년 이후 감소 추세,
영장 발부율 압수·수색영장, 구속/체포영장(13년 이후) 감소 추세
- 2017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8.3%, 체포영장 86%, 압수·수색영장 90.7%,
전년 대비 발부율 감소

19. 2017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272	213	25	34	213	50
장 교	28	22	3	3	21	7
부사관	49	39	7	3	31	15
병	193	150	15	28	160	27
군무원	2	2			1	1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소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2,923	2,440	303	180	2,360	530
	장 교	158	129	22	7	122	35
	준·부사관	435	378	44	13	335	92
	병	2,305	1,918	230	157	1,886	395
	군무원	17	9	5	3	12	5
	민간인	8	6	2		5	3
2013년	소계	808	678	80	50	679	128
	장 교	22	21	1		20	2
	준·부사관	112	101	10	1	89	22
	병	666	550	68	48	563	103
	군무원	5	4		1	4	1
	민간인	3	2	1		3	
2014년	소계	933	790	118	25	759	171
	장 교	40	25	14	1	32	8
	준·부사관	137	124	12	1	116	20
	병	750	637	91	22	608	140
	군무원	4	2	1	1	2	2
	민간인	2	2			1	1
2015년	소계	522	444	43	35	412	103
	장 교	30	29	1		18	12
	준·부사관	76	65	6	5	56	19
	병	409	347	32	30	334	69
	군무원	4	1	3		3	1
	민간인	3	2	1		1	2
2016년	소계	388	315	37	36	297	78
	장 교	38	32	3	3	31	6
	준·부사관	61	49	9	3	43	16
	병	287	234	24	29	221	56
	군무원	2		1	1	2	
	민간인						
2017년	소계	272	213	25	34	213	50
	장 교	28	22	3	3	21	7
	준·부사관	49	39	7	3	31	15
	병	193	150	15	28	160	27
	군무원	2	2			1	1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장교 5.4%, 준·부사관 14.9%, 병 78.9% 차지, 발부율 장교 5.1%, 준·부사관 14.2%, 병 79.9%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구속영장 발부율 지속 감소(단, 장교 발부율은 증가)
- 민간법원보다 구속영장 엄격 심사

20. 2017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20	11	9	55
구속적부심	25	2	21	8
구속집행정지	1	1		10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3	2		66.6
기 타	28	5	14	17.9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 청구= 인용+기각-기타(이송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결과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57	77	79	49
	구속적부심	186	28	151	15
	구속집행정지	6	4	2	66.7
	구속취소	2	2	0	100
	형사보상청구	9	5	0	55.6
	기 타	161	73	57	45.3
2013년	보석청구	23	12	11	52.2
	구속적부심	32	3	28	9.4
	구속집행정지	1	1		100
	구속취소	1	1		100
	형사보상청구	2	2		100
	기 타	10	7	3	70
2014년	보석청구	52	30	22	57.7
	구속적부심	56	9	44	16.1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41	21	8	51.2
2015년	보석청구	41	12	28	29.3
	구속적부심	38	8	30	21.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1	1		100
	형사보상청구				
	기 타	38	14	20	36.8
2016년	보석청구	21	12	9	57.1
	구속적부심	35	6	28	17.1
	구속집행정지	2	1	1	5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4	1		25
	기 타	44	26	12	59.1
2017년	보석청구	20	11	9	55
	구속적부심	25	2	21	8
	구속집행정지	1	1		100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3	2		66.6
	기 타	28	5	14	17.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49%, 구속적부심 인용률 15%, 형사보상청구 기각 0건
- 연도별 분석결과 보석청구 및 구속적부심 2014년까지 증가 후 감소 추세
- 2017년 보석청구 허가율 55%, 전년 대비 보석청구 허가율 감소

21. 2017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34	13	43	74	4	
원판결확인	134	13	43	74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749	79	243	413	14	
	원판결확인	746	78	243	411	14	
	원판결 확인율	99.6	98.7	100	99.5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3년	소계	149	19	49	80	1	
	원판결확인	147	18	49	79	1	
	원판결 확인율	98.7	94.7	100	98.8	100	
	감경	1/2미만	1			1	
		1/2이상	1	1			
2014년	소계	157	15	51	89	2	
	원판결확인	156	15	51	88	2	
	원판결 확인율	99.4	100	100	98.9	100	
	감경	1/2미만	1			1	
		1/2이상					
2015년	소계	194	24	63	103	4	
	원판결확인	194	24	63	103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6년	소계	115	8	37	67	3	
	원판결확인	115	8	37	67	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소계	134	13	43	74	4	
	원판결확인	134	13	43	74	4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3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7년 무죄 선고 결과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22	3	7	12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4		2	2		
	기타						
주요 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3	2	1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2		1	1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2		1	1		
	도교법위반	2	1		1		
	특가법위반(도주)						
성범죄	형법위반	3		2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2			2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2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			1		

23. 2016년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2017-001	상병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17-001	중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17-001	중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원
2017-001	하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17-002	원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50,000원
2017-002	일병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50,000원
2017-003	일병	절도	청구기각
2017-003	상병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00,000원
2017-004	상사	경범죄처벌법위반	청구기각



해군 군사법원

□ 해군 군사법원

1. 2017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493 (100)	183 (37)	310 (63)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 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099(100)	753 (36)	1,346 (64)
2013년	명 (비율)	337 (100)	103 (30.6)	234 (69.4)
2014년	명 (비율)	404 (100)	157 (38.9)	247 (61.1)
2015년	명 (비율)	391 (100)	139 (35.5)	252 (64.5)
2016년	명 (비율)	474 (100)	171 (36.1)	303 (63.9)
2017년	명 (비율)	493 (100)	183 (37)	310 (6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6%, 약식 사건 64%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 형사사건 접수 증가 추세
- 2017년 접수 중 공판 사건 37%, 전년 대비 공판 사건 비율 증가

2.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493		49		259		173		12			
합계	183	310	14	35	83	176	82	91	4	8		
군형법범	군무이탈죄	8		2	5		1					
	상관에관한죄	7			6		1					
	군용물관련죄	7	2	1		3	2	3				
	초병에관한죄	8						8				
	성범죄(군인 대상)	18		4		4		10				
	기타	8	6			2	1	6	5			
주요형법범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2	1					2	1			
	풍속에관한죄	1				1						
	살인의죄	1						1				
	과실치사상죄	2		1				1				
	주요형법범기타	21	24	3	3	16	14	5	7			
재산범죄	절도강도등의죄	6	5			2	3	4	2			
	사기공갈죄	7	5	1		2	1	4	4			
	횡령배임죄	4	2		1	4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3	16	1	2	2	9	4		1		
	도교법위반	2	11		4	1	5	1	2			
	도교법위반(음주)	5	161	1	22	4	119		15		5	
	특가법위반(도주)	5	2			1	1	3		1	1	
성범죄	형법위반	10	1			4		5	1	1		
	성폭법위반	12	4	3		5	2	3	2	1		
	아청법위반	4				1		3				
폭력범죄	형법위반	27	50		2	15	11	11	37	1		
	폭처법위반	6	7				1	6	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8	13		1	4	7	4	4		1		

○ 분석

- 2017년 접수 중 교통범죄 41%, 폭력범죄 18%, 군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9%,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10%, 주요형법범 10%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92%

3. 2017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93 (100)	49 (10)	259 (52.5)	173 (35.1)	12 (2.4)	0 (0)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099 (100)	212 (10)	1,006 (48)	808 (39)	72 (3)	1 (=0)
2013년	명 (비율)	337 (100)	34 (10.1)	154 (45.7)	130 (38.6)	19 (5.6)	0 (0)
2014년	명 (비율)	404 (100)	46 (11.4)	168 (41.6)	180 (44.6)	10 (2.4)	0 (0)
2015년	명 (비율)	391 (100)	34 (8.7)	180 (46)	162 (41.4)	14 (3.6)	1 (0.3)
2016년	명 (비율)	474 (100)	49 (10.3)	245 (51.7)	163 (34.4)	17 (3.6)	0 (0)
2017년	명 (비율)	493 (100)	49 (10)	259 (52.5)	173 (35.1)	12 (2.4)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8%, 병 39%, 장교 10%, 군무원 3% 차지
- 2017년 접수 중 준·부사관 53%, 병 35%, 장교 10%, 군무원 2% 차지

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83 (100)	14 (7.7)	83 (45.5)	82 (45.5)	4 (2.3)	0 (0)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753 (100)	65 (9)	261 (34)	406 (54)	20 (3)	1(=0)
2013년	명 (비율)	103 (100)	6 (5.8)	24 (23.3)	66 (65.1)	7 (5.8)	0 (0)
2014년	명 (비율)	157 (100)	20 (12.7)	45 (28.7)	91 (58)	1 (0.6)	0 (0)
2015년	명 (비율)	139 (100)	10 (7.3)	41 (29.5)	85 (61.1)	2 (1.4)	1 (0.7)
2016년	명 (비율)	171 (100)	15 (8.8)	68 (39.8)	82 (48)	6 (3.4)	0 (0)
2017년	명 (비율)	183 (100)	14 (7.7)	83 (45.5)	82 (45.5)	4 (2.3)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병 54%, 준·부사관 34%, 장교 9%, 군무원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준·부사관 사건 증가 추세
- 2017년 접수 중 병 45%, 준·부사관 45%, 장교 8%, 군무원 2%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사건 증가, 장교, 병, 군무원 사건 감소

5.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471 (100)	163 (34.6)	11 (2.3)	74 (15.7)	74 (15.7)	4 (0.9)	0 (0)	308 (65.4)	34 (7.2)	176 (37.4)	90 (19.1)	8 (1.7)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068 (100)	729 (35)	59 (3)	250 (12)	398 (19)	21 (1)	1 (=0)	1,339 (65)	146 (7)	741 (36)	400 (19)	52 (3)	0 (0)
2013년	명 (비율)	337 (100)	103 (30.6)	6 (1.8)	24 (7.1)	66 (19.6)	7 (2.1)	0 (0)	234 (69.4)	8 (3.3)	130 (38.6)	64 (19)	12 (3.5)	0 (0)
2014년	명 (비율)	397 (100)	159 (40.1)	16 (4.1)	44 (11.1)	97 (24.4)	2 (0.5)	0 (0)	238 (59.9)	25 (6.3)	118 (29.7)	87 (21.9)	8 (2)	0 (0)
2015년	명 (비율)	391 (100)	136 (34.8)	12 (3.1)	44 (11.2)	77 (19.7)	2 (0.5)	1 (0.3)	255 (65.2)	25 (6.4)	139 (35.5)	80 (20.5)	11 (2.8)	0 (0)
2016년	명 (비율)	472 (100)	168 (35.6)	14 (3)	64 (13.5)	84 (17.8)	6 (1.3)	0 (0)	304 (64.4)	34 (7.2)	178 (37.7)	79 (16.7)	13 (2.8)	0 (0)
2017년	명 (비율)	471 (100)	163 (34.6)	11 (2.3)	74 (15.7)	74 (15.7)	4 (0.9)	0 (0)	308 (65.4)	34 (7.2)	176 (37.4)	90 (19.1)	8 (1.7)	0 (0)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준·부사관 공판 사건 증가 추세
- 2017년 처리 중 준·부사관 53%, 병 35%, 장교 10%, 군무원 2%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준·부사관 공판 사건 증가, 병 공판 사건 감소

6. 2017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471 (100)	163 (34.6)	0 (0)	8 (1.7)	43 (9.1)	68 (14.5)	20 (4.2)	7 (1.5)	5 (1.1)	12 (2.5)	0 (0)	308 (65.4)	299 (63.5)	9 (1.9)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068 (100)	729 (35)	0 (0)	52 (2.5)	200 (10)	257 (12)	126 (6)	33 (1.5)	18 (1)	43 (2)	0 (0)	1,339 (65)	1,318 (64)	21 (1)
2013년	명 (비율)	337 (100)	103 (30.6)	0 (0)	7 (2.1)	42 (12.5)	31 (9.3)	14 (4.2)	4 (1.2)	3 (0.9)	2 (0.6)	0 (0)	234 (69.4)	233 (69.1)	1 (0.3)
2014년	명 (비율)	397 (100)	159 (40.1)	0 (0)	10 (2.5)	46 (11.6)	48 (12.1)	37 (9.3)	4 (1)	3 (0.8)	11 (2.8)	0 (0)	238 (59.9)	236 (59.4)	2 (0.5)
2015년	명 (비율)	391 (100)	136 (34.8)	0 (0)	9 (2.3)	46 (11.8)	37 (9.5)	27 (6.9)	9 (2.3)	1 (0.2)	7 (1.8)	0 (0)	255 (65.2)	252 (64.5)	3 (0.7)
2016년	명 (비율)	472 (100)	168 (35.6)	0 (0)	18 (3.8)	23 (4.9)	73 (15.5)	28 (5.9)	9 (1.9)	6 (1.3)	11 (2.3)	0 (0)	304 (64.4)	298 (63.1)	6 (1.3)
2017년	명 (비율)	471 (100)	163 (34.6)	0 (0)	8 (1.7)	43 (9.1)	68 (14.5)	20 (4.2)	7 (1.5)	5 (1.1)	12 (2.5)	0 (0)	308 (65.4)	299 (63.5)	9 (1.9)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35%, 약식 사건 65% 처리,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2%, 집행유예 10%, 자유형 2%, 무죄 2%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사건과 약식 사건의 처리 비율 계속 변동,
공판 사건 중 선고유예 감소 추세
- 2017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5%, 집행유예 9%, 선고유예 4%, 자유형 2%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자유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감소, 집행유예 증가

7.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471			8	43	68	20	7	5	12		308	299	9
군형법범	군무이탈죄	6	6		4	1	1							
	상관에관한죄	6	6		1		5							
	군용물관련죄	9	7		4		2			1		2	2	
	초병에관한죄	8	8		5		3							
	성범죄(군인대상)	15	15		1	10	1	2		1				
	기타	14	8		3	4	1					6	6	
주요형법범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3	2							2		1	1	
	풍속에관한죄	1	1				1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1				
	주요형법범기타	43	20		1	15		1	1	2		23	23	
재산범죄	절도강도의죄	11	6		3	1	1	1				5	5	
	사기공갈죄	9	5		1		3			1		4	4	
	횡령배임죄	4	2		1		1					2	2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19	3		1	2						16	16	
	도교법위반	13	2			2						11	11	
	도교법위반(음주)	166	5			4		1				161	160	1
	특가법위반(도주)	7	5		1	2			2			2	2	
성범죄	형법위반	11	10		1	3	3			3		1	1	
	성폭법위반	15	11		4	2	4			1		4	4	
	아청법위반	2	2		1		1							
특별범죄	형법위반	74	24		2	17	1		1	3		50	45	5
	폭처법위반	12	5		1	2	2					7	6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1	1			1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1	8				5	1		1	1		13	11	2

○ 분석

- 교통범죄 44%, 군형법범 12%,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6%, 주요형법범 9% 차지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97%
-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의 경우 재산형 29% 차지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67% 차지

8.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471	163		8	43	68	20	7	5	12		308	299	9
장 교	장성													
	영관	7	4		1		2		1			3	3	
	위관	38	7		4	1	1	1				31	31	
준·부사관	250	74		4	16	41	6	3	4			176	172	4
병	164	74		3	23	21	13	2		12		90	85	5
군무원	12	4				3			1			8	8	
민간인														

○ 분석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56%, 집행유예 21% 차지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14%, 재산형 12% 차지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75% 차지

9.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240	241~270	271~300	301 이상
합계	163	94	27	18	20	3	1				
구 속	28	24	2	2							
불구속	135	70	25	16	20	3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7%, 불구속 사건 83% 차지
- 구속 사건 중 90일 이내 93%, 91일 이상 120일 이내 7% 차지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82%, 121일 이상 180일 이내 15%, 181일 이상 3% 처리

10. 2017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합계	209	18	92	96	3	
	이월	44	6	17	21		
	금년	165	12	75	75	3	
확 정	소계	122	6	59	55	2	
	유죄	114	5	54	54	1	
	무죄	2	1	1			
	면소						
	공소기각판결	6		4	1	1	
	공소기각결정						
	상 소	소계	65	11	31	22	1
	쌍방향소	19	6	9	3	1	
	피고인항소	33	2	17	14		
	군검사항소	13	3	5	5		
	즉시항고						
	비약상고						
	이송	22	1	2	19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21%, 당해 사건 89%
- 공판 사건 중 1심 확정 58%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93%
- 유죄 확정 중 장교 4%, 준·부사관 47%, 병 47%, 군무원 2% 차지

11.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9 (100)	0 (0)	1 (11.1)	0 (0)	3 (33.3)	3 (33.3)	2 (22.3)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54 (100)	0 (0)	1 (2)	2 (4)	10 (18)	23 (43)	18 (33)
2013년	명 (비율)	7 (100)	0 (0)	0 (0)	1 (14.3)	0 (0)	2 (28.6)	4 (57.1)
2014년	명 (비율)	11 (100)	0 (0)	0 (0)	0 (0)	1 (10)	7 (63)	3 (27)
2015년	명 (비율)	9 (100)	0 (0)	0 (0)	1 (11)	4 (45)	1 (11)	3 (33)
2016년	명 (비율)	18 (100)	0 (0)	0 (0)	0 (0)	2 (15)	10 (55)	6 (30)
2017년	명 (비율)	9 (100)	0 (0)	1 (11.1)	0 (0)	3 (33.3)	3 (33.3)	2 (22.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24%, 1년 이상 3년 미만 43%, 1년 미만 33% 차지
- 2017년 3년 이상 44%, 1년 이상 3년 미만 33%, 1년 미만 22% 차지
- 2017년 징역 10년 이상 1명(징역 17년)

12.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736 (100)	510 (69)	130 (17)	380 (52)	226 (31)
2013년	명 (비율)	101 (100)	74 (73.3)	26 (25.8)	48 (47.5)	27 (26.7)
2014년	명 (비율)	162 (100)	120 (74)	33 (20)	87 (54)	42 (26)
2015년	명 (비율)	144 (100)	100 (69)	20 (14)	80 (55)	44 (31)
2016년	명 (비율)	169 (100)	111 (65.7)	25 (14.8)	86 (50.9)	58 (34.3)
2017년	명 (비율)	160 (100)	105 (65.6)	26 (16.3)	79 (49.3)	55 (34.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1%,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17%
- 2017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34%,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선정률 49%
- 2017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률 및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증가

1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 (100)	0 (0)	2 (100)	0 (0)	0 (0)	0 (0)	0 (0)
2013년	명 (비율)	—						
2014년	명 (비율)	—						
2015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2016년	명 (비율)	—						
2017년	명 (비율)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 분석

- 최근 5년 민간인 처리 2명
 - 2013년: 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2년, 민간인
 - 2017년: 초병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2년, 예비역

15.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205 (100)	65 (31.7)	118 (57.6)	22 (10.7)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32 (100)	234 (28)	542 (65)	56 (7)
2013년	명 (비율)	112 (100)	32 (28.6)	78 (69.6)	2 (1.8)
2014년	명 (비율)	174 (100)	33 (19)	130 (74.7)	11 (6.3)
2015년	명 (비율)	153 (100)	41 (26.8)	104 (68)	8 (5.2)
2016년	명 (비율)	188 (100)	63 (33.5)	112 (59.6)	13 (6.9)
2017년	명 (비율)	205 (100)	65 (31.7)	118 (57.6)	22 (10.7)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항소 28%, 확정 65%, 이송 7% 차지
- 2017년 항소 32%, 확정 58%, 이송 10%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이송 증가

16.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4 (100)	117 (50)	52 (22)	65 (28)
2013년	명 (비율)	32 (100)	14 (43.8)	6 (18.8)	12 (37.4)
2014년	명 (비율)	33 (100)	17 (52)	10 (30)	6 (18)
2015년	명 (비율)	41 (100)	26 (63)	9 (22)	6 (15)
2016년	명 (비율)	63 (100)	27 (42.9)	14 (22.2)	22 (34.9)
2017년	명 (비율)	65 (100)	33 (50.8)	13 (20)	19 (29.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의 항소율 78%, 군검사의 항소율 50%
- 2017년 피고인의 항소율 80%, 군검사의 항소율 49%
- 2017년 전년 대비 피고인의 항소율 증가, 군검사의 항소율 감소

17. 2017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명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17-1. 최근 4년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4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49 (100)	1,127 (90)	86 (7)	36 (3)
2014년	명 (비율)	271 (100)	259 (95)	10 (3.7)	2 (1.3)
2015년	명 (비율)	271 (100)	260 (96)	7 (2.5)	4 (1.5)
2016년	명 (비율)	362 (100)	314 (86.75)	29 (8)	19 (5.25)
2017년	명 (비율)	345 (100)	294 (85.2)	40 (11.6)	11 (3.2)

○ 분석

- 최근 4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확정 90%, 공판절차 회부 7%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확정 감소, 공판절차 회부 증가 추세
- 2017년 약식명령 확정 85%, 공판절차 회부 12%
- 2017년 전년 대비 약식명령 확정 감소, 공판절차 회부 증가

18. 2017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36	31	5	8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5	12	87

18-1. 최근 4년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4년 평균율	구속영장	230	195	35	85
	체포영장	35	29	6	83
	압수·수색영장	282	255	27	90
2014년	구속영장	84	68	16	81
	체포영장	6	6		100
	압수·수색영장	58	53	5	90
2015년	구속영장	64	58	6	91
	체포영장	14	11	3	79
	압수·수색영장	63	63		100
2016년	구속영장	46	38	8	83
	체포영장	10	7	3	70
	압수·수색영장	64	54	10	84
2017년	구속영장	36	31	5	86
	체포영장	5	5		100
	압수·수색영장	97	85	12	87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증가, 구속영장 청구 감소
- 2017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86%, 압수·수색영장 87%, 전년 대비 발부율 증가

19. 2017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합계	36	31	5
장 교	7	5	2
부사관	11	10	1
병	18	16	2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4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4년 평균율	합계 (비율)	230 (100)	195 (85)	35 (15)
	장 교	22	17	5
	준·부사관	74	65	9
	병	131	110	21
	군무원 민간인	3	3	
2014년	소계 (비율)	84 (100)	68 (81)	16 (19)
	장 교	7	7	
	준·부사관	23	20	3
	병	54	41	13
	군무원 민간인			
2015년	소계 (비율)	64 (100)	58 (91)	6 (9)
	장 교	4	2	2
	준·부사관	27	25	2
	병	33	31	2
	군무원 민간인			
2016년	소계 (비율)	46 (100)	38 (83)	8 (17)
	장 교	4	3	1
	준·부사관	13	10	3
	병	26	22	4
	군무원 민간인	3	3	
2017년	소계 (비율)	36 (100)	31 (86)	5 (14)
	장 교	7	5	2
	준·부사관	11	10	1
	병	18	16	2
	군무원 민간인			

○ 분석

- 최근 4년 평균 청구율 장교 10%, 준·부사관 33%, 병 57%, 군무원 1% 미만 차지
- 구속영장 청구건수 감소 추세

20. 2017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3	2	1	66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4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12	7	5	58
	구속적부심	10	2	8	2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4	3	1	75
	기 타	3	2	1	67
2014년	보석청구	3		3	0
	구속적부심	4	2	2	5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5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2016년	보석청구	5	5		100
	구속적부심	1		1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1	1		100
	기 타				
2017년	보석청구	2	1	1	50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2	1	1	50
	기 타	3	2	1	66

○ 분석

- 연도별 분석결과 형사보상청구 허가율 감소
- 2017년 형사보상청구 중 인용 1건은 일부 기각

21. 2017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406	45	230	119	12	
원판결확인	406	45	230	119	1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1,704	183	909	546	66	
	원판결확인	1,689	181	907	537	64	
	원판결 확인율	99	99	99	98	97	
	감경	1/2미만	13	2		9	2
		1/2이상	2		2		
2013년	합계	288	37	151	83	17	
	원판결확인	278	35	149	79	15	
	원판결 확인율	97	95	99	95	88	
	감경	1/2미만	8	2		4	2
		1/2이상	2		2		
2014년	합계	321	35	148	127	11	
	원판결확인	318	35	148	124	11	
	원판결 확인율	99	100	100	97	100	
	감경	1/2미만	3			3	
		1/2이상					
2015년	합계	299	28	159	99	13	
	원판결확인	297	28	159	97	13	
	원판결 확인율	99	100	100	99	100	
	감경	1/2미만	2			2	
		1/2이상	0				
2016년	합계	390	38	221	118	13	
	원판결확인	390	38	221	118	13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2017년	합계	406	45	230	119	12	
	원판결확인	406	45	230	119	12	
	원판결 확인율	100	100	100	100	100	
	감경	1/2미만					
		1/2이상					

○ 분석

- 최근 2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7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7	2	3	2		
군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기타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1		1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도교법위반						
	특가법위반(도주)						
성범죄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1	1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2		1	1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군사법원

1. 2017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명 (비율)	193 (100)	74 (38)	119 (62)

1-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접수 현황(공판/약식)

구분	합계	공판 사건	약식 사건
5년 평균율	886 (100)	378 (43)	508 (57)
2013년	138 (100)	68 (49)	70 (51)
2014년	151 (100)	69 (46)	82 (54)
2015년	166 (100)	75 (45)	91 (55)
2016년	238 (100)	92 (39)	146 (61)
2017년	193 (100)	74 (38)	119 (62)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43%, 약식 사건 57% 차지
- 전년 대비 전체 형사사건 19% 감소
- 2017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20%) 및 약식 사건(18%) 모두 감소

2.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신분별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공판	약식
합계	193		28		96		58		9		2	
합계	74	119	7	21	35	61	25	33	5	4	2	0
구형법범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1	2			1	1	1				
	상관에관한죄	2				2						
	군용물관련죄	1		1								
	초병에관한죄	1				1						
	성범죄(군인 대상)	17		1		5		8	1		2	
	기타	3		3								
주요형법범	뇌물예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1					1				
	절도강도의죄		5		2		1		2			
	사기공갈죄	4	6	1		1	2	2	4			
	횡령배임죄	5	1			5	1					
	풍속에관한죄											
	기타	7	12		2	5	5	2	5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2	9		4	2	4			1		
	도교법위반	1	1	1			1					
	도교법위반(음주)	6	49		10	4	31		5	2	3	
	특가법위반(도주)	3				1				2		
성범죄	형법위반	4	1				1	4				
	성폭법위반	5	3			3	1	2	2			
	아청법위반	3	1			2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1				1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8				4		4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4	18		3	2	7	2	8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4	2			1	2	3					

※ 기타는 사관생도

○ 분석

- 2017년 접수 중 교통범죄 37%,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포함) 9%, 폭력범죄 16%, 주요형법범 21%, 구형법범(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14%
- 교통범죄 중 약식 사건 83%, 전체 주요사건 중 뇌물, 군기법, 국보법 0%

3. 2017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명 (비율)	193 (100)	28 (15)	96 (50)	58 (30)	9 (4)	2 (1)

※ 기타는 사관생도

3-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69 (100)	131 (15)	400 (46)	280 (32)	52 (6)	6 (1)
2013년	명 (비율)	135 (100)	21 (15)	54 (40)	47 (35)	12 (9)	1 (1)
2014년	명 (비율)	146 (100)	16 (11)	70 (48)	51 (35)	7 (5)	2 (1)
2015년	명 (비율)	163 (100)	29 (18)	68 (42)	57 (35)	9 (5)	0 (0)
2016년	명 (비율)	232 (100)	37 (16)	112 (48)	67 (29)	15 (6)	1 (1)
2017년	명 (비율)	193 (100)	28 (15)	96 (50)	58 (30)	9 (4)	2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46%, 병 32%, 장교 15%, 군무원 6%
- 연도별 분석결과 전년도까지 사건 증가 추세에서 2017년 사건 감소추세로 전환
- 2017년 접수 중 준·부사관 50%, 병 30%, 장교 15%, 군무원 4%
- 2017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사건 감소

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74 (100)	7 (9)	35 (47)	25 (34)	5 (7)	2 (3)

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중 신분별 접수 현황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07 (100)	58 (14)	157 (39)	165 (41)	22 (5)	5 (1)
2013년	명 (비율)	73 (100)	7 (10)	24 (33)	34 (46)	7 (10)	1 (1)
2014년	명 (비율)	77 (100)	10 (13)	29 (37)	34 (44)	2 (3)	2 (3)
2015년	명 (비율)	82 (100)	15 (18)	32 (39)	31 (38)	4 (5)	0 (0)
2016년	명 (비율)	101 (100)	19 (19)	37 (37)	41 (40)	4 (4)	0 (0)
2017년	명 (비율)	74 (100)	7 (9)	35 (47)	25 (34)	5 (7)	2 (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접수 중 준·부사관 39%, 병 41%, 장교 14%, 군무원 5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년도까지 사건 증가 추세에서 2017년 사건 감소 추세로 전환
- 2017년 접수 중 준·부사관 47%, 병 34%, 장교 9%, 군무원 7%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사건 감소

5.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명 (비율)	178 (100)	65 (37)	7 (4)	31 (18)	23 (13)	4 (2)	0 (0)	113 (63)	18 (10)	62 (35)	29 (16)	4 (2)	0 (0)

5-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소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54 (100)	397 (47)	58 (7)	153 (18)	162 (19)	21 (2.5)	3 (0.5)	457 (53)	70 (8)	244 (28.4)	112 (13)	30 (3.5)	1 (0.1)
2013년	명 (비율)	135 (100)	73 (54)	7 (5)	24 (18)	34 (25)	7 (5)	1 (1)	62 (46)	14 (10)	30 (22)	13 (10)	5 (4)	0 (0)
2014년	명 (비율)	146 (100)	77 (53)	10 (7)	29 (20)	34 (24)	2 (1)	2 (1)	69 (47)	6 (4)	41 (28)	17 (12)	5 (3)	0 (0)
2015년	명 (비율)	163 (100)	81 (49)	15 (9)	32 (20)	30 (18)	4 (2)	0 (0)	82 (51)	14 (9)	36 (22)	27 (17)	5 (3)	0 (0)
2016년	명 (비율)	232 (100)	101 (43.6)	19 (8)	37 (16)	41 (17.6)	4 (2)	0 (0)	131 (56.4)	18 (8)	75 (32)	26 (11)	11 (5)	1 (0.4)
2017년	명 (비율)	178 (100)	65 (37)	7 (4)	31 (18)	23 (13)	4 (2)	0 (0)	113 (63)	18 (10)	62 (35)	29 (16)	4 (2)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신분별 처리 비율은 준·부사관 46.4%, 병 32%, 장교 15%, 군무원 6%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및 약식 모두 증가 추세에서 2017년 감소 추세로 전환
- 2017년 처리 중 준·부사관 53%, 병 29%, 장교 14%, 군무원 4%
- 2017년 전년 대비 신분별 사건 감소

6. 2017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명 (비율)	178 (100)	65 (36)	0 (0)	2 (1)	16 (9)	22 (12)	7 (4)	6 (3)	0 (0)	10 (6)	2 (1)	113 (64)	108 (61)	5 (3)

6-1. 최근 5년간 형사사건 형기별 처리 현황

구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847 (100)	390 (46)	0 (0)	17 (2)	113 (13)	133 (16)	59 (7)	23 (3)	7 (0.8)	27 (3)	11 (1.2)	457 (54)	449 (53)	8 (1)
2013년	명 (비율)	135 (100)	73 (54)	0 (0)	3 (2)	14 (10)	27 (22)	19 (14)	4 (3)	2 (1)	2 (1)	2 (1)	62 (46)	62 (46)	0 (0)
2014년	명 (비율)	139 (100)	70 (50)	0 (0)	0 (0)	28 (20)	27 (19)	8 (6)	3 (2)	0 (0)	4 (3)	0 (0)	69 (50)	69 (50)	0 (0)
2015년	명 (비율)	163 (100)	81 (50)	0 (0)	6 (4)	20 (12)	33 (20)	11 (7)	3 (2)	2 (1)	5 (3)	1 (1)	82 (50)	82 (50)	0 (0)
2016년	명 (비율)	232 (100)	101 (44)	0 (0)	6 (3)	35 (15)	24 (10)	14 (6)	7 (3)	3 (1)	6 (3)	6 (3)	131 (56)	128 (55)	3 (1)
2017년	명 (비율)	178 (100)	65 (36)	0 (0)	2 (1)	16 (9)	22 (12)	7 (4)	6 (3)	0 (0)	10 (6)	2 (1)	113 (64)	108 (61)	5 (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46%, 약식 사건 54% 처리,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6%, 집행유예 13%, 자유형 2%, 무죄 3%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공판 및 약식 모두 증가 추세에서 2017년 감소 추세로 전환
- 2017년 공판 사건 중 재산형 12%, 집행유예 9%, 선고유예 4%, 자유형 1% 차지
- 2017년 전년 대비 공판 사건 중 형기별 처리건수 모두 감소

7. 2017년 형사사건 죄명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78	65	0	2	16	21	7	6	0	10	3	113	108	5
근형법범	간첩이적죄	0	0									0		
	군무이탈죄	3	1		1							2	2	
	상관에관한죄	2	2				1	1				0		
	군용물관련죄	1	1				1					0		
	초병에관한죄	1	1				1					0		
	성범죄(군인대상)	13	13		1	7		3	1		1	0		
	기타	1	1					1				0		
주요형법범	내란소요죄	0	0									0		
	뇌물에관한죄	0	0									0		
	문서인장죄	1	1			1						0		
	살인의죄	0	0									0		
	과실치사상죄	1	0									1	1	
	절도강도의죄	5	0									5	4	1
	사기공갈죄	9	3		1	1					1	6	5	1
	횡령배임죄	7	6		3					3		1	1	
기타	17	8		2	5					1	9	8	1	
교통범죄	교통법위반	9	2			2						7	6	1
	도교법위반	1	1			1						0		
	도교법위반(음주)	55	5			3		1		1		50	50	
	특가법위반(도주)	4	3			2				1		1	1	
상범죄	형법위반	4	4			1		2		1		0		
	성폭법위반	9	4		1	3						5	4	1
	아청법위반	5	4		1	1	1				1	1	1	
	성매매특별법위반	0	0									0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25	3			1				2		22	22	
	상해등치사	0	0									0		
	폭처법위반	1	0									1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0	0									0			
국가보안법위반	0	0									0			
기타	4	2					1		1		2	2		

○ 분석

- 교통범죄 39%, 주요형법범 22%, 균형법범 12%, 성범죄(군인 대상 성범죄 제외) 10% 차지
- 균형법범의 경우 군인 대상 성범죄 62%
- 교통범죄의 경우 약식 사건 84%
- 군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54%, 선고유예 23%

8. 2017년 형사사건 신분별·형기별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공판										약식		
		소계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기타	소계	벌금	기타
합계	178	65	0	2	16	21	7	6	0	10	3	113	108	5
장 교	장성	0	0									0		
	영관	8	4		1	1	2					4	4	
	위관	17	3					2	1			14	14	
준·부사관	93	31			8	14	1	3		5		62	59	3
병	52	23		1	7	3	4	1		4	3	29	27	2
군무원	8	4				2		1		1		4	4	
기타	0	0										0		

○ 분석

- 장교 공판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 및 재산형 각 29%, 자유형, 집행유예, 무죄 각 14%
- 준·부사관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45%, 집행유예 26%, 무죄 10%, 선고유예 3%
- 병 공판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30%, 선고유예 17%, 재산형 13%, 자유형 및 무죄 각 4%
- 군무원 공판 사건의 경우 재산형 50%, 무죄 25%

9.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처리일수 현황

구 분	사건처리 일수										
	합계	60 이내	61~ 90	91~ 120	121~ 150	151~ 180	181~ 210	211~ 240	241~ 270	271~ 300	301 이상
합계	65	31	9	8	8	6	2	1			
구 속	8	4	1	1	1	1					
불구속	57	27	8	7	7	5	2	1			

○ 분석

- 공판 사건 중 구속 사건 12%, 불구속 사건 88%
- 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5%, 121일 이상 25%
- 불구속 사건 중 120일 이내 74%, 121일 이상 26%

10. 2017년 형사공판(정식) 사건 재판결과

구 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접 수	합계	65	7	31	23	4	0
	이월	18	2	8	8		
	금년	47	5	23	15	4	
확 정	소계	38	4	17	15	2	0
	유죄	34	3	15	14	2	
	무죄	4	1	2	1		
	면소	0					
	공소기각판결	0					
	공소기각결정	0					
	이송	10		5	4	1	
상 소	소계	27	4	16	6	1	0
	쌍방향소	12	2	8	2		
	피고인항소	5	1	2	2		
	군검사항소	10	1	6	2	1	
	즉시항고	0					
	비약상고	0					

※ 2017년도에 선고된 현황임.

○ 분석

- 공판 사건 재판결과 이월 사건 28%, 당해 사건 72%
- 공판 사건 중 확정 58%
- 공판 확정사건 중 유죄 89%
- 유죄 확정 중 장교 9%, 준·부사관 44%, 병 41%, 군무원 6%
- 상소 사건 중 쌍방향소 44%, 피고인항소 19%, 군검사항소 37%

11.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명 (비율)	2 (100)	0 (0)	0 (0)	1 (50)	0 (0)	1 (50)	0 (0)

11-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자유형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무기징역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24 (100)	0 (0)	0 (0)	3 (13)	1 (4)	13 (54)	7 (29)
2013년	명 (비율)	3 (100)	0 (0)	0 (0)	0 (0)	0 (0)	1 (33)	2 (67)
2014년	명 (비율)	7 (100)	0 (0)	0 (0)	1 (14)	0 (0)	6 (86)	0 (0)
2015년	명 (비율)	6 (100)	0 (0)	0 (0)	0 (0)	1 (17)	2 (33)	3 (50)
2016년	명 (비율)	6 (100)	0 (0)	0 (0)	1 (17)	0 (0)	3 (50)	2 (33)
2017년	명 (비율)	2 (100)	0 (0)	0 (0)	1 (50)	0 (0)	1 (50)	0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자유형 중 3년 이상 17%, 1년 이상 3년 미만 54%, 1년 미만 29% 차지
- 연도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계속 변동
- 2017년 5년 이상 50%, 1년 이상 3년 미만 50% 차지

12.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명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 이송사건은 변호인 선임현황에 미포함

12-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구 분		합계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소계	변호사	군법무관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396 (100)	241 (61)	72 (18)	169 (43)	155 (39)
2013년	명 (비율)	74 (100)	56 (76)	15 (20)	41 (56)	18 (24)
2014년	명 (비율)	76 (100)	47 (62)	10 (13)	37 (49)	29 (38)
2015년	명 (비율)	82 (100)	53 (64)	20 (24)	33 (40)	29 (36)
2016년	명 (비율)	108 (100)	53 (49)	11 (10)	42 (39)	55 (51)
2017년	명 (비율)	56 (100)	32 (57)	16 (28.5)	16 (28.5)	24 (4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률 39%,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18%
- 연도별 분석결과 2016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크게 증가,
국선변호인의 변호사 선정률 계속 변동
- 2017년 사선변호인 선임률 43%, 국선변호인의 군법무관 및 변호사 선정율 각 28.5%
- 2017년 전년 대비 사선변호인 선임 및 국선변호인 군법무관 선정 감소,
국선변호인 변호사 선정 증가

13. 2017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합계	25	1	0	0	0	1	0	0	0	4	3	0	1	0	0	2	5	2	3	1	0	2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3	1							4				1					3											
형법위반	4					1												1		1		1							
성폭법위반	4									2							1	1											
아청법위반	4									1						2	1												
기타	0																												

13-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이송	
5년 평균	합계	131	6	3	6	0	4	0	0	0	3	20	15	6	2	2	0	4	6	20	19	8	1	1	6	0	1	0	0	0
	군형법위반	54	4	2	0	0	0	0	0	0	1	17	0	5	1	2	0	3	0	11	0	7	0	0	2	0	1	0	0	0
	형법위반	22	2	1	2	0	2	0	0	0	0	1	0	1	0	0	0	0	2	6	0	1	0	0	1	0	0	0	0	0
	성폭법위반	42	0	0	4	0	1	0	0	0	2	2	0	0	0	0	0	1	1	4	13	1	0	0	1	2	0	0	0	0
	아청법위반	13	0	0	0	0	1	0	0	0	0	10	5	0	0	0	0	0	3	3	0	0	0	0	1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년	합계	8	0	0	2	0	0	0	0	0	0	2	1	0	0	0	0	0	0	1	1	1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0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5			2							1								1		1								
	아청법위반	1										1																		
	기타	0																												
2014년	합계	15	1	1	1	0	0	0	0	2	3	0	0	0	0	0	2	2	2	2	1	0	0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5									3									1		1								
	형법위반	5	1	1	1															1										
	성폭법위반	5								2										1		2								
	아청법위반	0																												
	기타	0																												
2015년	합계	30	3	1	1	0	1	0	0	0	2	6	4	0	0	0	0	3	8	0	0	0	1	0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0	2	1							1	4	4						2	2										
	형법위반	5	1																	1		3								
	성폭법위반	13			1		1				1	4								5				1						
	아청법위반	2									2																			
	기타	0																												
2016년	합계	53	1	1	2	0	2	0	0	1	11	4	1	1	0	4	2	9	6	3	0	1	3	0	1	0	0	0	0	0
	군형법위반	26	1	1							9		1	1		3	2	5	3	3		1			1					
	형법위반	6			1		1				1								1											
	성폭법위반	15			1		1				1	3				1			2	5		1	1							
	아청법위반	6					1				1					1			2											
	기타	0																												
2017년	합계	25	1	0	0	0	1	0	0	0	4	3	0	1	0	0	2	5	2	3	1	0	2	0	0	0	0	0	0	
	군형법위반	13	1								4			1					3		3									
	형법위반	4					1															1								
	성폭법위반	4									2									1		1								
	아청법위반	4									1									1										
	기타	0																		2		1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전체 성범죄 중
 - 군형법위반 41%, 성폭법위반 32%, 형법위반 17%, 아청법위반 10%, 병 46%, 준·부사관 38%, 장교 15%, 군무원 1%, 집행유예 34%, 재산형 31%, 자유형, 선고유예 각 11%, 무죄 5%
- 연도별 분석결과 군형법위반 및 아청법위반 증가 추세에서 2017년 감소, 각 신분별 성범죄 사건은 증가 추세에서 2017년 감소, 전체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증가추세에서 2017년 감소
- 2017년 군형법위반 52%, 형법위반,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각 16%
- 2017년 병 60%, 준·부사관 32%, 장교 8%, 전년 대비 신분별 성범죄 모두 감소
- 2017년 집행유예 36%, 재산형 20%, 선고유예, 자유형, 무죄 각 12%

14. 2017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명 (비율)	—						

14-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민간인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이송 등
5년 평균을	합계 (비율)	3 (100)	0 (0)	1 (33)	2 (67)	0 (0)	0 (0)	0 (0)
2013년	명 (비율)	1 (100)	0 (0)	0 (0)	1 (100)	0 (0)	0 (0)	0 (0)
2014년	명 (비율)	2 (100)	0 (0)	1 (50)	1 (50)	0 (0)	0 (0)	0 (0)
2015년	명 (비율)	—						
2016년	명 (비율)	—						
2017년	명 (비율)	—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민간인 처리 중 집행유예 33%, 자유형 0%
- 연도별 분석결과 사건이 거의 없음
- 2017년 민간인 재판 0건

15.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명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15-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 현황

구 분		합계	항소	확정	이송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408 (100)	128 (31)	251 (62)	29 (7)
2013년	명 (비율)	74 (100)	11 (15)	60 (81)	3 (4)
2014년	명 (비율)	77 (100)	24 (31)	49 (64)	4 (5)
2015년	명 (비율)	82 (100)	27 (33)	50 (61)	5 (6)
2016년	명 (비율)	100 (100)	39 (39)	54 (54)	7 (7)
2017년	명 (비율)	75 (100)	27 (36)	38 (51)	10 (13)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확정 62%, 항소 31%, 이송 7%
- 연도별 분석결과 항소 및 확정 건수 계속 변동, 이송 건수 증가
- 2017년 확정 51%, 항소 36%, 이송 13%
- 2017년 전년 대비 확정 및 항소 각 감소, 이송 증가

16. 2017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명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16-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사건 항소인 현황

구 분		합계	피고인	군검사	쌍방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128 (100)	38 (29)	34 (27)	56 (44)
2013년	명 (비율)	11 (100)	4 (36)	5 (46)	2 (18)
2014년	명 (비율)	24 (100)	15 (63)	2 (8)	7 (29)
2015년	명 (비율)	27 (100)	5 (18)	7 (26)	15 (56)
2016년	명 (비율)	39 (100)	9 (23)	10 (26)	20 (51)
2017년	명 (비율)	27 (100)	5 (19)	10 (37)	12 (44)

○ 분석

- 최근 5년 평균 공판 사건 중 피고인 항소율 29%, 군검사 항소 27%
- 연도별 분석결과 피고인, 군검사, 쌍방 항소 건수 모두 계속 변동
- 2017년 피고인 항소율 19%, 군검사 항소율 37%
- 2017년 전년 대비 피고인 항소 및 쌍방 항소 각 감소

17. 2017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명 (비율)	122 (100)	111 (91)	8 (7)	3 (2)

17-1. 최근 5년간 약식사건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약식명령 확정	공판절차 회부	이송 등	
5년 평균율	합계 (비율)	517 (100)	452 (87)	62 (12)	3 (1)
2013년	명 (비율)	70 (100)	62 (89)	8 (11)	0 (0)
2014년	명 (비율)	82 (100)	69 (84)	13 (16)	0 (0)
2015년	명 (비율)	93 (100)	80 (86)	13 (14)	0 (0)
2016년	명 (비율)	150 (100)	130 (87)	20 (13)	0 (0)
2017년	명 (비율)	122 (100)	111 (91)	8 (7)	3 (2)

○ 분석

- 최근 5년 약식 사건 중 약식명령 87%, 공판절차 회부 12%
- 연도별 분석결과 약식명령 및 공판절차 회부 증가 추세에서 2017년 모두 감소
- 2017년 약식명령 91%, 공판절차 회부 7%, 이송 2%
- 2017년 전년 대비 약식명령 및 공판절차 회부 건수 모두 감소

18. 2017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구속영장	11	7	4	64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25	24	1	96

18-1. 최근 5년간 영장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5년 평균율	구속영장	101	80	21	79
	체포영장	21	18	3	86
	압수·수색영장	187	168	19	90
2013년	구속영장	29	23	6	79
	체포영장	5	4	1	80
	압수·수색영장	41	31	10	76
2014년	구속영장	21	17	4	81
	체포영장	2	2		100
	압수·수색영장	39	37	2	95
2015년	구속영장	17	14	3	82
	체포영장	7	7		100
	압수·수색영장	27	25	2	93
2016년	구속영장	23	19	4	83
	체포영장	6	4	2	67
	압수·수색영장	55	51	4	93
2017년	구속영장	11	7	4	64
	체포영장	1	1	0	100
	압수·수색영장	25	24	1	96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79%, 체포영장 86%, 압수·수색영장 90%
- 연도별 분석결과 영장청구 건수 계속 변동
구속·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계속 변동
- 2017년 영장 발부율 구속영장 64%, 체포영장 100%, 압수·수색영장 96%
- 2017년 구속·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 모두 감소

19. 2017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합계	11	10	1		7	4
장 교	3	3			2	1
부사관	4	4			3	1
병	4	3	1		2	2
군무원						
기 타						

19-1. 최근 5년간 신분별 구속영장 처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계	군사경	군검사	군판사		
5년 평균율	합계	104	89	10	5	83	21
	장 교	19	15	2	2	12	7
	준·부사관	28	22	3	3	24	4
	병	54	50	4	0	45	9
	군무원	3	2	1	0	2	1
	민간인	0	0	0	0	0	0
2013년	소계	29	22	7	0	23	6
	장 교	2		2		1	1
	준·부사관	6	4	2		3	3
	병	20	18	2		19	1
	군무원	1		1			1
2014년	소계	21	20	1	0	17	4
	장 교	5	5			2	3
	준·부사관	7	6	1		7	
	병	9	9			8	1
	군무원						
2015년	소계	17	15	0	2	14	3
	장 교	5	4		1	4	1
	준·부사관	4	3		1	4	
	병	8	8			6	2
	군무원						
2016년	소계	26	22	1	3	22	4
	장 교	4	3		1	3	1
	준·부사관	7	5		2	7	
	병	13	12	1		10	3
	군무원	2	2			2	
2017년	소계	11	10	1	0	7	4
	장 교	3	3			2	1
	준·부사관	4	4			3	1
	병	4	3	1		2	2
	군무원						
민간인							

○ 분석

- 최근 5년 평균 청구율 병 52%, 준·부사관 27%, 장교 18%, 군무원 3%
발부율 부사관 86%, 병 83%, 군무원 67%, 장교 63%
- 연도별 분석결과 청구율 및 발부율 계속 변동

20. 2017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청구	인용	기각	인용률
보석허가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형사보상청구				
기 타				

※ 기타 : 접견금지청구, 열람등사청구 등

20-1. 최근 5년간 신청사건 처리 현황

구 분	합계	허가/인용	기각	허가/인용률	
5년 평균율	보석청구	7	2	5	29
	구속적부심	9	1	8	11
	구속집행정지	0	0	0	
	구속취소	1	0	1	0
	형사보상청구	0	0	0	
	기 타	0	0	0	
2013년	보석청구	1	1		10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4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2		2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5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6년	보석청구	3	1	2	33
	구속적부심	4		4	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1		1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2017년	보석청구	1		1	0
	구속적부심	1	1		100
	구속집행정지	0			
	구속취소	0			
	형사보상청구	0			
	기 타	0			

○ 분석

- 최근 5년 평균 보석청구 허가율 29%, 구속적부심 인용률 11%

21. 2017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136	22	76	32	6	
원판결확인	136	22	76	32	6	
원판결 확인율	100	16	56	24	4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1-1.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5년 평균율	합계	608	100	307	157	44	0	
	원판결확인	608	100	307	157	44	0	
	원판결 확인율	100	16	51	26	7	0	
	감경	1/2미만	0	0	0	0	0	0
		1/2이상	0	0	0	0	0	0
2012년	합계	94	18	43	23	10		
	원판결확인	94	18	43	23	10		
	원판결 확인율	100	19	46	24	11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3년	합계	98	12	54	26	6		
	원판결확인	98	12	54	26	6		
	원판결 확인율	100	12	55	27	6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4년	합계	118	23	49	37	9		
	원판결확인	118	23	49	37	9		
	원판결 확인율	100	19	42	31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5년	합계	162	25	85	39	13		
	원판결확인	162	25	85	39	13		
	원판결 확인율	100	15	53	24	8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2016년	합계	136	22	76	32	6		
	원판결확인	136	22	76	32	6		
	원판결 확인율	100	16	56	24	4		
	감경	1/2미만	0					
		1/2이상	0					

○ 분석

- 최근 5년 관할관 확인조치 원판결확인 100%

22. 2017년 무죄 선고 현황

구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민간인
합계		6	1	3	1	1	
면역범죄	간첩이적죄						
	군무이탈죄						
	상관에관한죄	1		1			
	군용물관련죄						
	초병에관한죄						
	성범죄(군인대상)	1		1			
	기타						
주요 형법범죄	내란소요죄						
	뇌물에관한죄						
	문서인장죄						
	살인의죄						
	과실치사상죄						
	절도강도의죄						
	사기횡령배임죄						
	풍속에관한죄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도교법위반	1				1	
	특가법위반(도주)						
성범죄	형법위반	2	1		1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성매매특별법위반						
폭력범죄	상해폭행의죄						
	상해등치사						
	폭처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1		1			

23. 즉결심판 현황

사건번호	계급	죄명	결과
유도탄사 2016조1	공군 하사	절도	벌금 10만원
군수사 2016조1	9급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만원
방관사 2016조1	공군 상병	폭행	공소기각
16비 2016조1	공군 원사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만원
전투사 2016조1	공군 일병	건조물침입	벌금 10만원



2017년
주요 판례

2017년 주요 판례

□ 고등군사법원

○ 2017노7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초병폭행(인정된 죄명 직무수행군인등 폭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은 지휘관으로 GP에서 그 부하인 피해자 A(상병), 피해자 B(상병)에게 총 9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A의 가랑이 사이 생활복 위로 슬리퍼를 신은 발로 툭툭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회 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C(일병)에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쳐 폭행한 사안임.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초병폭행의 점에 관하여 GP 상황실에 근무하는 TOD병은 초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형부당도 아울러 주장함.

• 2심의 판단 :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긍정, GP 상황실에 근무하는 TOD병에 대하여 초병 부정

항소심은 ① 항소심에 이르러 군검사가 공소사실 중 초병폭행의 점에 대하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같은 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으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허가하였고, ②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추행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③ 초병폭행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초병이란 자신의 책임지역인 수소에 배치되어 적 또는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을 감시하고, 유사시 이를 직접적으로 저지하여 부대를 보호하는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자를 의미하고, GP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TOD병은 TOD라는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적 GP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활동하는 남방한계선 이북지역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는 하나, 자신

의 책임지역인 수소에 배치되어 적 또는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을 직접적으로 저지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을, ④ 원심판결은 ①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초병폭행의 점에 관하여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을 적용하여유죄 판단함으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6노368**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공소사실의 요지**

①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들은 공모한 후 보급관에게 지시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청해부대 10진 급량비 미화 합계 1,810달러(당시 환율기준 2,022,675원)를 사용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양주를 구입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화 11,302.8달러(당시 환율기준 12,726,953원), 미화 3,843.5달러(당시 환율기준 4,287,424원) 합계 미화 15,146.3달러(당시 환율기준 17,014,377원)를 마치 청해부대의 부대원들을 위한 부식을 구매한 것처럼 정산한 후, 타 부대 리셉션의 음식 등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함.

② 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주 대금 및 타 부대 리셉션 비용을 각 청해부대 급량비에서 지급하게 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다시 피고인 B는 보급관에게 지시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보급관 및 경리장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3통을 허위로 작성하게 함.

③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3통을 진정하게 작성된 다른 지출결의서와 함께 편철한 '청해부대 10진 증거서류(국외분)'에 서명하고 보급관이 귀국 후 해군본부 재정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함.

④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내지 2014. 2.경 사이 청와대 상황팀장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서버에 접근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군사비밀 II급인 'ATO 관련' 문서 파일을 25매를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출력한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서울 용산구 문배동 소재 자신의 주거에 보관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군사기밀보호법의 점은 무죄 판단함. 피고인 B에게는 3,000,000원을 선고하였음. 피고인 A는 ① 양주구매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청해부대의 급량비로 양주를 구

매할 것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전투지휘활동비 등을 사용하여 양주를 구매할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② 리셉션 행사비용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청해부대의 급양비를 사용하여 리셉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청해부대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었으며, 군사외교 및 교민위로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리셉션을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③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교사의 점에 관하여도 지급결의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각 지급결의서의 경우 당시 관서업무비의 범위 내에서 리셉션을 개최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부분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 B는 ① 양주구매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자신은 인사참모라 횡령의 주체가 되지 않고, 부장으로서 함장의 양주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일 뿐 횡령의 공모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② 리셉션 행사비용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청해부대의 급양비 예산을 아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고, 급양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항목이 아니므로 전용한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며, ③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교사의 점은 횡령의 수단으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함. 이에 검찰관은 ① 리셉션의 일부비용 및 교대식 소연회 행사비용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도 예산을 횡령한 것이고, ② 피고인 A가 비밀을 선별하여 새롭게 출력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한 '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들 및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 **2심의 판단 : 양주구매에 의한 업무상횡령 인정, 리셉션 행사비용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 부정,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교사의 점 일부인정,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점 부정**

항소심은 ① 함장인 피고인 A의 함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B를 거쳐 소외 1으로 내려오는 상명하복의 지휘 및 명령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통하여 소외 1에게 자신의 양주를 급양비로 구매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며, 적어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양주 구매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서도 그 대금의 출처를 묻지도 않고 그대로 묵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직접적, 명시적은 아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는 상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보았고, 양주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급양비로 양주를 구매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 ② 피고인 A가 군사외교, 교민위로 등의 목적으로 바레인 리셉션을 개최하기 위하여 당시 청해부대에 비교적 많이 배정되어 있던 급양비 중 일부를 부족한 행사비용으로 충당하여 사용한 것은, 비록 급양비 그 자체의 지정된 사용목적을 벗어나서 예산 항목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어서 회계 관계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사용에 대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③ 지급결의서 A에 대해서는 붙어있는 영수증의 액수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일부 품목들이 실제 납품되지 않았고, 증인들이 이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외의 지급결의서는 리셉션과 관련한 것으로 리셉션에 사용한 비용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④ 피고인 A의 행위가 기존에 없던 비밀을 새로이 입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소지하여 온 비밀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그 소지 장소만 이동시킨 것으로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⑤ 원심은 리셉션 행사비용 사용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모든 지급결의서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검찰관의 항소는 기각).

○ 2017노93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 공소사실의 요지

- ① 뇌물수수: 피고인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 중인 수사내용 등을 변호사 A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② 공무상비밀누설: ㉠ 피고인은 위 ①항의 변호사 A으로부터 특정 방산업체와 관련된 화학 탐지장비에 대한 수사요청이 들어왔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수사의뢰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공문에 첨부된 '수사요청서(화학탐지장비)'의 출력물을 받아가서 위 수사요청서의 내용을 변호사 A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알려주어 공무상비밀을 누설함. ㉡ 피고인은 소외 1이 방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여 왔는바, 소외 1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A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내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사내용 및 압수·수색집행계획 등 수사진행사항을 위 변호사 A에게 알려줌. ㉢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임야에 대한 군보심의 동의를 위하여 소외 2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담당수사관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는바, 뇌물공여자인 소외 3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A로부터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내용과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진행사항 등을 변호사 A에게 알려줌. ㉣ 피고인은 소외 4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소속대 영내에 500톤 이상의 토사를 반입하도록 편의를 보줬다는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서울 마포 소재 상호 불상의 고기 집에서 관련자 변호사 A 외 2명과

식사를 하면서 해당 내사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수사내용, 압수수색 결과 등을 알려줌.

③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변호사 A에게 강제추행 피해자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함.

④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 중인 수사내용을 변호사 A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벌금 6,400,000원을 선고하였고, 3,200,000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사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 뇌물이 아니고, ㉠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군검사는 뇌물을 받은 횟수가 3회, 3,200,000원이 아니라 5회, 5,600,000원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이며, 변호사 A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자에게 전달할 것을 알고 전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공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함.

- **2심의 판단** : **뇌물수수 총 4회, 4,900,000원 인정, ㉠, ㉡, ㉢ 공무상비밀누설 인정**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유흥주점에 갈 때마다 변호사 A와 같이 가거나 별도로 변호사 A가 술집 사장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술집 사장에게 전화하여 찾아가 술을 마시고, 술집 사장이 그 후에 변호사 A에게 연락하여 몇 명이 얼마의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술값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친분관계의 필요에 따라 음식이나 술값을 내주는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일부무죄), ② ㉠화학탐지장비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비밀누설의 상대방, 비밀의 내용이 되는 문서, 비밀의 내용으로서 수사 의뢰된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고, 수사요청서의 내용은 수사기관이 혐의내용을 구성하고 수사범위와 수사방향을 세우는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을 수사초기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유죄, ③ ㉢내사사건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변호사 A에게 알려준 경위와 시기,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과 변호사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아 유죄, ④ ㉡내사사건에서 진정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⑤ ㉢내사사건의 경위, 내사 혐의 내용, 특별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압수·수색 결과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⑥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의 의미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까지라고 보는 것은 해석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및 추징 4,900,000원을 선고함.

○ 2017노186 강요

•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소속대 대대장으로서 소속 부하들에 대한 성희롱 및 협박 발언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무보직 상태로 소속대 병영상담실에 대기하던 중, 소속대 간부식당에서 피해자 소위 박○○(23세)에게 “네가 진술서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 군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잘못 쓴 것 자체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고쳐쓰게 하여 ‘감찰조사 시 성희롱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중대장(대위 김○○)이 주동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없다’는 등의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피고인은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사단 인사팀 설문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피해자 하사 이○○(24세)을 비롯한 ○중대간부교육을 하던 중 피해자 하사 이○○ 등이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삼국시대 등 역사적으로 입을 잘못 놀렸다가 죽었던 인물들이 있다. 초급간부라 아직 잘 모를 텐데 입 함부로 놀리면 죽는다.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2번 평정에 체크되면 현역부적합 심사에 간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하사 이○○는 자신이 설문조사에 쓴 내용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실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뒤집기 위해 진술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실에 심리적 무력감에 빠져있었던 중에 소속대 병영상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진술서를 써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면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희롱 피해 반복취지로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게 하였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협박피해 반복취지로 ‘설문간 나온 내용 중간부들이 상처받았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 받았고, 피고인은 절대 협박한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③ 피고인은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피해자 소위 백○○(25세)에게 “네가 감찰에서 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네가 원래 보직이 정보과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소대장을 계속 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육사동기회가 있듯이 나도 육사 동기회가 있다. 내 말 한마디면 육사가 좁은데 소문나는 것은 금방이다. 대령은 물론이고 장군들도 나를 위해 써주고 있는데 너만 안 써줄 것이냐. 너도 군생활 오래

해야 되고 보직도 잘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감찰조사 시 성희롱 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중대장이 주동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한 것이며 실제로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고,

④ 피고인은 평소 수시로 자살한 피해자 대위 이○○(30세)에게 “이○○ 대위가 중대장을 할 때 상근병이 사고를 쳐서 이○○ 대위가 징계를 받을 뻔 했는데 이를 내가 막아주었다”, “동원과장 끝나고 연대작전장교로 진급해야 하지 않겠냐”, “나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징계, 보직, 진급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왔고, 피고인의 징계사건에서 피해 진술을 한 위 하사 이○○ 등이 보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평정과 보직 등 향후 군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희롱발언 및 사생활 침해 등 부조리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심리적 무력감에 빠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등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위 지○○을 통하여 전송한 ‘진술서 양식과 탄원서 양식, 그리고 진술서 작성 내용...’이라는 제목의 웹메일에 따라 각 상황, 작성자, 시간, 장소, 포함 내용별 별도의 진술내용으로 이루어진 총 9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허위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위 박○○, 하사 김○○(23세) 등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당시 발언들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들이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군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에 해당, 군검사 양형부당 주장 인정, 징역 1년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인정되는 지휘관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부대 전체의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함.

○ 2017노23 군용물절도(인정된 죄명 업무상군용물횡령)

•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교수실에서 무기기계공학과 소속 군무원으로부터 방탄실험용으로 불출받은 M80 7.62mm 탄약 100발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교수실로 찾아온 방산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탄약을 절취함.

② 피고인은 방산업체 상무로부터 실험에 사용할 탄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육군사관학교 교수실에서 방탄실험용으로 불출받은 M80 7.62mm 탄약 190발과 44매그넘 탄약 200발을 위 ①항과 같은 방산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탄약들을 절취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삼○○○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방탄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이 사건 탄약에 대한 전적인 보관·관리권한 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탄약을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공소장변경허가 군용물절도죄에 태일적으로 업무상군용물횡령죄를 추가, 업무상군용물횡령죄 인정**

항소심은 ① 피고인 자신의 교수실에서 (주)삼○○○ 직원인 오○○에게 속이 보이지 않는 검정색 봉지에 이 사건 탄약을 넣어 건네주었으며, 오○○은 이를 받고도 피고인에게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탄약을 (주)삼○○○에 넘겨준 시기에는 (주)삼○○○ 연구소장으로 취업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및 (주)삼○○○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탄약을 (주)삼○○○에 건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엄격한 군수품 대여 또는 양도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화랑대연구소에 문의하거나 화랑대연구소를 경유하여 (주)삼○○○에 탄약을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육군사관학교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주)삼○○○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은 연구수행주체가 달라 구별되는 것이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삼○○○의 연구용역 수행을 돕기 위해 탄약을 지원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2017노121 준강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킨에서 피해자 김○○(여, 27세)와 소주 2병 및 맥주 500CC 11잔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 내부에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리시 체육관로 소재 ○○호텔 객실로 데려간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 피해자의 행적, 성행위의 양태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2심의 판단 : 만취한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준강간 행위를 인정

항소심은 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산일해지는 통상의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도 수긍 못할 바는 아니라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 이후 대화 내용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동의 없는 성관계였음을 당연히 전제한 듯한 태도로 일방적 사과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옷이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서로 키스와 애무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돌아누워 성관계를 하고 그대로 잠을 잤다는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심신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함.

○ 2016노196 군인등강제추행(일부 예비적 죄명 상관폭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은 ○○치킨에서 피해자(여, 24세, 중위), 소외 1(상사)과 술을 마시던 중 즐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꼬집고, 오른쪽 볼을 4회 꼬집었으며, ○○치킨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

까지 더듬어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한 사안임.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허리를 더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군검사는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함.

- **2심의 판단** :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는 추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을 부정**

항소심은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고,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그 밖에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2017노2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동료 부서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하사 김○○(여, 18세)를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후 “나는 ○○가 너무 예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 아래로 3회 가량 주무르고,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허벅지 안쪽을 3회 가량 주무르고, 잠시 손을 뺐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오른손을 올려 허벅지 바깥쪽으로 약 3회 쓰다듬는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식당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식당으로 이동하는 위 같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리 쪽으로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식당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린 위 같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 빨리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리 쪽으로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위 같은 피해자에게 “잘있어 오빠 갈게”라고 말하며 갑자기를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전화를 통화하고 있던 위 같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왜 안들어와?”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불

상 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위 같은 피해자를 갑자기 꺼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가슴 윗부분을 밀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더욱 껍 꺼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내려 1회 움켜지고 약 4회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위로 손을 올려 1회 강하게 가슴을 움켜지고 2회 주무른 뒤 겉옷과 속옷 사이로 약 10초간 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군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항소심은 ①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어리다는 소문이 돌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임관하여 나이가 어리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점, ③ 이 사건 고소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 역시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는 점, 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인 점, ⑥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이 사건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죄 선고함.

○ 2016노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공소사실의 요지

①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은 계룡대 지역 군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5,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현금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함.

②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계룡시 소재 ○○식당에서 군에 입대한 아들의 군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편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지인의 대학친구인 송○○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1심은 징역 3년 6월, 벌금 180,000,000원 및 91,000,000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증인의 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군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사실을 부인하여 증거능력 부정,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원심 유죄를 무죄로 판단**

항소심은 ① 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여할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공여자인 소외 1이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이유로,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각 현금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이상, 소외 1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소외 1이 피고인에게 실제 위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② 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커피숍에서 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들어와 소외 1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소외 3이 현금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시간과 소외 1이 커피숍에서 결제한 시간과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미리 부대배치 및 보직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소외 4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아들이 편한 보직으로 배치된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인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아들의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병영생활에 관한 애로사항 발생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임은 명백하고, 이를 웃으면서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소외 4의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1,000,000원을 추징함.

○ 2017노197 점유이탈군용물횡령, 강도(인정된 죄명 절도), 유사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절도, 전자기록등손괴, 준강간

• 공소사실의 요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유사강간: 피고인은 즉석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임○○(여, 23세)에게 성적 접촉을 제외한 데이트 명목으로 만남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카페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구매한 커피에 마약류 취급자의 정당한 처방 없이 취득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의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넣은 후 위 장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임으로써 잠에 취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음.

② 절도: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은 유사강간 행위 중 피해자 임○○의 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클럽 안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김○○(여, 21세)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84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든 피해자 박○○(여, 20대)의 음부가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든 피해자 강○○(여, 23세)의 가슴 위에 신분증을 올려둔 채 사진을 촬영하는 등 8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무언가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불상 피해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2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은 피해자 임○○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는 과정을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으로 총 11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소속대 피고인의 숙소에서 선임장교인 김○○(29세)로부터 위 피해자 임○○의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청받자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중 총 8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함.

④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②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여, 21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피해자 주○○와 강○○(여, 나이불상)의 채팅방을 열람

하여 '대화 캡처' 7장 및 '속옷만 입은 강○○의 사진' 1장을 얻은 후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12장을 포함하여 총 사진 20장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여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은 유사행위 및 사진 촬영 직후 피해자 임○○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에 강제로 접촉하여 지문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피고인과의 대화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상반신 노출 사진' 및 '운전면허증 사진' 각 1장을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몰래 전송하여 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②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김○○(여, 21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기○○(20세)가 당시 채팅 계속 중인 대화방을 열어 실시간으로 엿보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외 2인의 단체사진' 1장 및 '카카오톡 대화창 스크린 샷' 2장을 위 대화방에 전송하여 비밀을 침해함.

⑤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위 ①항과 같은 행위 직후, 피해자 임○○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 기록인 피고인 ID 및 피고인과의 채팅방 1개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함.

⑥ 점유이탈군용물횡령: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소속대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군용물인 5.56MM 탄피 1개를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도장집에 넣어 숙소로 가지고 감으로써 군용물을 횡령함.

⑦ 준강간: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을 나눠마신 피해자 강○○(여, 2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고,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준유사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나,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군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점유이탈군용물횡령의 경우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커피에 미리 준비한 이 사건 약을 넣을 당시 그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약으로 인하여 깊이 잠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5.56MM 탄약은 군에서 소총용 탄약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탄약이며, 보통의 부대에서는 수시로 훈련을 하여 탄피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유이탈군용물횡령의 점과 절도 중 6만 원을 절취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2016노453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령위반

• 공소사실의 요지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소속대 GOP초소 복도에서 피해자 병장 김○○(20세, 2014. 5. 20. 전역)이 경계근무 중 소초 바깥에서 방탄헬멧을 벗고 있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메게 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옆드러뻗쳐를 시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복도 바닥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결박하고 “전투복이 물에 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와 같은 소속 분대원들을 불러 모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등 2015. 6.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에 대하여 지휘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② 명령위반: 피고인은 약 70여일 동안 소속대 GP에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부당한 가혹행위를 한 대상인 일병 김○○이 실탄 및 수류탄을 지급받으면 자신을 쓸지도모른다는 이유로 소속대 경계작전 지침에 반하여 위 일병 김○○에게 실탄 및 수류탄을 지급하지 않고 경계근무에 투입시킴.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상급부대의 현장지도 및 설문이 예정되어 있자, 하루 전에 소속대 연병장 및 생활관에 소속 부대원들을 집합시킨 후 상급부대 설문지에 피고인의 폭언, 욕설과 부조리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김○○, 윤○○을 대상으로 상급부대 설문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말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단지 교육 또는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이

고, 명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김○○에게 실탄 및 수류탄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GP 전체의 안전을 위해 한 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군검사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직권남용가혹행위 일부 인정,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항소심은 ① 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들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로서 균형법상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명령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P 전체의 안전을 위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인성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자살 등 사고의 우려가 그리 크지 않아 보였고, 신인성검사결과 이후 김○○이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상급부대의 설문지에 피고인의 폭언, 욕설과 부조리 등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교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GP원들 사이에서 형성된 분위기에 따라 GP 내부의 일을 외부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자의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7노24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입찰방해, 뇌물수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방위사업청, 대령)은 소속대 사무실에서 방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사업계획담당에게 감리용역사업 제안요청서(안) 문서 파일을 보안 USB로 건네주면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라고 지시하여 제안요청서가 작성됨에 따라 위 방산업체가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바, 피고인은 위계로써 이 사건 감리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확정에 관한 직무집행 및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②감리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는 사업설명회 이전까지는 방위사업청 내부 비밀에 해당하나 부하에게 지시하여 업체 대표자에게 감리용역사업의 진행 상황, 제안요청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게 하는 등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고 ③기성성대가지급 신청의뢰한 내용이 과다신청된 것임을 알고도 노무공사비 5,884,654원은 지급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체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③감리용역사업 수주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9,400,000원, 장보고함 성능개량사업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5,1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벌금 30,000,000원, 추징금 14,525,000원을, 위계로써 감리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사업담당 실무자들이 노무공수 신청과 관련하여 실사를 간다는 내용을 알려 준 행위와 성능개량사업 진행 경과 등을 알려주는 등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은 각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고, 업체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관은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고,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의 점, 뇌물 및 향응의 대가성 있다고 하여 뇌물로 인정한 점, 제안서 평가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는 점, 불시실사계획 및 성능개량사업관련 정보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행위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성매매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 인정**

항소심은 ① 유흥주점에 같이 간 동료의 진술, 주점 영업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성매매가 있다고 추단케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성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행위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성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②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작성의 세부경위나 절차의 공정성까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무공수 신청과 관련한 불시 실사계획은 노무공수비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공개 실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공무상 비밀로 인정할 수 없고, 성능개량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은 팀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에 불과하여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③ 양형 요소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반성하지 않고 부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벌금 35,000,000원, 추징금 14, 525,000원을 선고함.

○ **2017노74 성폭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병사 10명)들은 민간인 공범 6명과 함께 서울 소재 슈퍼 앞에서 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13세, 12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전화 연락하여 나오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겁을 줘서 불러내 서울 소재 인근 야산 속 배드민턴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차례대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미수에도 그치고, 추행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마트 주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침

• **1심의 판단 및 쟁점** : 1심은 일부 피고인들은 각 징역 4년, 일부 피고인들은 각 징역 2년 6월,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일부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일부 피고인들은 제 각각 현장에는 있었으나 성관계하지 않았고, 공모하지도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고, 공갈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항소하고, 검찰관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간이나 공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오인으로 항소하고, 양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2심의 판단** : **일련의 특수강간 미수 및 특수강제추행행위는 특수강간죄에 흡수되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부분은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파기하고, 강간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음을 근거로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방조죄 성립을 인정**

항소심은 ①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에 있어서 2인 이상이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는 간음하고 일부는 미수 또는 강제추행에 그친 경우에는 실제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대법원 2002. 9. 4. 서고2002도2581)하므로 본 건에서도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에 성폭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는 흡수되므로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모의사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주위적 공소사실 범죄는 인정할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법위반(특수강간) 방조행위를 인정함 ④ 양형 요소로는, 피해자기 만 13세에 불과한 점, 집단으로 강간행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들은 각 징역 4년, 일부 피고인들은 각 징역 2년 6월, 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함(7명 피고인 별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달라짐)**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 2017고2 공무상비밀누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5급, 군무원)은 국방시설본부 감사실에 근무하면서, 2014. 1. 경 중령 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차○○에게 알려주고, 2015. 11. 11. 비공개 문서인 “육군[3개사단] ESCO 집행계획” 문서 총 12장을 사진으로 찍어 시설공사 브로커 이○○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2016. 2. 19. 비공개 내용인 ‘급수시설 개선 소요’ 등이 담긴 불상의 문서 1장을 사진으로 찍어 포스코 직원 오○○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각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별건 전자정보 수집과정의 적법성, 공소권남용 여부, 실질적 비밀성 여부**

1심은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군검찰은 최초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견한 별건사실에 대해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별건 영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별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사정 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② 피의자 신문과정 중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외 다른 사람에 대한 기소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가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죄가 될만한 사실과 입증이 어려운 사실 등을 나누는 등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대화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군검사가 당해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의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피고인의 공무상비밀에 관한 혐의를 기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③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이 당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 점,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이 주로 군 시설 공사계약과 관련된 내용인 바 특정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비밀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하여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항소심 계류중)

○ **2017고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소취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은 배우자(재판 중에는 이혼상태) 주○○가 “인천의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10일에 3부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겠다.” 등의 방법으로 속여 김○○ 등 9인의 피해자에게 합계 10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2014. 10. 31.경부터 피고인의 통장 등 금융거래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의 사기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주○○와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처남인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를 속이고 ○○은행 및 국가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기범행을 하였으며, 국가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담당관을 기망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정범의 범행 인식시점부터 방조 고의 인정, 전세자금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 부정**

1심은 ① 피고인의 진술 및 2016. 6. 경 피고인의 급여 압류,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결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최소한 2016. 6. 말경에는 정범인 주○○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6. 7. 경 이후에도 주○○가 피고인의 통장 등 금융거래수단을 이용하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하여 범행한 사실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여 일부유죄 판단(2016. 7.경 이전 방조 사실에 대하여 무죄)을, ② 피고인의 처남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매수자금의 주된 부분을 피고인 처남명의 대출자금으로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던 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다’는 의사로 대출을 받은 점, 전세대금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과정이 매수인이 전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매수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피고인으로서 ‘처남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인이 전세를 사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배우자와 처남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거나, 아파트 매수를 속이고 용도를 속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각 무죄 판단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항소심 계류 중)

○ 2017고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사)이 해군군수사령부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술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이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납품업체 실제 사장인 안○○으로부터 납품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총26회에 걸쳐 현금 3,9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2013. 봄경부터 8.경까지 지속적으로 납품업체 실제 사장인 안○○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1심은 ①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요 공소사실로 특정된 뇌물공여 사실의 장소 및 시각이 피고인이 사용한 1회용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배치되는 등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뇌물 공여 장소, 방법, 동기 등에 관한 뇌물공여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 계류중)

□ 육군 군사법원

○ 육군본부 2016고18 뇌물수수, 뇌물요구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6. 10. 12.까지 O군단 군수참모처 보급정비과장 및 계획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O군단의 보급, 정비 관련한 소요제기, 사업추진, 사업자선정, 계약에 대한 사후관리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는 식기세척기 사업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2015. 10. 17.부터 2016. 3. 21.까지 총 20회에 걸쳐 953,000원을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를 하였고, 2016. 2. 5. 위 업체로부터 현금2,0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수수를 하는 등 총 30,000,000원을 요구 33,731,050원을 수수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①증인 손OO 진술의 신빙성 여부, ② 뇌물 수수죄의 대가성 여부, ③직접 군 관련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정황, 수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등을 양형요소로 판단

① 증인 손OO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2015. 20. 17.자 법인카드 제공은 직무와 관련 없이 순수한 의미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증인 신문기일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2016. 3. 31. 까지 O군단 군수참모처 보급정비과장으로, 2016. 6. 21.부터 2016. 10. 12.까지는 위 군수참모처 계획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O군단 및 예하부대의 식기세척기 임차사업 관련 업무를 조정·통제·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식기세척기를 포함한 군수물자 소요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증인 김OO, 손OO의 각 통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식기세척기 임차 사업관련 정보를 손OO일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손OO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 등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관계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③피고인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식기세척기 납품업자인 손OO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것을 두려워한 손OO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처인 김OO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직접 군 관련 이권사업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 육군본부 2017고2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 20.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대대장 중령 홍○○의 직인이 찍혀있는 표창장을 총3장 위조하여 2017. 1. 20. ○○대학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 학군단장 중령 정○○에게 위 위조공문서를 진정한 표창장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행사하였고, 2017. 1. 29.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던 피해자 정○○에게 억지로 키스하며 위에서 몸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①표창장의 추정적 승낙 혹은 정당행위, ② 위조 문서의 행사 여부, ③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요소로 판단

1심은 ① 피고인은 표창 발급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라도 위임받은 사실도 없거니와 표창 절차까지 무시한 채 피고인이 명의자가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자의 승낙을 추정할 수 없고, 명의자의 승낙만으로 표창장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무단히 교육대대장 명의의 표창을 제작한 행위를 사회 통념 등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새길 수도 없다. ② 군에서 발급하는 표창장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정○○이 동 문서가 위조라는 점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기념”내지 “기념품”이라는 말을 썼다 할지라도 이를 반드시 “가짜”라든가 “위조된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조문서의 행사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피고인은 각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전혀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도 상관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창장을 만드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여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였다며 죄책감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표창장 1개(증 제1호)를 몰수함.

○ 수방사 2017고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9. 09:17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OO로 OO에 있는 O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월드컵로5길 16에 있는 이노이즈인터랙티브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OO거OOOO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김OO를 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치료 중 간부전, 뇌손상 및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음주단속을 회피하겠다는 동기로 난폭운전, 사망사고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한 가정의 건강한 30대 가장이 극심한 상해 후 13일간 수회의 중대한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를 지켜본 유족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②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경찰의 지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20여 초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다수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함으로써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험하게 한 것은 물론 수차례 도로 밖의 행인을 위협하였고, 인도 내로 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직전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등 이례적으로 과도한 난폭운전을 하여 공공의 위험을 극대화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사고시 자동차보다 부상의 위험이 높은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량과 강하게 충돌한 상태이기에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면서도 감속 또는 정차조치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

○ 제2군단 2017고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일부 공소취소), 강요미수, 허위보고

• 공소사실의 요지

2017. 2. 27.부터 7사단 수색대대장이 3중대 3소대 병사들이 중위 최O으로부터 “몸에 피멍이 생기고 몸이 부어오르고 심각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폭행” 당했다는 등의 제보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상급부대 또는 대대 외부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내 새끼들 범죄자 안만든다” 등을 말하면서 피해자

로 하여금 범죄피해 구제요청을 방해하였으며 7사단 참모장 대령 박○○에게 “단순구타” 등으로 거짓 보고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인정(정당한 권리행사 방해여부), 협박의 고의**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 ②피고인은 제보편지 및 면담을 통하여 장기간 피해자들이 간부들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등 심각한 병영부조리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용사들의 고충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대대 지휘관으로서 이를 사실 그대로 상부에 보고하고 군내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하여 대대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의 범죄치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저해하였다 할 것임. 한편 협박에 관하여 ③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대대장인 피고인과 해부대 용사인 피해자는 직접적인 명령·복종의무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 1:1 면담은 처음이었던 점, 실제 대대장이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던 점, 면담 중 30여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요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 및 화가 날 것 같다며 펜을 굴리듯 던진 행위는 충분히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④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지휘부 운영비는 지휘관의 지휘활동 보장을 위하여 부대운영 및 병력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휘관은 부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관서업무비(240-02)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위법하거나 사적인 목적에 집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무죄. 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총 7부의 부대운영비 결산보고서의 여러 항목 중 단지 8개 항목에 관하여 실제 집행한 메뉴, 격려한 인원 명단과 그 수가 불일치하고, 비교적 세부적인 부분에 한하여 차이나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각 부대운영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 작성에 관한 업무미숙, 관리 소홀에 관한 행정책임을 지울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허위

의 인식을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결국 직권잠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협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육군교육사령부 2017고8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 공소사실의 요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피고인은 2017. 7. 25. 피해자로부터 “넌 왜 사냐.”, “애는 병신이잖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2017. 7. 31. 옆 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관물대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의 외피를 벗긴 후 야전삽을 펼치고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다음, 일어선 상태에서 야전삽의 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1회 친 후,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대 훈련병 이○○을 무시한 채 같은 방법으로 모포를 덮은 채 누워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3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살인미수(무죄) 및 특수상해 인정**

1심은 살인미수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군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야전삽의 날 부분으로 내려 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른쪽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중지와 왼쪽 손목 등이 찢어지는 등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세게 가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훈련병 김○○은 헌병 조사에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안좋을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따라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② 피고인이 야전삽의 날 부분으로 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피고인에 **징역 2년을 선고함.**

○ 제2작사 2017고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공소사실의 요지

제31사단 일병인 피고인은 2016. 9. 13. 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오○○과 피해자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오○○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서○○과 함께 오○○를 말리던 중 서○○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증인 김○○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낸 후 몸통 부위를 발로 찼고, 그 옆에 있던 일행들도 함께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넘어진 상태에서 맞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행위를 발로 걷어찬 모습으로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위 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오○○과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뒷목을 잡고 몸을 밀쳤고, 당시 너무 세게 잡아당겼고 심하게 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행들이 그 외에 자신을 때린 사실은 없고, 과하게 말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아 의서 전○○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 해군 군사법원

○ 해병대 2사단 2017고21 군무이탈 등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7. 1. 27.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804회에 걸쳐 합계 181,498,006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한 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2. 20. 10:28경 부대를 이탈한 후 같은 달 22. 00:45경 강원정선경찰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될 때까지 약 1일 14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

피고인은 2017. 1. 20. 19:00경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하성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 1심의 판단

군무이탈 및 상습도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이 “계약서만 작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한 사정, ②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전달한 사정 등 접근매체 교부 동기 및 경위, 접근매체의 수, 접근매체 교부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절차로 생각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접근매체의 일시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 또는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군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확보 관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 해군본부 2017고9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17:57경 대학병원 건물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당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8회 촬영

• 압수절차상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를 있었더라도 동의범위 내에서 압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추가범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동의는 추가범죄 수사에 필요한 물적 증거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압수가 이루어진 범위 또한 피고인의 동의 범위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렌식 분석과정에서의 참여권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여성들이 모두 엮드려 있는 자세로 영당이 부분이 부각되는 순간을 촬영한 점, 촬영장소가 병실 내부로써 피해자들과 불과 2-3m 내외의 거리에서 피해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 영당이 부분이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옷맵시 확인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여성들의 경우 옷맵시와 크게 관련 없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던 점, 사진의 대부분이 영당이 부분이 부각되게 찍힌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28회 촬영 중 16회 촬영행위를 유죄로 인정

○ 해군 2함대 2017고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와 해당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계좌, 신용협동조합 계좌,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3매 및 해당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이 각 체크카드를 3매 교부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심은 ①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만 교부하였고, 각 체크카드의 잔액도 거의 없었던 점, ② 대출 약속 이외에 피고인이 추가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③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 당시 전국적인 업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 확인하지 못하자 교부한 위 각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절차의 하나로 생각하고 위 각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 또는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 해군 작전사령부 2017고30 상관모욕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 하사 김00(여, 21세)에게 "저랑 한 번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하사님 몸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그럼 제 몸을 만져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격실을 이탈하려고 할 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의자의 손받침 부분을 강하게 내리치며 "하사님, 어디가십니까?" 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면전에서 모욕한 사실임

• 이성인 상급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에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교제 중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소속대 상·하급자의 지위 이외에 다른 특별한 관계없음) ② 피해자인 여군 상급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성관계 등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 내지 허락을 한 사정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오인하게 할 만한 언행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만져 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높임말을 사용하는 등 표현 그 자체는 정중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성관계 내지 성욕의 객체로 인식하고 이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며 특히 상관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함.

□ 공군 군사법원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2017고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등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7. 6. 28. 18:1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14세)를 협박하여 가슴사진을 요구하여 메신저를 통해 받고, 같은 년 7. 2.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켜 동영상을 받고 소지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강요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2017고3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등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6. 11. 6. 01:00경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여, 24세)의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왼쪽으로 돌아 누워있는 매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깎지 껴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 중지 손가락이 약 2마디 정도 들어가도록 피해자의 성기에 4회 삽입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

피고인은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유사간음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이후 일어났으며 당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한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강제추행에 관하여도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 무죄를 선고함.

○ 공군본부 2017고2 공갈, 강요미수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0. 12. 30.경부터 후임자로 온 피해자에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너도 장기하고 싶으면 나한테만 잘해라'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이 겁을 준 후, '12. 10. 12.경 강릉시 '000' 룬살 룬에서 1,400,000원을 지출하게 하여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 피고인이 '13. 5월경 장기복무자 선발 발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기 선발에 힘써 주었으니 축하파티를 해야 하지 않겠냐', '선물할 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거 좀 비싼데 하는 생각이 든다. 3만원, 5만원 짜리 갖다주면 받았는지 기억도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함. 피고인은 '13. 5. 27. 19:00경 서울 동작구 000회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권 자기압수표 10장을 받았음.

피고인은 '15. 1월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장기는 내가 시켜줬고, 너는 내사람이니까 무조건 사인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공소외 A를 고발하기 위한 진정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요구를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15. 2. 11. 08:53 피해자에게 '진정서에 사인할지 안할지는 너 의지이지만, 사인을 안할 시 향후 주요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으나, 결국 서명을 받지는 못하였다.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등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함. 피고인은 암묵적으로 재물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강요미 수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병과 차선임자라는 지위 등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향후 주요 논의의 장에 참석이 제외 되는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공군본부 2017고10 군인등준유사강간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7. 6. 23. 02:30경 기지 내 관사 안방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약 10초간 유사강간 함.

• 1심의 판단 및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유사강간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본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음.

징역 1년 6월 선고함.



군사법관련
법령 현황

■ 군사법 관련 법령 현황

□ 법률

- 군사법원법(2016. 1. 6. 타법개정)
- 군형법(2014. 1. 14. 타법개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1. 6.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 6. 타법개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2011. 10. 10. 일부개정)
-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2000. 6. 27. 제정)
- 군검찰사무 운영 규정(2012. 3. 30. 일부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0. 28. 일부개정)
- 군법무관 임용법 시행령(2014. 11. 19. 타법개정)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2014. 11. 19.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2014. 12. 9.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군사법원 사무규칙(2013. 12. 10. 전부개정)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2013. 12. 10. 일부개정)
-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4. 9. 1. 제정)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2014. 9. 1. 개정)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2010. 6. 30. 제정)

□ 국방부령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2012. 11. 9. 일부개정)
- 군검찰 사건사무 규칙(2013. 4. 4. 타법개정)
- 군검찰 보존사무 규칙(2009. 10. 5. 제정)
- 군검찰 압수물사무 규칙(2014. 11. 19. 타법개정)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 규칙(2010. 2. 17. 제정)
-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6. 4. 11. 타법개정)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2016. 11. 29. 타법개정)

□ 국방부 훈령(법원)

- 군사법원 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훈령(2017. 8. 31. 개정)
-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2009. 8. 14. 제정)
-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2011. 8. 26. 제정)
- 군판사·검찰관·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2011. 11. 7. 제정)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2015. 6. 5. 일부개정)
- 법원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령(2016. 3. 4. 제정)

□ 고등군사법원 예규

- 고등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6. 3. 1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군사보안업무 예규(2015. 4. 16.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5. 10. 14.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행정사무 예규(2016. 3. 11.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예규(2012. 5. 7. 일부개정)
- 고등군사법원 위기조치 예규(2014. 6. 1. 제정)
- 군판사의 면담 등에 관한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공보업무 예규(2014. 6. 1.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2014. 7. 8. 제정)
- 고등군사법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2016. 12. 2. 제정)
- 고등군사법원 동원소요 심의위원회 운영 예규(2016. 12. 2. 제정)

□ 육군 규정 등

- 규정: 육규181 재판사무 규정(2016. 8. 31. 전면개정)
- 예규
 - 군사법원 재판사무 예규(2015. 12. 17.)
 - 군사법원 업무분장 예규(2015. 12. 17.)
- 지침·지침서: 국선번호인 선정 및 감독에 관한 지침(2008년)

□ 해군 규정 등

- 규정: 해규15-0-1-01 해군 군사법원 규정(2014. 7. 9. 개정)
- 지침·지침서
 - 군사법원실무
 - 군사법원 업무처리 지시서

□ 공군 규정 등

- 규정: 공규10-02 군사법원 운영규정(2010. 7. 1. 개정)
- 예규
 -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예규(2012. 4. 20.)
 - 국선번호업무에 관한 예규(2009. 2. 16.)
 - 군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예규(2009. 3. 13.)
 - 의견서 등 제출에 관한 예규(2013. 2. 18.)
 - 국선번호인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12. 5. 2.)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 사건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예규(2010. 11. 26.)
 - 공군 심판관 풀(pool)제 운영 예규(2012. 5. 25.)
 - 관할관 확인조치 업무절차에 관한 예규(2012. 4. 20.)
 - 즉결심판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2. 5. 25.)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예규(2010. 9. 7.)
 - 군판사의 윤리에 관한 예규(2012. 4. 16.)
 - 판결공시절차에 관한 예규(2012. 8. 29.)
 - 재판서 정본 등의 간인에 관한 예규(2012. 8. 31.)
 - 재판서에 기재할 성범죄 피해자 성명의 익명처리에 관한 예규(2013. 8. 22.)
 - 구속의 통지에 관한 예규(2013. 9. 17.)
 -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2016. 6. 8.)
 -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예규(2014. 10. 22.)
 - 공군 군사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예규(2014. 10. 29.)
 - 공군 군사법원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에 관한 예규(2015. 6. 1.)
 - 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예규(2015. 6. 15.)



2017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 법령

2017년 주요 개정 형사법 관계법령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법무부령 제892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서식의 기재사항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016. 3. 20. (2016. 3. 20.)
대통령령 제27957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017. 3. 27. (2016. 3. 30.)
제14970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 	2017. 10. 31. (2017. 10. 31.)
제14972호	인신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을, 헌법재판소는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즉시항고 제기가 매우 어렵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 강화 및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 	2017. 10. 31. (2017. 10. 31.)
제15163호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제78조 제5호 및 제6호) 	2017. 12. 12.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제15164호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 	2017. 12. 12. (2017. 12. 12.)

법률호수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 (시행일)
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사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하여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 	2017. 12. 12. (2017. 12. 12.)
제15252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 제1항(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 	2017. 12. 19. (2017. 12. 19.)
제1525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제6조 제18호의2, 제39호의2,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신설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5조 제21호의2, 제42호의2,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7. 12. 19. (2017. 12. 19.)
제15254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등 추가(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형법」 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제16조 제1항 제3호) 	2017. 12. 19. (2017. 12. 19.)
제1525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 제1항(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의 대상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추가함 	2017. 12. 19. (2018. 3. 19.)
제15257호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중 상항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항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이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이 규정에 따름(부칙 제2조) 	2017. 12. 19. (2017. 12. 19.)
제15258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부사관 및 군무원의 임용에도 장교 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있는 수사경력 자료 등의 범위를 확대(제6조 제1항 제7호) 	2017. 12. 19. (2017. 12. 19.)
제1525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권을 보장 	2017. 12. 19. (2018. 6. 19.)

주요 집필진	고등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5급 이도선
		행정과장	6급 김진영
		재판사무담당	6급 양홍승
	육군 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대위 김다현
		주임 법원서기	준위 오은화
	해군 군사법원	군판사	중령(전) 김성준
		주임 법원서기	상사 김찬형
	공군 군사법원	군판사	소령 손미희
		주임 법원서기	4급 김종만

감 수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중령 권상진
		재판 연구관	대위 이재도

2017 군사법원 연감

발행일 2018년 6월 15일
 발행처 고등군사법원 / 육·해·공군 군사법원
 인 쇄 국군인쇄창 재경지원대 M18060507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신고유형
간첩·방산스파이
군사기밀 유출·방산스파이
NSA(미국)의 군인명 제보

☎ 상급내역
국방부 장관: 최고 20만원
법원 판사: 최고 1억원
공·군 부·장관: 최고 5천만원

☎ 신고방법
전화: 수사·사법 국문번호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방안지원센터 02-3124-0124 및 24시간 지원센터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t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